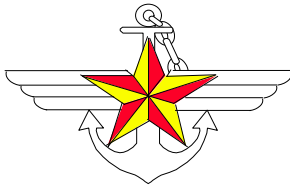


국방부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국방부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국 방 부

목 차

| | |
|--|----|
| 제1조(목적) | 1 |
| 제2조(적용범위) | 1 |
| 제3조(세부평가기준 등) | 1 |
| 제4조(배점기준) | 2 |
| 제5조(평가서류 제출 및 확인 등) | 2 |
| 제6조(평가방법) | 3 |
| 제7조(공동수급체의 구성 및 평가방법) | 3 |
| 제8조(입찰참가자격자 선정 결격 및 허위서류 발견 시 조치) | 4 |
| 제9조(평가결과 통지 및 공개) | 5 |
| 제10조(재평가) | 5 |
| 제11조(기타사항) | 5 |
| 제12조(재검토기한) | 6 |
| 별표1(기술인평가 대상 건설엔지니어링 선정 기준) | 8 |
| 별표2(설계 등 용역사업자의 수행실적평가 배점표 및 세부평가기준) | 10 |
| 부표2(설계 등 용역사업자 수행실적에 대한 평가방법 및 세부기준) | 15 |
| 첨부1(책임기술인 능력평가서 양식) | 28 |
| 첨부2(책임기술인 기술능력 및 업무관리능력 평가기준) | 31 |
| 첨부3(신용평가등급 기준) | 32 |
| 첨부4(해외 설계용역 수행실적 확인서 양식) | 33 |
| 첨부5(해외 설계용역 참여기술인 확인서 양식) | 34 |
| 첨부6(보안 위반사항 범례) | 35 |
| 첨부7(설계 등 용역 상대평가 등급배분 예시) | 36 |
| 첨부8(원본대조필 확인각서 양식) | 37 |
| 표지서식1(00지역 시설공사 설계용역 수행실적평가서) | 38 |
| 양식1(용역참여 신청서) | 39 |

| | |
|---|----|
| 양식2(공동수급협정 체결현황) | 40 |
| 양식3(참여기술인 조직표) | 40 |
| 양식4(자기평가서) | 41 |
| 양식5(참여기술인 자격/경력 현황) | 42 |
| 양식6(참여기술인 유사용역수행실적) | 42 |
| 양식7(유사용역수행실적 현황) | 43 |
| 양식8(유사용역수행실적 증명서) | 44 |
| 양식9(업체 및 기술인 자격·영업정지(업무정지) 등) | 44 |
| 양식10(재정상태 건실도) | 45 |
| 양식11(부실별점) | 45 |
| 양식12(군사보안위반) | 46 |
| 양식13(기술개발 및 투자실적) | 47 |
| 양식14(참여기술인의 업무중복도) | 48 |
| 별표3(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의 수행실적평가 배점 및 세부평가기준) | 49 |
| 부표3(건설사업관리용역 수행실적에 대한 평가방법 및 세부기준) | 67 |
| 별지1(책임건설사업관리인 또는 분야별건설사업관리기술인 면접 상대평가 등급 배분 및 평가방법) | 77 |
| 별지2(책임건설사업관리인 및 분야별건설사업관리기술인 면접 발표자료 작성요령) | 78 |
| 첨부1(보안 위반사항 범례) | 80 |
| 첨부2(신용 평가등급 기준) | 82 |
| 첨부3(원본대조필 확인각서 양식) | 83 |
| 표지서식 제1호(평가용 과업수행계획서 표지) | 84 |
| 표지서식 제2호(발주자보관용 과업수행계획서 표지) | 85 |
| 표지서식 제3호(수행실적평가서 표지) | 86 |
| 양식1(용역참여 신청서) | 87 |
| 양식2(공동수급협정 체결현황) | 88 |
| 양식3(자기평가서) | 89 |
| 양식4(참여기술인 자격사항) | 91 |
| 양식5(참여기술인 경력사항) | 92 |
| 양식6(교육이수실적) | 93 |
| 양식7(유사용역수행실적) | 94 |
| 양식8(용역평가결과) | 95 |
| 양식9(영업정지(업무정지)) | 96 |
| 양식10(재정상태 건실도) | 97 |
| 양식11(부실별점) | 98 |

| | |
|--|-----|
| 양식12(기술개발 및 투자실적) | 99 |
| 양식13(참여기술인의 업무중복도) | 101 |
| 양식14(군사보안위반) | 102 |
| 양식15(건설공사 공사비 절감 확인서) | 103 |
| 별표4(정밀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 용역사업자의 수행실적평가 배점표 및 세부평가기준) | 104 |
| 부표4(정밀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 용역사업자 수행실적에 대한 평가방법 및 세부기준) | 108 |
| 첨부1(신용 평가등급 기준) | 112 |
| 첨부2(원본대조필 확인각서 양식) | 115 |
| 표지서식1(00부대 정밀점검 및 안전진단용역 수행실적평가서) | 116 |
| 양식1(용역참여 신청서) | 117 |
| 양식2(공동수급협정 체결현황) | 118 |
| 양식3(참여기술인 조직표) | 118 |
| 양식4(자기평가서) | 119 |
| 양식5(참여기술인 등급/경력 현황) | 120 |
| 양식6(참여기술인 실적 현황) | 120 |
| 양식7(유사용역수행실적 현황) | 121 |
| 양식8(유사용역수행실적 증명서) | 121 |
| 양식9(업체 및 기술인 자격·영업정지(업무정지) 등) | 122 |
| 양식10(점검·진단 실시결과 평가결과) | 122 |
| 양식11(재정상태건실도) | 123 |
| 양식12(기술개발 및 투자실적) | 124 |
| 양식13(참여기술인의 업무중복도) | 125 |
| 별표5(기술인평가 배점표 및 세부평가기준) | 126 |
| 부표5(기술인평가에 대한 평가방법 및 세부기준) | 127 |
| 별지1(기술인평가 등급 배분 및 평가방법) | 133 |
| 별지2(청렴서약서(평가위원용)) | 135 |
| 별지3(청렴서약서(참여업체용)) | 136 |
| 별지4(심의 관련 비리 감점) | 137 |
| 서식1(사전집축(사전설명) 여부 확인서) | 138 |
| 서식2(비위 등 제보 신고서) | 139 |
| 서식3(평가위원 제척 및 기피 신청(확인)서) | 140 |
| 서식4(평가용 기술인평가서 표지) | 141 |
| 서식5(발주자 보관용 기술인평가서 표지) | 142 |

국방부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제1조(목적) 이 고시는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28조 [별표2]에서 [별표4]까지의 내용과 국토교통부 고시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에 따라 국방부에서 집행하는 건설엔지니어링(“설계 등 용역”, “건설사업관리용역”, “정밀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 용역”)의 사업수행능력을 평가하는 경우에 적용할 세부평가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고시는 규칙 제28조에 따라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를 선정하는 경우에 적용한다. 다만, 다른 법령에서 사업수행능력 평가기준을 따로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제3조(세부평가기준 등) ①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방법은 “입찰참가자 선정을 위한 평가(이하 “수행실적평가”라 한다.)”와 “기술인평가서에 따른 평가(이하 “기술인평가”라 한다.)”로 구분한다.

② 세부평가방법은 [별표1] 기술인평가 대상 건설엔지니어링 선정 기준의 용역비와 용역의 난이도에 따라 구분하여 적용한다.

③ 용역비가 “기술인평가” 대상 금액 미만이거나, 용역의 난이도가 “기술인평가”에 해당하지 않는 용역은 “수행실적평가”만 수행한다.

④ 용역비와 용역의 난이도가 “기술인평가” 대상에 해당하는 용역은 발주청의 기술(의사결정)자문위원회 심의를 통해 세부평가방법을 결정하며, 발주예정인 건설엔지니어링사업을 통합하여 심의할 수 있다.

⑤ “기술인평가” 대상으로 결정된 용역은 “수행실적평가”로 일정 점수 이상을 받은 자에 한하여 “기술인평가서”를 평가한다.

⑥ 발주청은 국방부 본부와 국방부 소속기관, 국직부대·국직기관, 합참 및 각 군 등을 포함하며, 발주청은 건설산업지식정보시스템에서 공지되는 건설사업관리 능력평가 공시와 시설물 정보관리 종합시스템 등에서 공지되는 용역 수주 실적 통계자료를 확인하여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의 경력 및 실적 등이 과도하게 제한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⑦ 이 고시에서 규정하는 평가항목별 평가기준일은 입찰공고 등에서 따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입찰공고일로 한다.

⑧ 평가점수에 소수점이 있을 경우에는 평가항목(요소)별 합계점수의 소수점 셋째자리에서 반올림한다.

⑨ 평가자료 제출 시에는 본 평가기준을 적용하여 과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사업수행능력 평가한 자기평가서를 포함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⑩ “수행실적평가”만 수행하는 용역은 자기평가서로 평가할 수 있으나, 낙찰예정자에게는 일체의 증빙자료를 제출받아 진위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제4조(배점기준) ① 이 세부기준의 세부평가항목·배점 및 평가방법 등은 수행실적평가일 경우는 [별표2]에서 [별표4]까지의 내용과 같으며, 기술인평가일 경우는 [별표5]와 같다.

② 평가항목별(가·감점 포함) 평가점수를 합산하여 평가하며, 평가점수의 합계가 100점을 초과하는 경우 100점으로 하고, 100점 이하일 경우에는 원 점수를 그대로 사용한다.

③ 해당분야 경력 및 직무분야 실적의 계산 시 전체 일수를 1년은 365일로, 1개월은 30일로 계산한다.

제5조(평가서류 제출 및 확인 등) ① 사업수행능력평가는 신청자가 제출한 평가서류(참여기술인의 등급·경력·실적·교육훈련, 전차용역수행실적, 유사용역수행실적, 신용도, 기술개발 및 투자실적, 업무중복도, 교체빈도, 가점 및 감점, 자기평가서, 기술인평가서)에 한하여 평가하며, 서류 마감일 후에는 추가·교체·수정 제출할 수 없다.

② 건설사업관리용역의 경우, 비평가 대상 참여기술인은 평가에서 제외하며, 인적사항 등 세부 실명자료는 제출하지 아니 하며 전기·통신·소방·폐기물처리 참여 기술인은 각 기술분야의 개별법(건설기술진흥법(이하 ‘건진법’이라 한다)에 의한 전기공사분야 제외)에 의한 적격여부 증빙서류만 제출한다.

③ 국방부는 신청자가 제출한 제1항의 평가 서류의 진위 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사실 등을 조사할 수 있다.

④ 국방부는 제3항에 따른 사실조사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조사하는 사실과 관련이 있는 행정기관 및 관계기관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고, 신청인에게 제출서류에 대한 증빙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⑤ 시행령 제52조제1항에 의거, 가격입찰 후 사업수행능력을 평가하는 경우 예정가격이하로서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의 순으로 관련서류를 제출받아 평가할 수 있다.

⑥ 입찰공고에서 별도로 정하는 경우에는 자기평가서를 활용하여 “수행실적평가”를 수행하고, 제1항에서 정하는 기타 관련서류는 가격입찰 후 제출받을 수 있다.

⑦ 국방부는 평가서류를 서면 외에 전자문서 형태로 제출받을 수 있다.

제6조(평가방법)

① “수행능력평가”는 [별표2]에서 [별표5]까지의 세부평가기준에 따른다.

② 제출되는 “수행능력평가서”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수행실적평가

가. 수행실적평가서

나. 면접(발표) 자료(CD 및 인쇄본)

(면접(발표) 자료는 면접을 실시하는 경우에만 제출하며, 기술인평가 대상은 수행실적평가서 면접(발표)를 실시하지 않는다.)

2. 기술인평가 : 수행실적평가서, 기술인평가서(CD 및 인쇄본)

③ “수행능력평가” 세부 평가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이 한다.

1. 제출된 “수행실적평가서”를 [별표2]에서 [별표4]까지의 세부평가기준에 따라 평가하여 90점 이상인 용역사업자를 입찰참가적격자로 선정한다.

2. “기술인평가”를 수행하는 경우 수행실적평가결과 90점 이상을 받은 자에 한하여 “기술인평가서”를 제출받아 [별표5]의 세부평가기준에 따라 평가하며, 평가결과 85점 이상인 자를 입찰참가적격자로 선정한다.

3. 입찰참가적격자가 1개사인 경우와 “기술인평가서” 제출대상이 1개사인 경우에는 용역사업집행계획을 다시 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필요시 당초 공고내용을 변경할 수 있다.

4. 발주청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에 따른 수의 계약 진행시 면접평가 생략이 가능하다.

5. 발주청은 필요시 입찰참여를 제한하기 위한 수행능력평가 점수와 참여업체 수를 조정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입찰공고시 이를 제시하여야 한다.

6. 단, 제출된 증빙서류 중 “수행능력평가서”와 상이한 경우 평가서류 허위작성으로 간주하여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처분한다.

제7조(공동수급체의 구성 및 평가방법) ① 공동계약수급체의 구성원은 5인 이하로 제한하며 구성원의 허용범위는 이행방식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동이행방식: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원칙적으로 허용한다.

2. 분담이행방식: 자격 또는 면허 보완인 경우 허용한다.

② 공동수급체의 평가는 다음 각 호와 같이 한다.

1. 평가항목 중 “유사용역수행실적”, 기술개발 및 투자실적의 “개발·활용실적” 또는 “개발실적”은 공동수급체 구성원 각각의 실적에 참여지분율을 곱하여 산정한 후 이를 합산하여 평가한다.

2. 평가항목 중 신용도의 “재정상태건실도”, 기술개발 및 투자실적의 “투자실적”, “활용실적”, 교체빈도의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는 공동수급체 구성원별로 각각 평가한 후, 각각의 평가점수에 참여지분율을 곱하여 합산한다.

③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평가에서 제외하며 잔존 구성원만으로 평가한다.

1. 공동수급체 구성원 중 자격을 보완하기 위하여 분담이행방식으로 참여한 구성원(단, 참여기술인은 평가할 수 있다.) 단, 업무정지(업무정지)와 부실발점, 보안위규발점은 공동수급체 모두 평가

2.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파산, 해산, 영업정지 등(이하 “파산 등”이라 한다.)의 상태에 있는 경우 해당구성원

④ 제3항제2호에 따라 공동이행방식으로 참여한 구성원을 평가에서 제외할 경우, 제외된 구성원의 참여지분율은 잔존구성원에게 배분하지 않는다.

제8조(입찰참가적격자 선정 결격 및 허위서류 발견 시 조치) ① 다음 각 호의 결격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입찰참가적격자 선정에서 제외한다.

1. 입찰공고시 요구하는 입찰참가자격 요건을 구비하지 못한 경우

2. 서류제출 마감기한 후에 “사업수행능력평가서”가 접수된 경우

3. “수행능력평가서”의 내용이 허위, 변조, 위조 등 부정확한 방법으로 작성된 것으로 판명되거나 서류의 작성이 현저히 부실하여 객관적인 평가가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4. 기준에 미 충족되는 증빙서류를 첨부한 후 자기평가서 점수를 충족요건 점수로 부여한 경우

5. 공동수급체 대표자가 파산 등의 상태에 있는 경우(사업수행능력 평가결과를 통보한 후 낙찰자 선정 이전에 당해 사실이 발생한 경우 포함)

6. 입찰공고 시 제시한 배치기준에 따라 평가대상 참여기술인을 배치하지 않은 경우

7. 공동이행방식에 의한 공동계약일 때 각 공동수급체 구성원을 최소한 1명 이상 참여시키지 아니한 경우 및 각 공동수급체 구성원의 참여 지분율에 따른 기술인을 평가대상 참여기술인에 참여시키지 아니한 경우

8. 면접평가, 기술인평가 자료에 업체인식이 가능하게 하거나 사업내용과 무관한 내용의 특정 로고, 문구, 도식 등을 사용하거나 면접평가 대상자 사진을

명함 전·후면부에 기입하여 사용하는 경우

9. 기타 다른 법령 등에 의한 결격사유 해당 시

② 평가서에 제출된 서류 중 내용이 허위임이 발견된 경우, 당해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 할 수 있으며,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 제한)에 의거 입찰참가 제한조치를 할 수 있다.

제9조(평가결과 통지 및 공개) ① 평가 결과(평가 사유서 포함)는 개찰 후 국방 시설본부 홈페이지(<http://www.dia.mil.kr>) 등에 공개하고, 해당 용역사업자에게 평가결과 및 적격여부를 통보한다.(유선, FAX 등)

② 신청자는 평가자의 오류 또는 중대한 착오 등으로 평가접수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평가결과를 공시한 날로부터 3일 이내(근무일 기준)에 서면으로 이의 신청을 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통지를 하거나 낙찰자를 선정하는 때에는 평가대상 참여기술인에 대한 배치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제10조(재평가) ① 제8조에 따라 적격자를 선정한 후 낙찰자 선정 이전에 파산 등의 결격사유가 발생한 경우 해당구성원을 제외하고 잔존구성원만으로 재평가한다.

② 적격자를 선정한 후 낙찰자 선정 이전에 신청서의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을 배치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와 참여기술인이 퇴직(퇴사)한 경우에는 해당 기술인(평가대상)를 제외하고 재평가한다.

③ 제9조제1항에 따라 통지를 받은 자가 이의 신청기한 내에 평가의 오류 또는 중대한 착오 등을 이유로 재평가를 요청한 경우에는 당해 내용을 검토하여 오류 또는 중대한 착오에 따른 결과임이 확인된 경우 3일 이내에 재평가한다.

④ 건설사업관리용역의 경우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 마감일 이후 당해 용역의 평가대상 참여기술인을 다른 건설사업관리용역에 중복적으로 배치하여 다른 건설사업관리용역의 낙찰자로 선정되었거나, 타 발주청과 계약을 체결한 경우(타 발주청이 국방부보다 먼저 낙찰자로 선정한 경우에 한함)에는 중복배치로 보아 부표3에 따라 업무중복도를 재평가한다.

제11조(기타사항) 사업분야별 세부평가기준을 정하거나 변경하는 경우, 또는 당해 용역의 특성을 고려하여 일시적으로 이 고시를 변경할 경우에는 특별건설기술심의위원회 또는 기술자문위원회의 심의를 사전에 받아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의를 받지 않고 별도로 입찰공고 등에 반영

하여 집행할 수 있다.

1. 이 고시 중의 일부 내용(의무사항 등)을 조정 또는 변경없이 사업분야별 세부평가기준(안)에 동일하게 명기하여 변경하는 경우
2. 사업분야별 세부평가기준(안)의 단순 오타나 누락된 부분을 정정하는 경우
3. 건설기술 진흥법 등 상위 법령과 행정규칙의 개정사항을 반영하는 경우

제12조(재검토기한) 국방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2024년 1월 2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에(매 3년째의 1월 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 칙<제정 2016. 1. 4>

- ① 이 기준은 2016년 3월 1일 이후에 입찰공고 하는 건설기술용역사업자 선정부터 적용한다.
- ② 이 기준의 시행과 동시에 국방부 설계 등 용역사업자의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국방부 고시 제2014-248호)과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국방부 고시 제2014-249호), 대미사업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국방부 고시 제2014-250호)은 폐지한다.

부 칙<2016. 11. 1>

- ① 이 기준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기술인평가 또는 제안서평가는 2017년 1월 1일 이후에 입찰공고 하는 건설기술용역사업자 선정부터 적용한다.
- ② 이 기준의 시행과 동시에 국방부 건설기술용역사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국방부 고시 제2016-1호)은 폐지한다.

부 칙<2018. 2. 28>

- ① 이 고시는 공고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기술인평가 또는 제안서평가는 2018년 3월 1일 이후에 입찰공고 하는 건설기술용역사업자 선정부터 적용한다.
- ② 이 고시의 시행과 동시에 국방부 건설기술용역사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국방부 고시 제2016-113호)은 폐지한다.

부 칙<2019. 5. 21>

- ① 이 고시는 공고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기술인평가 또는 제안서평가는 2019년 6월 1일 이후에 입찰공고 하는 건설기술용역사업자 선정부터 적용한다.
- ② 이 고시의 시행과 동시에 국방부 건설기술용역사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국방부 고시 제2018-005호)은 폐지한다.

부 칙<2020. 5. 18.>

- ① 이 고시는 공고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기술인평가는 2020년 6월 1일 이후에 입찰공고 하는 건설기술용역사업자 선정부터 적용한다.
- ② 이 고시의 시행과 동시에 국방부 건설기술용역사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국방부 고시 제2019-011호)은 폐지한다.

부 칙<2022. 12.20.>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23년 1월 10일 이후에 입찰공고 하는 건설엔지니어링 사업자 선정 시부터 적용한다.

부 칙<2024. 1. 2.>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24년 1월 15일 이후에 입찰공고 하는 건설엔지니어링 사업자 선정 시부터 적용한다.

[별표1] 기술인평가 대상 건설엔지니어링 선정 기준

1. 용역비 기준

가. 기술인평가

| 대상용역 | 대상 범위 |
|----------------|--|
| 설 계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용역비 10억원 이상 15억원 미만인 기본계획 또는 기본설계 ■ 용역비 15억원 이상 25억원 미만인 실시설계 |
| 정밀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용역비 2억원 이상인 정밀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 |

나. 용역비 기준 적용 시 기본계획, 기본설계, 실시설계 등을 통합하여 발주할 경우에는 통합용역중 하나 이상의 분야가 대상 범위를 충족해야 한다.

2. 난이도 기준

- 가. 공공의 안전 확보 및 역사문화 보전 등을 위하여 기술인의 특별한 설계 경험과 기술력이 필요한 건설엔지니어링
- 나. 국내 실적이 많지 아니하거나 복합공종, 입지, 지반조건 및 인접시설 등으로 인하여 특별한 고려가 필요한 건설엔지니어링
- 다. 신기술·신공법, 친환경 건설기법 등 기술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특별한 평가가 필요한 건설엔지니어링
- 라. 고난이도 시설 또는 특별한 안전관리가 요구되는 시설로 특별한 설계 경험과 기술력이 필요한 건설엔지니어링

| 공 종 | 공사 규모 |
|---|--|
| 1) 교 량 |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장대교(연장 500m 이상, 경간장 100m 이상) 특수교량(현수교, 사장교, 아치교, 트러스교 등) |
| 2) 항 만 가. 계류시설 | <ul style="list-style-type: none"> 동시 접안능력 1만톤급 이상의 말뚝, 중력, 부유식 등 계류시설 |
| 나. 외곽시설 | <ul style="list-style-type: none"> 총 연장 500m 이상의 방파제, 호안 등 시설 (총 연장 산정 시 계류시설의 연장 포함.) |
| 3) 비행장 가. 활주로 | <ul style="list-style-type: none"> 길이 1,800m 이상 활주로 |
| 나. 유도로/주기장 등 | <ul style="list-style-type: none"> 81,000㎡ 이상의 유도로/주기장 등 |
| 4) 건축물 가. 관람집회 시설 등 (1) 공연장, 집회장 (2) 관람장, 관람용도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1,000㎡ 이상인 운동장, 체육관 (3) 전시시설(전시장) (4) 종교시설 (5) 종합병원 | <ul style="list-style-type: none"> 바닥면적 5,000㎡ 이상인 건축물 |
| 나. 지하시설 | <ul style="list-style-type: none"> 연면적 10,000㎡ 이상인 지하시설 |
| 다. 그 밖의 건축물 | <ul style="list-style-type: none"> 21층 이상 또는 단일 건축물로 연면적 30,000㎡ 이상의 건축물 기둥과 기둥 사이의 거리가 30m 이상으로 주요 구조부가 공업화박판강구조(PEB), 강관 입체트러스(스페이스프레임), 막 구조, 케이블 구조, 부유식 구조인 건축물 |
| 5) 유류저장시설 | <ul style="list-style-type: none"> 유류저장량 1백만 리터 이상의 유류저장시설 |
| 6) 기타 시설 | <ul style="list-style-type: none"> 기타 특수한 기술력이 요구되거나 설계·공사기간 단축이 현저히 필요하다고 발주청이 인정하는 시설 |

[별표2] 설계 등 용역사업자의 수행실적평가 배점표 및 세부평가기준

| 평가항목 | 세부평가항목 | | 배점 |
|-----------------|--|---|---------------|
| [가] 참여기술인 | 사업책임기술인 | 등급 | 3 |
| | | 경력(단, 최대요구기간은 15년이 넘지 않도록 한다.) | 4 |
| | | 실적(해당분야 설계/단, 최대 요구 건수는 10건이 넘지 않도록 한다) | 5(8) |
| | | 기술능력 및 업무관리능력 | 3(0) |
| | 분야별책임기술인 | 등급(특급기술인과 고급기술인은 동일하게 평가) | 4 |
| | | 경력(단, 최대요구기간은 10년이 넘지 않도록 한다.) | 7 |
| | 분야별참여기술인 | 실적(해당분야 설계/단, 최대 요구 건수는 10건이 넘지 않도록 한다) | 8 |
| | | 등급(중급기술인 이상은 동일하게 평가) | 4 |
| | 교육훈련 | 경력(단, 최대요구기간은 5년이 넘지않도록 한다) | 5 |
| | | 실적(해당분야 설계/단, 최대 요구 건수는 5건이 넘지 않도록 한다) | 5 |
| 전차용역 수행실적 | .2주이상 교육을 이수한 경우 : (교육이수인원/평가대상인원)×1점 | 1 | |
| | .1주이상 2주미만 교육을 이수한 경우 : (교육이수인원/평가대상인원)×0.5점 | | |
| 전차용역 수행실적 | | .사업책임기술인 : 0.5점 .분야별 책임기술인 : 0.5점 | 1 |
| 【소계】 | | | 【50점】 |
| [나] 유사용역 수행실적 | 최근 5년간 회사의 설계실적 | 규모(금액 및 건수) | 12 |
| | 전차용역 수행실적 | 업체의 전차용역 수행정도에 따라 평가 | 1 |
| | 용역수행성과 | 해당 발주청에서 수행한 용역평가 결과에 따라 상대평가 | 2 |
| | 【소계】 | | |
| [다] 신용도 | 영업정지(업무정지) | 참여업체/참여기술인 | 3 |
| | 재정상태건실도 | 신용평가등급 | 3 |
| | 부실발점 | 참여업체와 참여기술인 | 2 |
| | 보안위규 벌점 | 참여업체와 참여기술인 | 2 |
| | 【소계】 | | |
| [라] 기술개발 및 투자실적 | 개발실적 | 건설신기술, 특허, 실용신안 | 2 |
| | 투자실적 | 최근3년간 투자실적평균비율 | 10 |
| | 활용실적 | 건설신기술, 특허, 실용신안의 시공실적 및 금액 | 3 |
| | 【소계】 | | |
| [마] 업무증복도 | 참여기술인의업무증복도 | 사업책임기술인 | 3 |
| | | 분야별책임기술인 | 4 |
| | | 분야별참여기술인 | 2 |
| | | 실무기술인 | 1 |
| | 【소계】 | | |
| 【총계】 | | | 【100점】 |
| 가점 | 건설기술인 신규고용 | | 0.3 |
| | 젊은 기술인 참여 | | 0.2 |

주1. () : 용역비 5억 원 미만인 경우 또는 기술 및 업무관리능력 평가 생략 시 적용 배점

주2. 해당분야 설계는 입찰공고에 명시한 참여기술인의 직무(전문)분야에서의 설계 실적

| 영역 가 목 | 세부평가항목 | 배점 | 점 수 계 산 방 법 | | | | | |
|---------------|----------------------|------------------|--|---|-------------------------|-------------------------|-------------------------|------------------|
| | | | 특급 | 고급 | 중급 | 초급 | - | |
| 참 여 기술인 | 사 업 책임기술인 | 등 급 | 3 | 3.0 | - | - | - | - |
| | | 경 력 | 4 | 15년이상 4.0 | 13년이상 3.6 | 11년이상 3.2 | 9년이상 2.8 | 9년미만 2.4 |
| | | 실 적 | 5 (8) | 10건이상 5.0(8.0) | 8건이상 4.5(7.2) | 6건이상 4.0(6.4) | 4건이상 3.5(5.6) | 4건미만 3.0(4.8) |
| | | 기술능력 및 업무관리능력 | 3(0) | 최우수 3.0 | 우수 2.7 | 보통 2.4 | 미흡 2.1 | 불량 1.8 |
| | 분 야 별 책임기술인 | 등 급 | 4 | 특급 4.0 | 고급 4.0 | 중급 3.6 | 초급 3.2 | - |
| | | 경 력 | 7 | 10년이상 7.0 | 8년이상 6.3 | 6년이상 5.6 | 4년이상 4.9 | 4년미만 4.2 |
| | | 실 적 | 8 | 10건이상 8.0 | 8건이상 7.2 | 6건이상 6.4 | 4건이상 5.6 | 4건미만 4.8 |
| | 분 야 별 참여기술인 | 등 급 | 4 | 특급 4.0 | 고급 4.0 | 중급 4.0 | 초급 3.6 | - |
| | | 경 력 | 5 | 5년이상 5.0 | 4년이상 4.5 | 3년이상 4.0 | 2년이상 3.5 | 2년미만 3.0 |
| | | 실 적 | 5 | 5건이상 5.0 | 4건이상 4.5 | 3건이상 4.0 | 2건이상 3.5 | 2건미만 3.0 |
| | 교육훈련 | 교육훈련 | 1 | -참여건설기술인이 최근 3년간 법 제2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교육 훈련을 이수한 정도에 따라 평가 .2주이상 교육을 이수한 경우 : (교육이수인원/평가대상인원)×1점 .1주이상 2주미만 교육을 이수한 경우 : (교육이수인원/평가대상인원)×0.5점 | | | | |
| | 전차용역 수행실적 | 전차용역 수행실적 | 1 | -참여건설기술인의 전차용역 참여형태 및 참여기간에 따라 평가 .사업책임기술인 : 0.5점 .분야별 책임기술인 : 0.5점 (당해용역과 관련된 전차용역이 없는 경우 전차용역 수행실적 배점 1점은 참여기술인 교육훈련 배점에 합산한다.) | | | | |
| 유사용역 수행실적 | 건 수 | 6 | 7건이상 6.0 | 6건이상 5.4 | 5건이상 4.8 | 4건이상 4.2 | 4건미만 3.6 | |
| | | 6 | 70억이상 6.0 | 60억이상 5.4 | 50억이상 4.8 | 40억이상 4.2 | 40억미만 3.6 | |
| | 전차용역 수행실적 | 1 | - 업체의 전차용역 수행정도(용역의 종류, 용역수행 후 경과기간, 단독·공동·하도급 여부, 당해용역이 전차용역에서 해당하는 비율(면적, 길이, 금액) 등에 따라 평가 * 전차용역이라 함은 당해 용역의 前단계 용역을 말하며, 이를 수행한 용역업자 및 참여기술인에 대하여 평가 - 하나의 용역에서 여러 지구를 수행하거나 여러 사업분야가 복합된 경우에는 당해용역에서 수행하는 지구 또는 사업분야만 적용 - 발주청은 집행계획공고 또는 입찰공고 시 당해용역에 인정되는 전차용역 및 인정범위, 인정기준 등 세부기준을 제시하여야 함.(당해용역과 관련된 전차용역이 없는 경우 전차용역 수행실적 배점 1점은 유사용역수행실적 건수 또는 금액 배점에 합산한다.) | | | | | |
| | | 2 | - 업체가 해당 발주청에서 수행한 용역평가 결과에 따라 평가하며, 해당 발주청의 상무기관에서 수행한 용역평가 결과를 활용할 수 있음. * 용역평가는 건진법 제50조에 따른 평가를 원칙으로 하되, 용역 특성을 반영하여 발주청에서 별도로 정한 평가의 결과를 활용할 수 있음(필요시 입찰공고에 명시) - 해당 발주청에서 발주한 용역 성과가 없는 업체에 대해서는 용역수행평가기 "1.8" 또는 "1.6"의 점수를 부여할 수 있으며, 발주청에서 집행계획공고 또는 입찰공고시 기준을 제시하여야 한다. | | | | | |
| | 용역수행성과 | 2 | 용역평가 결과 점수 | 95점 이상 2 | 95점 미만 92점 이상 1.8 | 92점 미만 89점 이상 1.6 | 89점 미만 86점 이상 1.4 | 85점 미만 1.2 |
| | | | | | | | | |

() : 용역비 5억 원 미만 또는 기술 및 업무관리능력 평가 생략 시 적용 배점

※ 용역비 5억 미만 용역은 기술능력 및 업무관리능력 평가를 생략. 다만,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타당성 조사, 기본계획 등 고도의 기술력이 필요한 경우는 기술능력 및 업무관리 능력 평가 가능

| 영역 가 목 | 세부평가항목 | 배점 | 점 수 계 산 방 법 | | | | | | | | | | | | | | | | | | | |
|--|---|--|---|-------------------|-------------------|-------------------|----------|-------------------|-------------------|-------------------|--|-----------------|-------------------|--------|------------|--------|--------|--------|--------|-------------|--------|-----|
| | | | 회사채 | 기업어음 | 기업신용 | 점 수 | 평가 | | | | | | | | | | | | | | | |
| 신용도 | 영업정지 (업무정지) | 3 | - 용역사업자가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44조 제1항제2호 나목의 규정에 의한 설계 등 용역업무와 관련하여 관계법령에 따라 최근 1년간 영업정지(과징금 부과처분 포함) 받은 기간을 합산하여 합산기간 1월마다 0.2점씩 감점(1월 미만인 경우 1월로 계산) - 참여기술인이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44조 제1항제2호 나목의 규정에 의한 설계 등 용역업무와 관련하여 최근 1년간 관계법령에 따라 기술자격정지 또는 업무정지를 받은 기간을 합산하여 합산기간 1월마다 0.2점씩 감점(1월 미만인 경우 1월로 계산) - 공동이행방식으로 용역을 수행하는 경우에는 공동수급체의 구성원별 평가점수에 용역참여지분율을 곱하여 산정한 후 이를 합산 | | | | | | | | | | | | | | | | | | | |
| | | 3 | 1) 재정상태 건설도는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table border="1"> <tr> <td>회사채</td> <td>BBB-이상</td> <td>BBB-미만 B-이상</td> <td>CCC+ 이하</td> <td>미제출</td> </tr> <tr> <td>기업어음</td> <td>A3-이상</td> <td>A3-미만 B-이상</td> <td>C이하</td> <td>미제출</td> </tr> <tr> <td>기업신용</td> <td>BBB-이상</td> <td>BBB-미만 B-이상</td> <td>CCC+이하</td> <td>미제출</td> </tr> </table> | | | | | 회사채 | BBB-이상 | BBB-미만 B-이상 | CCC+ 이하 | 미제출 | 기업어음 | A3-이상 | A3-미만 B-이상 | C이하 | 미제출 | 기업신용 | BBB-이상 | BBB-미만 B-이상 | CCC+이하 | 미제출 |
| | | 회사채 | BBB-이상 | BBB-미만 B-이상 | CCC+ 이하 | 미제출 | | | | | | | | | | | | | | | | |
| | 기업어음 | A3-이상 | A3-미만 B-이상 | C이하 | 미제출 | | | | | | | | | | | | | | | | | |
| 기업신용 | BBB-이상 | BBB-미만 B-이상 | CCC+이하 | 미제출 | | | | | | | | | | | | | | | | | | |
| 3 | <table border="1"> <tr> <td>점 수</td> <td>3.0</td> <td>2.8</td> <td>2.1</td> <td>0</td> </tr> </table> | | | | | 점 수 | 3.0 | 2.8 | 2.1 | 0 | | | | | | | | | | | | |
| 점 수 | 3.0 | 2.8 | 2.1 | 0 | | | | | | | | | | | | | | | | | | |
| 부실발점 | 2 | - 최근 2년간 설계용역과 관련하여 용역사업자 및 참여건설기술인이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87조에 따른 벌점을 받은 경우 같은 법 시행령 별표8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감점 * 점수계산은 참여용역사업자 및 참여기술인의 합산 벌점에 따라 감점 - 공동이행방식으로 용역을 수행하는 경우에는 공동수급체의 구성원별 평가점수에 용역참여지분율을 곱하여 산정한 후 이를 합산 | | | | | | | | | | | | | | | | | | | | |
| 보안위규벌점 | 2 | 1) 군사기밀보호법 시행령 제5조(군사기밀의 보호조치 등)를 위반한 경우에는 0점 처리함(최근 3년간). 2) 군사보안 위배를 한 경우 각 등급에 따라 감점 처리함. <table border="1"> <tr> <td colspan="2">세부평가기준</td> <td>등 급</td> <td>평 점</td> </tr> <tr> <td colspan="2" rowspan="4">군사보안 위배관련 최근 3년간 누계 감점 (세부내용 첨부 6 참조)</td> <td>A. 심 각</td> <td>-1.0감점</td> </tr> <tr> <td>B. 중 대</td> <td>-0.8감점</td> </tr> <tr> <td>C. 경 미</td> <td>-0.6감점</td> </tr> <tr> <td>D. 미 흡</td> <td>-0.4감점</td> </tr> </table> | | | | | 세부평가기준 | | 등 급 | 평 점 | 군사보안 위배관련 최근 3년간 누계 감점 (세부내용 첨부 6 참조) | | A. 심 각 | -1.0감점 | B. 중 대 | -0.8감점 | C. 경 미 | -0.6감점 | D. 미 흡 | -0.4감점 | | |
| | 세부평가기준 | | 등 급 | 평 점 | | | | | | | | | | | | | | | | | | |
| 군사보안 위배관련 최근 3년간 누계 감점 (세부내용 첨부 6 참조) | | A. 심 각 | -1.0감점 | | | | | | | | | | | | | | | | | | | |
| | | B. 중 대 | -0.8감점 | | | | | | | | | | | | | | | | | | | |
| | | C. 경 미 | -0.6감점 | | | | | | | | | | | | | | | | | | | |
| | | D. 미 흡 | -0.4감점 | | | | | | | | | | | | | | | | | | | |
| 2 | <table border="1"> <tr> <td>구 분</td> <td>5년 미만</td> <td>5년 이상 10년 미만</td> <td>10년이상 20년미만</td> </tr> <tr> <td>특허</td> <td>100%</td> <td>80%</td> <td>60%</td> </tr> <tr> <td>실용신안</td> <td>100%</td> <td>80%</td> <td>-</td> </tr> </table> | | | | | 구 분 | 5년 미만 | 5년 이상 10년 미만 | 10년이상 20년미만 | 특허 | 100% | 80% | 60% | 실용신안 | 100% | 80% | - | | | | | |
| 구 분 | 5년 미만 | 5년 이상 10년 미만 | 10년이상 20년미만 | | | | | | | | | | | | | | | | | | | |
| 특허 | 100% | 80% | 60% | | | | | | | | | | | | | | | | | | | |
| 실용신안 | 100% | 80% | - | | | | | | | | | | | | | | | | | | | |
| 기술개발 및 투자실적 | 개발실적 | 2 | - 개발실적은 건설기술, 특허, 실용신안을 대상으로 「건설기술진흥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건설기술과 관련된 개발실적을 인정하되, 건설기술은 용역사업자(대표자 포함, 소속직원 제외) 명의로 지정된 경우에 한하여 인정하고 특허 및 실용신안은 용역사업자(대표자 포함, 소속직원 제외)가 최초 출원인으로 등록된 경우에 한하여 인정 - 「건설기술진흥법」 제14조에 따라 지정된 건설기술은 보호기간 내에 있는 경우 인정하며, 건설기술에 관한 특허 또는 실용신안은 특허등록 결정 또는 실용신안(등록유지결정을 받은 경우에만 인정)을 받은 경우 출원일로부터의 경과 기간에 따라 차등하여 합산한 후 평가 - 건설기술 : 2.0점/건 - 건설기술에 관한 특허 : 1.0점/건 - 건설기술에 관한 실용신안 : 0.5점/건 ※ 경과기간에 따라 가중치 부여 | | | | | | | | | | | | | | | | | | | |
| | | 10 | 1) 최근3년간 기술개발투자실적의 건설부문 총매출액에 대한 비율(건설기술개발투자액/건설부문 총매출액)에 따라 계산 <table border="1"> <tr> <td>구분</td> <td>1.50% 이상</td> <td>1.50% 미만 1.25% 이상</td> <td>1.25% 미만 1.00% 이상</td> <td>1.00%미만 0.75%이상</td> <td>0.75% 미만 0.50% 이상</td> </tr> <tr> <td>점수</td> <td>10.0</td> <td>9.0</td> <td>8.0</td> <td>7.0</td> <td>6.0</td> </tr> </table> | | | | | 구분 | 1.50% 이상 | 1.50% 미만 1.25% 이상 | 1.25% 미만 1.00% 이상 | 1.00%미만 0.75%이상 | 0.75% 미만 0.50% 이상 | 점수 | 10.0 | 9.0 | 8.0 | 7.0 | 6.0 | | | |
| | 구분 | 1.50% 이상 | 1.50% 미만 1.25% 이상 | 1.25% 미만 1.00% 이상 | 1.00%미만 0.75%이상 | 0.75% 미만 0.50% 이상 | | | | | | | | | | | | | | | | |
| 점수 | 10.0 | 9.0 | 8.0 | 7.0 | 6.0 | | | | | | | | | | | | | | | | | |
| 10 | <table border="1"> <tr> <td>구분</td> <td>1.50% 이상</td> <td>1.50% 미만 1.25% 이상</td> <td>1.25% 미만 1.00% 이상</td> <td>1.00%미만 0.75%이상</td> <td>0.75% 미만 0.50% 이상</td> </tr> <tr> <td>점수</td> <td>10.0</td> <td>9.0</td> <td>8.0</td> <td>7.0</td> <td>6.0</td> </tr> </table> | | | | | 구분 | 1.50% 이상 | 1.50% 미만 1.25% 이상 | 1.25% 미만 1.00% 이상 | 1.00%미만 0.75%이상 | 0.75% 미만 0.50% 이상 | 점수 | 10.0 | 9.0 | 8.0 | 7.0 | 6.0 | | | | | |
| 구분 | 1.50% 이상 | 1.50% 미만 1.25% 이상 | 1.25% 미만 1.00% 이상 | 1.00%미만 0.75%이상 | 0.75% 미만 0.50% 이상 | | | | | | | | | | | | | | | | | |
| 점수 | 10.0 | 9.0 | 8.0 | 7.0 | 6.0 | | | | | | | | | | | | | | | | | |

| 평가 가 목 | 세부평가항목 | 배점 | 점 수 계 산 방 법 | | | | | | | | | | | | | | | | | | | | | | | | |
|-------------------|--------|-----------|---|-----------|---|--|--|--|--|-----|-----|-----|-----|-----|-----|----------|-----|---------|---------|---------|---------|-----------|------|-----------|-----------|-----------|-----------|
| 기술개발 및 투자실적 | 활용실적 | 3 | 1) 「건설기술진흥법」 제14조에 따라 지정된 건설기술, 건설기술에 관한 특허 또는 실용신안의 실제 활용실적 건수와 금액에 따라 평가 2) 용역사업자가 건설기술을 보호기간내 공공공사의 설계에 적용하고, 해당 설계용역이 입찰공고일 이전에 준공된 실적에 한하여 인정(단, 이 경우 입찰공고일은 보호기간 내에 있어야함) 3) 건설기술에 관한 특허 및 실용신안은 용역사업자(대표자 포함, 소속직원 제외)가 최초 출원인으로 등록되어, 최초 출원인이 등록권리 만료기간 내에 설계에 적용하고 공사에 반영되어 실제 활용한 실적에 한하여 인정(단, 특허, 실용신안은 경과기간에 따라서 개발 실적에서 적용하는 가중치도 포함하여 계산) - 건설신기술 : 1.0점/건 - 건설기술에 관한 특허 : 0.6점/건 - 건설기술에 관한 실용신안 : 0.3점/건 ※ 활용실적에 따라 가중치 부여 (건설신기술, 특허, 실용신안) <table border="1" style="width:100%; text-align:center;"> <tr><th colspan="6">가 중 치</th></tr> <tr><th>구 분</th><th>1.0</th><th>0.9</th><th>0.8</th><th>0.7</th><th>0.6</th></tr> <tr><th>활용건수 (건)</th><td>5이상</td><td>5미만 4이상</td><td>4미만 3이상</td><td>3미만 2이상</td><td>2미만 1이상</td></tr> <tr><th>활용금액 (억원)</th><td>20이상</td><td>20미만 18이상</td><td>18미만 16이상</td><td>16미만 14이상</td><td>14미만 12이상</td></tr> </table> ※ 활용실적에 따른 가중치는 활용건수, 활용금액 중 하나의 조건을 만족하면 인정 | 가 중 치 | | | | | | 구 분 | 1.0 | 0.9 | 0.8 | 0.7 | 0.6 | 활용건수 (건) | 5이상 | 5미만 4이상 | 4미만 3이상 | 3미만 2이상 | 2미만 1이상 | 활용금액 (억원) | 20이상 | 20미만 18이상 | 18미만 16이상 | 16미만 14이상 | 14미만 12이상 |
| | | | 가 중 치 | | | | | | | | | | | | | | | | | | | | | | | | |
| 구 분 | 1.0 | 0.9 | 0.8 | 0.7 | 0.6 | | | | | | | | | | | | | | | | | | | | | | |
| 활용건수 (건) | 5이상 | 5미만 4이상 | 4미만 3이상 | 3미만 2이상 | 2미만 1이상 | | | | | | | | | | | | | | | | | | | | | | |
| 활용금액 (억원) | 20이상 | 20미만 18이상 | 18미만 16이상 | 16미만 14이상 | 14미만 12이상 | | | | | | | | | | | | | | | | | | | | | | |
| 업 무 중복도 | 합 계 | 100 | - 당해용역 업무중복도 평가대상자(사업책임기술인, 분야별 책임기술인, 분야별 참여기술인, 실무기술인)가 다른 설계 등 용역의 사업책임기술인, 분야별 책임기술인, 분야별 참여기술인, 실무기술인으로 참여하고 있는 경우 중복비율을 산정하여 평가. - 수행중인 타 용역 중복비율(=수행중인 다른 용역들의 중복기간 합계 /해당용역기간×100)에 따라 평가 - 공고일 기준 잔여과업기간이 3개월 이상인 용역을 기준으로, 계약금액이 고시금액 이상인 용역에 한해 감점 적용(단, 공고일 현재 3개월 이상 용역중지중인 사업에 대하여는 중복기간에 미산입) - 이 법 및 다른 법령에서 명칭과 절차가 규정되어 있는 용역으로, 용역기간에 비해 기술인의 투입량이 많지 않은 사후환경조사용역, 사후지하안전영향조사용역, 사후모니터링, 해양환경조사 등은 중복도 평가에서 제외 - 이 법 및 다른 법령에서 명칭과 절차가 규정되어 있지 않은 용역으로, 용역기간에 비해 기술인의 투입량이 많지 않은 사후관리용역 등은 발주청이 판단하여 중복도 평가에서 제외할 수 있음 * 이 때 용역이 참여하는 실무기술인이 없는 경우 실무기술인 업무중복도 점수는 0점 부여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사업책임기술인 | 3 | - 참여기술인 중 사업책임기술인으로 등급·경력·실적 평가를 받은 기술인의 중복도로 평가 | | | | | | | | | | | | | | | | | | | | | | |
| | | | 분야별 책임기술인 | 4 | - 참여기술인 중 분야별 책임기술인으로 등급·경력·실적 평가를 받은 기술인의 중복도로 평가 - 분야별 책임기술인 업무중복도는 업무 참여도를 고려하여 주공종 분야인 3~5분야에 참여하는 기술인(분야별 1인)에 대해서만 평가한다. | | | | | | | | | | | | | | | | | | | | | | |
| | | | 분야별 참여기술인 | 2 | - 참여기술인 중 분야별 참여기술인으로 등급·경력·실적 평가를 받은 기술인의 중복도로 평가 - 분야별 참여기술인 업무중복도는 업무 참여도를 고려하여 주공종 분야인 3~5분야에 참여하는 기술인(분야별 1인)에 대해서만 평가한다. | | | | | | | | | | | | | | | | | | | | | | |
| | | | 실무기술인 | 1 | - 용역에 참여하지만, 등급·실적·경력 평가를 받지 않는 실무기술인의 중복도로 평가 - 실무기술인 업무중복도는 업무 참여도를 고려하여 주공종 분야인 3~5분야에 참여하는 기술인(해당분야 실무기술인 전체)에 대해서만 평가한다. | | | | | | | | | | | | | | | | | | | | | | |

| 평가 가 목 | 세부평가항목 | 점 수 계 산 방 법 | | | | | | | | | | | | | | |
|--|---------------|---|--|--|--|--|--|----|-------|-------|-------|--|--|------|-------|------|
| 가 점 | 건설기술인 신규고용 | - 건설기술인 신규고용에 따라 가점 부여 . 1% 이상 : 0.1점 . 2% 이상 : 0.2점 . 3% 이상 : 0.3점 * 건설기술인 신규 고용율 = 최근 1년간 건설기술인 신규 고용인원(입찰 공고일 전월 기준) / 직전년도 동기간 평균 고용인원 * 신규 건설기술인은 입찰공고일 현재 해당업체 재직 중인 자로 건설기술인 경력관리 수탁기관의 경력증명서에 최초로 입사 등록된 자(이전 건설분야 근무경력이 없는 자)에 한함 * 직전년도 동기간 평균 고용인원은 건설기술인 경력관리 수탁기관에 신고한 자로서 해당업체의 기술인 재직인원(월말 기준)을 월단위로 평균하여 산정 - 건설기술인 경력관리 수탁기관에서 확인한 후 발급한 자료로 평가 - 공동이행방식으로 용역을 수행하는 경우에는 공동수급체의 구성원별 평가점수에 용역참여비율을 곱하여 산정한 후 이를 합산 | | | | | | | | | | | | | | |
| | 젊은 기술인 참여 | - 건설기술인 경력관리 수탁기관의 경력증명서상 건설엔지니어링업체에서 근무한 전체 경력이 5년 미만인 기술인이 당해 용역에 참여한 경우에는 전체 참여인원수에 대한 비율에 따라 가점 부여 <table border="1" style="width:100%; text-align:center;"> <tr><th colspan="5">당해 설계참여 인원비율 (당해 용역에 참여하는 근무경력 5년 미만 기술인/당해 용역 전체 참여인원수×100)</th></tr> <tr><th>가점</th><th>5% 이상</th><th>3% 이상</th><th>1% 이상</th><th></th></tr> <tr><td></td><td>0.2점</td><td>0.15점</td><td>0.1점</td><td></td></tr> </table> | 당해 설계참여 인원비율 (당해 용역에 참여하는 근무경력 5년 미만 기술인/당해 용역 전체 참여인원수×100) | | | | | 가점 | 5% 이상 | 3% 이상 | 1% 이상 | | | 0.2점 | 0.15점 | 0.1점 |
| 당해 설계참여 인원비율 (당해 용역에 참여하는 근무경력 5년 미만 기술인/당해 용역 전체 참여인원수×100) | | | | | | | | | | | | | | | | |
| 가점 | 5% 이상 | 3% 이상 | 1% 이상 | | | | | | | | | | | | | |
| | 0.2점 | 0.15점 | 0.1점 | | | | | | | | | | | | | |

※ 위 별표2의 사업수행능력 평가에 대한 일반사항 및 항목별 세부평가방법은 부표2에 따른다.

[부표2] 설계 등 용역사업자 수행실적에 대한 평가방법 및 세부기준

I. 일반사항

1. 참여건설기술인의 경력 및 실적, 유사용역수행실적·신용도·기술개발 및 투자실적·업무중복도·해외 설계수행실적·전차용역 수행실적·참여건설기술인 해외용역 참여실적 등은 “국토교통부 장관의 위탁업무수행기관 등 지정”(국토교통부 고시)에 따른 위탁업무수행기관, 해당 전문기관 또는 해당 용역 발주청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2. 수행실적평가에서 선정된 설계용역사업자와 관련하여 평가점수에 영향을 미치는 상이한 부분이 발견되어 해당 설계용역사업자를 입찰참가자 선정에서 제외하였을 경우에는 그 사유를 설계용역사업자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잔여 설계용역사업자만을 입찰에 참여할 자로 선정한다.
3. 발주청은 기타분야의 책임기술인 기술능력 및 업무관리능력 평가기준(첨부 2)을 참고하여 책임기술인의 기술 및 업무관리능력 평가에 포함하여야 할 사항을 사전에 정하여야 한다. 단, 기술능력 및 업무관리능력 평가를 생략한 경우 배점 3점은 책임기술인의 실적에 합산하여 평가한다.
4. 발주청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 심의하기 위하여 평가위원회(발주청 설계자문위원회 또는 특별건설기술심의위원회 위원과 발주청의 소속직원 중에서 위원이 편중되지 않도록 하여 3인 이상으로 구성한다)를 구성·운영하여야 하며 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결정한다.
 - 가. 평가기준 작성 시 그 적정성에 관한 사항
 - 나. 발주청의 평가기준에 대한 해석 및 적용에 관하여 이의제기 등이 발생한 경우 그 판단에 관한 사항
 - 다. 제출된 평가서 내용 중 사실과 다르거나 누락사항 발생 시 그 처리에 관한 사항
 - 라. 기타 발주청의 장이 평가위원회의 의견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사항
5. 입찰 참여사는 사업수행능력평가에 필요한 증빙서류에 대한 확인각서(첨부 8)를 제출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원본대조필 및 간인처리를 생략할 수 있다.

II. 항목별 세부평가방법

1. 평가방법은 절대평가를 원칙으로 하며, 점수가 합리적 통계 등에 의하여 선정하기 곤란하거나 평가의 변별력이 필요한 경우에는 상대평가에 의한다.
2. 상대평가시 등급별 배분은 수(10%), 우(20%), 미(40%), 양(20%), 가(10%)로 하고, 점수는 수(100%), 우(90%), 미(80%), 양(70%), 가(60%)로 배분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평가등급 및 등급별 배분, 점수 기준을 조정할 수 있다. 평가 결과 동점자 발생 시 상위 등급을 부여할 수 있으며, 해당 발주청에서 발주한 용역 성과가 없는 업체에 대해서는 용역수행평가시 중간값 “미”의 점수를 부여할 수 있다.
3. 사업책임기술인 및 분야별 책임기술인은 전원을, 분야별 참여기술인은 분야별 참여기술인 각 1인을 대상으로 평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나, 사업의 특수성을 감안하여 평가대상 기술인수를 조정하는 경우 공고문에 별도로 명시한다. 이 때, 업무중복도 평가는 사업책임기술인은 전원, 분야별 책임기술인, 분야별 참여기술인 업무참여도를 고려한 주공종분야인 3 ~ 5분야에 참여하는 분야별 1인에 대해서만 평가하며, 등급·실적·경력 평가를 받지 않는 실무기술인은 업무참여도를 고려한 주공종분야인 3 ~ 5분야에 참여하는 해당분야 실무기술인 전체에 대해서 평가한다.
4. 참여기술인의 평가는 다음 각 목을 적용한다.
 - 가. 참여기술인의 평가는 영 제4조 별표1의 기준에 따라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기술 자격자와 학력 또는 경력에 의한 건설기술인을 등급별로 평가한다.
 - 나. 참여기술인의 경력은 자격취득시기, 자격보유여부에 관계없이 해당 사업분야의 설계, 시공, 시험, 검사(품질·시험·검사를 포함한다.), 품질관리, 건설사업관리,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유지관리 또는 이와 관련된 감독·감리수행 등의 건설업 경력기간(일수)에 따라 평가한다. 참여기술인의 실적은 입찰공고시 명시한 해당분야(전문 또는 직무분야) “설계 등 용역” 업무를 수행한 실적을 건수로 평가하며(단일용역의 기간 중 참여일수가 90일 이상이며 10년 이내의 용역에 한해 건수로 인정), 공고시 명시한 경우는 그에 따른다. 경력 및 실적은 위탁업무수행기관, 해당 현황 관리기관 또는 해당 용역 발주청의 확인을 받거나, 건설엔지니어링 실적관리수탁기관이 운영하는 실적관리시스템을 통해 확인한다.
 - 다. 참여기술인의 “경력 및 실적” 세부평가기준은 다음과 같다.
 - 1) 영문 또는 약자, 용역명이 생략된 경력증명서 상 담당업무는 설계에

한하여 인정한다(입찰공고 시 별도 명시한 경우는 그에 따른다.). 단, 용역명이 없거나 담당업무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인정하지 않는다.

예시) AAA PROJECT, 000 기지(이전) 시설공사 등

- 2) 협회가 발행한 경력증명 중 사업명, 수행기간, 직무분야, 담당업무가 명확히 기재된 경우에만 수행기간을 인정한다.
 - 3) 담당업무가 2개로 명시된 경우에는 50%를 인정하고, 담당업무가 3개 이상으로 명시된 경우에는 30%만 인정한다.
 - 4) 사업명이 다수로 표시된 경우에는 평가대상에서 제외한다.
 - 5) 참여기술인이 발주청·감독기관 또는 건설관련 업체의 임·직원으로서 해당분야의 설계업무를 감독한 경우에는 이를 해당분야의 경력 및 실적으로 인정
 - 6) 용역 참여기간 중 참여기간의 중복일수는 제외하여 평가한다.
- 라. 일괄입찰(기본설계 및 실시설계), 대안입찰(대안으로 입찰시)공사, 민간투자사업, 기부대 양여사업에 대한 참여기술인의 실적은 용역의 종류, 규모, 금액, 건수, 수행업무와 참여기간 비율을 적용하되, 낙찰자에 한하여 인정한다. 단, 책임기술인과 분야별 책임기술인에 한하며, 당해사업 해당 발주청의 확인을 득한 것에 한하여 인정한다.
- 마. 시행규칙 제21의 규정에 의한 건설관련업체의 임·직원이 아닌 자 중 건설기술인 경력관리수탁기관에 신고한 특급기술인으로서 설계의 경제성을 검토하는 가치공학적 설계검토기술·견적전문기술·시방서전문기술·기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특정분야기술인(이하 “계약직전문기술인”이라 한다)를 당해 용역의 분야별 책임기술인으로 참여시키고자 하는 때에는 해당업체의 기술인과 동일하게 평가할 수 있다. 이 경우 계약직 전문기술인은 당해 업체소속의 기술인과 동일한 권한과 책임을 가지며 해당업체는 이를 확인하는 내용을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 바. 평가대상사업에 대한 사업책임기술인, 분야별 책임기술인 및 분야별 참여기술인은 반드시 당해 용역수행에 참여하여야 하며, 당해용역에 참여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계약해제 또는 해지의 사유가 될 수 있으며, 발주부대별로 차기용역 평가시 이를 감점할 수 있다.
- 사. 참여건설기술인의 빈번한 이적사례 방지를 위해 이적기간에 따라 평가 점수를 감점할 수 있다(단, 회사의 부도, 파산, 해산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인한 이적과 이적 전 회사에서 5년 이상 장기 근속한 경우는 제외).

- 아. 분야별 책임 및 참여기술인은 공고문에 명시된 모든 분야별 건설기술인으로서 사업책임기술인과 별도로 편성하여야 하며 사업책임기술인은 사업진행의 전반적인 책임/총괄을 위하여 주업체의 기술인에 한하여 지정할 수 있다. 공고상에 명시한 기준 등급 미만의 기술인을 배치 시에는 업체의 입찰참가자격 미 충족으로 부적격 처리하며, 분야별 책임 및 참여기술인은 분야별 평가 후 산술평균으로 배점 부여한다.
- 자. 책임기술인의 기술능력 및 업무관리능력에 대한 평가는 특별한 기술력이 요구되는 용역사업 또는 발주부대(서)에서 요청시 발주부대(서)에서 정하는 양식(첨부 1)을 참고하여 업체가 제출한 기술능력 평가서와 업무관리능력 평가서를 서면으로 제출받아 상대평가 하여야 한다. 평가 생략 시 공고에 명시하여야 한다(평가서 미제출시 0점 처리).
- ※ 용역비 5억원 미만 용역은 기술능력 및 업무관리능력 평가를 생략한다. 다만, 건설기술관리법에 따른 타당성 조사, 기본계획 등 고도의 기술력이 필요한 경우는 기술능력 및 업무관리능력 평가 가능(기술능력 및 업무관리능력 평가를 생략한 경우 배점 3점은 책임기술인의 실적으로 대신한다.)
5. 전차용역이라 함은 당해 용역의 전 단계 용역사업, 즉, 당해 건설공사의 조사, 계획, 기본설계용역에 대한 사업을 말하며 이를 수행한 용역사업자 및 참여기술인(사업책임기술인 또는 분야별 책임기술인)에 대하여 평가하되, 당해 용역에 대한 전차용역이 없을 시에는 전체 참여업체에 대하여 배점한도를 적용한다.
 6. 유사용역수행실적에 대한 평가는 다음 각목과 같이 적용한다.
 - 가. 유사용역수행실적이라 함은 최근 5년간 당해 용역과 같거나 유사한 건설공사의 종류의 용역사업 중 준공된 실적을 말한다(진행 중인 용역은 실적으로 인정하지 아니한다.). 입찰공고 시 제시되는 당해용역과 같거나 유사한 종류의 건축물 또는 시설물에 대한 용역 수행실적에 따라 평가한다.
 - 나. 당해용역과 같거나 유사한 건설공사의 종류는 ‘건설기술인 등급 인정 및 교육·훈령 등에 관한 기준’(국토교통부 고시)에 따른다. 시설(물)은 동일 및 유사한 건설공사 종류가 없거나 적용이 곤란한 경우는 입찰공고에 반영하여 집행할 수 있다.

다. 국방·군사시설의 인정범위는 당해용역과 주공종(토목 등)이 일치하는 국방부 및 직할부대와 산하기관에서 발주한 모든 용역과 아래의 용역을 포함한다.

- 1) 사업시행자를 지정하고 시행하는 기부대양여사업의 경우에는 사업시행자가 발주한 설계용역을 수행한 경우
- 2) 사업시행자를 지정 없이 시행하는 기부대양여사업의 경우에는 사업이 완료되고, 국방관서로 소유권이 이전된 후 부터

라. 해당분야 또는 유사한 공종의 건설공사의 설계·시공 일괄입찰 또는 대안입찰방식으로 참여하여 낙찰자로 결정된 경우와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의한 사업시행자가 발주한 설계용역을 수행(실시계획 승인)한 경우에는 유사용역수행실적으로 인정한다.

마. 해당분야 또는 유사한 공종의 건설공사의 설계·시공 일괄입찰 또는 대안입찰방식으로 참여하여 설계보상 대상자로 결정된 경우에 유사용역 수행 실적은 건수 및 금액에 대하여 낙찰자의 80%로 한다.(입찰공고시 제시)

바. 실적금액(설계·시공일괄입찰 또는 대안입찰,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의한 설계용역에 한함)의 계상은 계약금액에 엔지니어링사업대가 기준 중 건설부문 요율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 범위 내에서 인정한다.

사. 외국정부 및 공공기관에서 발주한 설계용역 및 설계·시공일괄입찰(Design-Build 방식 포함)을 수행한 경우에는, 해당분야의 유사용역 실적(건수 및 금액)으로 인정한다(해외건설협회가 확인한 후 발급한 실적에 한함). 단, 금액은 준공일 기준으로 한국 화폐단위로 환산하여 산정한 금액으로 한다.

아. 유사용역수행실적의 인정범위는 유사용역실적의 지분금액(부가세 제외)이 기획재정부 고시금액 이상을 기준하여 건수 및 금액으로 평가한다(단, 발주청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배점기준을 입찰공고에 별도 명시하여, 평가할 수 있다).

1) 건수(6점)

| | | | | |
|------|------|------|------|------|
| 7건이상 | 6건이상 | 5건이상 | 4건이상 | 4건미만 |
| 6.0 | 5.4 | 4.8 | 4.2 | 3.6 |

2) 금액(6점)

| | | | | |
|-------|-------|-------|-------|-------|
| 70억이상 | 60억이상 | 50억이상 | 40억이상 | 40억미만 |
| 6.0 | 5.4 | 4.8 | 4.2 | 3.6 |

자. 용역평가결과는 국토안전관리원에 등재된 입찰공고일부터 최근 3년 이내의 용역평가결과를 활용하여 평가하며, 공동수급체의 경우 참여사별 지분율을 곱해 합산한 점수를 기입한다.(단, 발주청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입찰공고 시 별도의 평가기준을 명시하여 평가할 수 있다.)

차. 용역업체 상호간 임의로 체결한 하도급 관계는 인정치 않으며, 발주청 승인을 받고 체결된 하도급 계약만 인정한다. 이 경우, 실적 건수의 산정은 용역사업의 총용역비에 대한 하도급 계약금액 비율만큼 인정하도록 한다.

7. 재정상태건실도 평가는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하며 다음 각 목에 따라 적용한다.

가. 신용평가등급은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을 기준으로 하되, 기업어음 및 기업신용에 관한 신용등급도 활용(첨부 3)할 수 있다.

| | | | | |
|------|--------|-------------|--------|-----|
| 회사채 | BBB-이상 | BBB-미만 B-이상 | CCC+이하 | 미제출 |
| 기업어음 | A3-이상 | A3-미만 B-이상 | C이하 | 미제출 |
| 기업신용 | BBB-이상 | BBB-미만 B-이상 | CCC+이하 | 미제출 |
| 점수 | 3.0 | 2.8 | 2.1 | 0 |

나.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1호 또는 제4호의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정보업자가 입찰공고일 기준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는 회사채(기업어음 또는 기업신용)에 대한 신용평가등급(위의 신용정보업자가 신용평가등급, 등급평가일 및 등급유효기간 등을 명시하여 작성한 '신용평가등급확인서')을 기준으로 평가하여야 한다.

다. 합병한 업체에 대하여는 합병 후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으로 심사하여야 하며, 합병 후의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합병 대상업체 중 가장 낮은 신용평가등급을 받은 업체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하여야 한다.

라. 공동이행방식으로 용역을 수행하는 경우에는 공동수급체의 구성원별 평가점수에 용역참여지분율을 곱하여 산정한 후 이를 합산한다.

8. 신용평가등급에 의한 평가가 제한되는 경우 재정상태 건실도 평가는 정기결산서에 의한다. 다만, 신규·합병·분할 및 사업양수·도를 한 용역사업자는 다음 각목과 같이 적용한다.

가. 신규사업자 : 최초 결산서

나. 합병·분할 및 사업양수·양도를 한 사업자

- 1) 합병·분할에 따른 등기일 또는 사업양수·양도에 따른 신고수리일 기준으로 작성된 결산서

2) 등기일 또는 신고수리일로부터 1월이 경과한 날이 속하는 월말을 기준으로 작성된 결산서

다. 재정상태는 해당 용역사업자의 결산서에 따라 공인회계사 또는 세무사가 관계 법령에 의거 작성·확인한 재정상태 검토보고서 제출

라. 공동이행방식으로 용역을 수행하는 경우에는 재정상태 건실도에 용역 참여지분율을 곱하여 산정한 후 이를 합산하여 평가한다.

9. 영업정지(업무정지), 부실벌점, 보안위규벌점 평가방법은 다음과 같이 적용한다.

가. 영업정지(업무정지(산술평균 미적용), 과징금 부과처분 포함)

| 구 분 | 평가방법 |
|-------|-------------------|
| 참여업체 | 1.5 - (0.2 × 개월수) |
| 참여기술인 | 1.5 - (0.2 × 개월수) |

나. 부실벌점

1) 최근 2년간 설계용역과 관련하여 용역사업자 및 참여건설기술인이 건설 기술진흥법 시행령 제87조에 따른 벌점을 받은 경우 같은 법 시행령 별 표8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감점(점수계산은 참여용역사업자 및 참여기술인의 **합산벌점** 합계에 따라 감점)

2) 평가방법 : 해당배점(2점) - **합산벌점**에 따른 감점(산술평균 미적용)

| 누계평균벌점 | 1점미만 | 1점이상 2점미만 | 2점이상 5점미만 | 5점이상 10점미만 | 10점이상 |
|--------|------|-----------|-----------|------------|-------|
| 감점 | 0 | 0.2 | 0.5 | 1 | 2 |

다. 보안위규벌점

1) 보안위규벌점 대상은 참여업체 및 참여기술인을 평가하며, 평가방법은 다음과 같다.

가) 평가방법 : 해당배점(3점) - 합산(참여업체, 참여기술인)한 보안위규벌점에 따른 감점

* 지분율 및 산술평균 대상 제외

2) 최근 3년간 군사기밀보호법 시행령 제5조(군사기밀의 보호조치 등)를 위반한 경우에는 0점 처리한다.

3) 최근 3년간 군사보안 위배를 한 경우 각 등급(첨부 6)에 따라 아래와 같이 감점 처리함.

| 세부평가기준 | 등 급 | 평 점 |
|--|--------|--------|
| 군사보안 위배관련 최근 3년간 누계 감점 (세부내용 첨부 6 참조) | A. 심 각 | -1.0감점 |
| | B. 중 대 | -0.8감점 |
| | C. 경 미 | -0.6감점 |
| | D. 미 흡 | -0.4감점 |

10. 기술개발실적, 투자실적, 활용실적은 다음과 같이 적용한다.

가. 개발실적은 건설신기술, 특허, 실용신안을 대상으로 인정하되, 건설신기술은 용역사업자(대표자 포함, 소속직원 제외) 명의로 지정된 경우에 한하여 인정하고 특허 및 실용신안은 용역사업자(대표자 포함, 소속직원 제외)가 최초 출원인으로 등록된 경우에 한하여 인정한다.

나. 투자실적 평가

1) 건설기술개발 및 투자실적(재무제표상의 연구개발비, 교육훈련비 등)은 최근 3년간 건설부문 총매출액 합계에 대한 비율로 평가한다(다만, 회사 설립년수 부족으로 3년간 자료를 제출치 못하는 경우에는 제출된 년수를 기준으로 건설부문 총매출액 합계에 대한 비율로 평가한다).

2) 특허 또는 실용신안의 출원인(법인대표자와 법인과의 관계는 동일하게 인정)과 등록인이 상이한 경우와 사용권을 양수 또는 대여 받은 경우에는 이에 대한 비용을 투자실적으로 인정한다.

3) 용역사업자인 경우 공인회계사 또는 세무사가 증명한 최근 3개년 투자실적 제출

다. 활용실적은 다음 각 목과 같이 적용한다.

1) 용역사업자가 건설신기술을 보호기간 내에 공공공사의 설계에 적용하고, 공사에 반영되어 동 기간 내에 실제 활용한 실적(해당기술의 공사기성 완료시점)에 한하여 인정한다.

2) 건설기술에 관한 특허 및 실용신안은 용역사업자(대표자 포함, 소속직원 제외)가 최초 출원인으로 등록되어, 최초 출원인이 경과기간 내에 공공공사의 설계에 적용하고 공사에 반영되어 동 기간 내에 실제 활용한 실적(해당기술의 공사기성 완료시점)에 한하여 인정한다.

3) 건설신기술의 활용실적은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34조 제6항에 의해 제출된 활용실적에 대해 영 제117조 제1항에 의해 지정·고시된 기관의 건설신기술 활용실적 증명서를 제출한 경우에 한하여 적용한다.

4) 특허 및 실용신안의 활용실적은 발명진흥법 제52조에서 정한 전문기관의 특허 및 실용신안의 활용실적 증명서를 제출한 경우에 한하여 적용한다.

11. 업무중복도는 입찰공고일 기준 잔여과업기간이 3개월 이상인 용역을 기준으로, 당해용역 업무중복도 평가대상자(사업책임기술인, 분야별 책임기술인, 분야별 참여기술인, 실무기술인)이 계약금액이 고시금액 이상인 용역에 사업책임기술인, 분야별 책임기술인, 분야별 참여기술인, 실무기술인으로 참여하고 있는 경우 중복비율(=수행중인 다른 용역들의 중복기간 합계/해당용역 기간×100)로 산정하여 평가한다. 이때, 분야별 책임기술인, 분야별 참여기술인, 실무기술인은 감점의 합계를 산술평균하여 감점한다.

단, 중복도 평가대상은 공공기관에서 발주한 용역으로 하며(사후환경조사용역은 중복도 평가에서 제외), 공고일 기준 3개월 이상 용역중지 중인 사업, 발주처의 사유에 의하여 공기연장 된 사업은 발주청 확인(증빙) 서류 첨부 시 제외한다.

※ 중복도 평가대상은 '설계 등 용역사업자에 따른 설계자의 사업수행능력 평가로 한정한다.

※ 계산방법 : 점수 = 사업책임기술인 점수합계 + $(\frac{\text{분야별 책임기술인 점수합계}}{\text{분야별 책임기술인 인원수}})$ +

$$\frac{\text{분야별 참여기술인 점수합계}}{\text{분야별 참여기술인 인원수}} + (\frac{\text{실무기술인 점수합계}}{\text{실무기술인 인원수}})$$

- 사업책임기술인 점수

| 구 분 | 200% 미만 | 200% ~ 250%미만 | 250% ~ 300%미만 | 300% ~ 350%미만 | 350% 이상 |
|-----|---------|---------------|---------------|---------------|---------|
| 점 수 | 3.0 | 2.7 | 2.4 | 2.1 | 1.8 |

- 분야별 책임기술인 점수

| 구 분 | 200% 미만 | 200% ~ 250%미만 | 250% ~ 300%미만 | 300% ~ 350%미만 | 350% 이상 |
|-----|---------|---------------|---------------|---------------|---------|
| 점 수 | 4.0 | 3.6 | 3.2 | 2.8 | 2.4 |

- 분야별 참여기술인 점수

| 구 분 | 200% 미만 | 200% ~ 250%미만 | 250% ~ 300%미만 | 300% ~ 350%미만 | 350% 이상 |
|-----|---------|---------------|---------------|---------------|---------|
| 점 수 | 2.0 | 1.8 | 1.6 | 1.4 | 1.2 |

- 실무기술인 점수

| 구 분 | 200% 미만 | 200% ~ 250%미만 | 250% ~ 300%미만 | 300% ~ 350%미만 | 350% 이상 |
|-----|---------|---------------|---------------|---------------|---------|
| 점 수 | 1.0 | 0.9 | 0.8 | 0.7 | 0.6 |

※ 증빙서류 : 건설엔지니어링통합관리시스템 증명원

- 발주청 요구시, 중복도 확인을 위한 추가 관련서류(관련서류 : 공고일 이후 금융거래 확인원과 관련서류 제출계약보증 및 선급금 보증기간이 업무중복도 해당기간일 경우에는 해당용역의 계약서와 참여기술인 명단)를 제출 하여야 한다.

12. 업무중복도 평가에서 실무기술인은 용역에 참여하는 기술인 중 등급, 실적, 경력을 평가받지 않는 기술인을 의미하며, 입찰시 용역에 참여하는 모든 기술인 명단을 제출하여야 한다.

13. 분야별 참여기술인, 실무기술인의 업무중복도는 2019년 4월 1일 이후 계약을 체결한 용역에 대해서만 산정한다.

14. 참여기술인(실무기술인을 포함)의 업무중복도는 입찰공고일 기준으로 건설엔지니어링실적관리시스템(CEMS)에 등재되어 있는 자료로만 평가한다.

* 단, 2020년 6월 30일까지 CEMS 및 별도 증빙서류 등을 병행하여 평가한다.

15. 설계 등 용역사업자는 업무중복도 평가대상 실무기술인이 사업수행능력(PQ) 평가 이후 계약시까지 사망·질병·퇴직 등의 부득이한 사유로 당해 용역에의 참여가 불가능 경우에는 평가점수가 유지될 수 있는 실무기술인으로 교체할 수 있다. 이 경우, 교체로 인하여 당초 업무중복도 평가점수를 변동하지 아니한다.

16. 공동이행방식으로 용역을 수행할 경우에는 공동수급체 구성원별로 유사용역 수행실적·재정상태 건설도·기술개발 및 투자실적·해외설계 수행실적·전차용역 수행실적에 용역참여지분율을 곱하여 산정한 후 이를 합산하여 평가한다. 단, 공동이행방식으로 수행시 평가대상자에 해당되는 공동도급자의 참여기술인은 지분율대로 참여하여야 하며, 지분율에 의해 산정시 소수이하는 반올림하여 조정할 수 있다.

17. 관계법령에 따라 적법하게 하도급 계약을 체결한 용역사업자의 경우에는 하도급을 받은 만큼 그 실적을 인정한다. 이 경우, 하도급 실적 인정은 해당용역사업의 총용역비에 대한 하도급 계약금액 비율만큼 인정하도록 한다.

18. 해외설계용역수행실적은 용역계약서류 또는 해당국 발주청의 확인서 등 사실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해외건설협회가 확인한 후 발급한 실적(첨부 4)에 한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평가한다.

가. 해외설계용역실적의 인정범위는 건설공사에 대한 설계용역, 건설사업 관리 용역이 포함된 설계용역에 대하여 당해 설계용역과 같거나 유사한 설계 등 용역에 해당하는 실적에 대하여 인정한다. 단, 해외 현지 법인 또는 지사의 명의로 직접 계약하여 수행한 실적은 출자지분율을 곱하여 산정한 후 이를 합산한다.

나. 해외설계용역비는 해당 국가의 발주기관과 준공금액을 준공일 기준으로 한국 화폐단위로 환산하여 산정한 금액으로 한다.

19. 참여건설기술인의 해외용역 참여실적은 용역계약서류 또는 해당국 발주청의 확인서 등 사실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한국건설기술인협회가 확인한 후 발급한 실적(첨부 5)에 한하여 평가한다. 이 경우 해외설계용역 참여실적(해외 현지법인 또는 지사의 명의로 직접 계약하여 수행한 용역에 참여한 실적 포함)의 인정범위는 건설공사의 설계용역에 대하여 당해 설계용역과 같거나 유사한 설계 등 용역에 참여한 실적에 대하여 인정한다.

20. 발주청은 설계용역의 특성에 맞도록 당해 설계용역과 같거나 유사한 공종의 인정범위 등을 정하고 참여건설기술인의 경력 및 실적·유사용역수행실적·신용도·기술개발 및 투자실적, 업무중복도 평가 대상인 주공종 분야(3~5분야)에 대해서 별표1에 예시된 내용을 참고하여 세부적으로 작성한 후 입찰공고 시 이를 제시하여야 한다.

III. 수행실적평가서 작성방법

1. 제출서류 명세(사업수행능력평가서에 일괄 첨부 원칙)

가. 용역참여 신청서 1부

나. 용역관련 해당등록증 사본 각1부

1) 사업등록증, 등기사항증명서

2) 사용인감계, 인감증명서

다. 공동수급시 관련서류 각 1부

1) 공동수급협정서 및 각 참여업체 증빙서류

2) 공동도급 대표자 선임계

라. 보안서약서 사본 1부(비밀사업일 시)

마. 설계용역 수행실적평가서 1부

2. 서류 작성방법

가. 페이지 수 : 제한없음.

나. 인쇄 및 제본

1) 용지크기 : A4(210mm / 297mm)

2) 재 질 : 백상지(80g/㎡)

3) 인쇄방법 : 공판인쇄, 컴퓨터조판 인쇄

4) 제본방법 : 무선상철(끈이나 철선을 사용하지 않고 상단에 철함)

5) 구비서류 명세의 작성지침 및 별첨서식에 의거 작성

6) 제본순서

① 설계용역 수행실적평가서 (표지서식 1)

② 용역참여신청서(양식 1)

③ 용역관련 해당등록증 사본

④ 보안서약서 사본

⑤ 공동수급협정 체결현황 (양식 2)

⑥ 공동수급시 증빙서류

⑦ 참여기술인 명단 (양식 3)

⑧ 자기평가서 (양식 4)

⑨ 참여기술인 자격/경력 현황 (양식 5)

⑩ 참여기술인 경력증명서

⑪ 참여기술인 실적 현황 (양식 6)

⑫ 교육훈련 확인서

⑬ 전차용역 실적확인서

⑭ 유사용역 수행실적 (양식 7)

⑮ 유사용역 수행실적증명서 (양식 8)

- ⑩ 업체 및 기술인 자격·영업정지(업무정지) 등 (양식 9)
 - ⑪ 영업정지(업무정지) 등 증명서
 - ⑫ 재정상태 건실도(신용평가 등급확인서) (양식 10)
 - ⑬ 벌점 현황 (양식 11)
 - ⑭ 벌점 확인원
 - ⑮ 보안위규 현황(양식 12)
 - ⑯ 보안위규 관련 증명서
 - ⑰ 기술개발 및 투자실적(양식 13)
 - ⑱ 신기술지정증서 및 특허, 실용신안등록증 사본
 - ⑲ 투자실적 관련 세무서증명원
 - ⑳ 세무서 발급 최근 재무제표증명원
 - ㉑ 신기술 및 특허, 실용신안의 활용실적 증명원
 - ㉒ 참여기술인 업무중복도 현황 (양식 14)
 - ㉓ 업무중복도 증빙서류(건설엔지니어링실적관리시스템 증명원)
- * 발주청 요구시, 추가 관련서류 제출(관련서류 : 공고일 이후 금융거래 확인원과 관련서류 제출계약보증과 선급금 보증기간이 업무중복도 해당기간일 경우에는 해당용역의 계약서와 참여기술인 명단 제출)

다. 등록증 및 기타 제출서류 사본

- 1) 등록증 및 기타 제출서류 중 사본은 하단여백에 업체대표자 원본 대조필을 날인하여야 한다.

라. 기타사항

- 1) 수행실적평가에 필요한 서류를 위조, 변조, 허위 등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하여 제출한 경우에는 아래와 같이 처리하고 작성한 자(공동수급체의 경우에는 각 구성원을 말함)는 관련규정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제한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
 - 가) 계약체결 이전인 경우에는 적격낙찰자 결정대상에서 제외 또는 결정을 취소한다.
 - 나) 계약체결 이후인 경우에는 당해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 2)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서류 작성에 소요되는 비용은 지급하지 않는다.

첨부 1. 책임기술인 능력평가서 양식

용역

책임기술인 능력평가서

20 . .

업 체 명

210mm×297mm
(일반용지 60g/m²(제활용품))

1. 기술능력 평가서

1.1 당해 용역의 내용 및 이해도(1페이지 이내로 작성)

* 용역의 특성, 내용 및 범위, 용역 수행상 주안점 제시

1.2 당해 용역 관련 유사사업 제시(5건을 3페이지 이내로 작성)

| 구분 | 사업명 | 수행기간 | 시행처 |
|----|-----|------|-----|
| 1 | | | |
| 2 | | | |
| 3 | | | |
| 4 | | | |
| 5 | | | |

* 최근(공고일) 기준 10년 내에 시행한 용역사업 중 유사사업을 제시하고, 사업별 세부내용은 사업명별로 아래에 기술할 것

1) 사업명 :

* 앞에서 제시된 용역수행상 주안점을 기준으로 사업별로 관련 경험을 제시

2) 사업명 :

1.3 용역 성공을 위한 요건 및 추가제안사항(1페이지 이내로 작성)

* 앞에서 제시된 용역 수행상 주안점 및 관련 유사경험을 토대로 당해 용역 성공을 위한 제안사항을 기술(착안사항 포함)

* 주요 제안사항

- 관련 계획, 법령 등의 검토 및 설계적용사항(연계방안 등)
- 설계방법(노선 등)에 따른 제안 및 고려사항
- 현장조사시 주요 고려사항
- 예상 문제점 및 처리대책(예상 민원 등 포함)
- 사업효과 극대화 방안 등

2. 업무관리능력 평가서

2.1 당해 용역 관련 업무 수행범위(1페이지 이내로 작성)

- * 당해 용역과 관련한 주요 업무, 작업수행내용을 기술
- 조사항목 및 내용
 - 당해 용역 관련 각 분야(도로 등)별 주요 업무
 - 주요 업무별 특이사항(작업기간, 작업내용 등)

2.2 작업계획서(1페이지 이내로 작성)

- * 2.1과 연계하여 용역의 일정계획 제시(각 업무별 선행 및 후행관계 등 명시)

2.3 품질보증체계 및 품질관리계획(2페이지 이내로 작성)

- * 해당 사업수행조직내의 품질보증체계 및 품질관리계획을 명시 (책임기술인이 고용된 회사의 품질보증체계와 연계하여 기술)

2.4 전문가 활용계획 등 추가 업무관리사항(1페이지 이내로 작성)

- * 당해 용역 수행관련 필요한 전문가 기술 및 활용계획 제시
- * 당해 용역 수행상 업무관리상 주안점(조직 및 업무간 연계 고려)

첨부 2. 책임기술인 기술능력 및 업무관리능력 평가기준

| 구분 | 배점 비율 | 지 표 |
|-----|-------|---|
| 최우수 | 100%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능력과 관련한 발주처의 요구사항을 뛰어넘는 다양하고 창의적인 답변을 한 경우 ▪ 발주처의 요구사항에 대하여 우수하고 창의성이 인정되는 경우 ▪ 당해 용역관련 주요 검토항목에 대해 독창적이고 새로운 접근방법을 제시하는 답변 |
| 우수 | 90%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능력과 관련한 발주처의 요구사항에 우수하고, 창의적인 답변을 한 경우 ▪ 발주처의 요구사항에 대해 누락사항이 없고, 보통보다 우수한 경우 ▪ 당해 용역관련 주요 검토항목에 대해 일반적인 범주를 벗어나 고려 및 확인사항을 제시한 답변 |
| 보통 | 80%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능력과 관련한 발주처의 요구사항에 전체적으로 만족하는 답변을 한 경우 ▪ 발주처 요구사항 누락사항 없고, 일반적인 내용이 포함된 경우 ▪ 당해 용역 관련 주요 검토항목에 대해 모두 언급되었으나, 일반적인(보편적인) 범주를 제시한 답변 |
| 미흡 | 70%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능력과 관련한 발주처의 요구사항에 만족스러운 답변을 하지 않은 경우 ▪ 발주처의 요구사항에 부분적인 누락사항이 있음 ▪ 당해 용역관련 주요 검토항목에 대해 일반적인 수준에 못 미치는 답변 |
| 불량 | 60%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능력과 관련한 발주처의 요구사항에 부실한 답변을 한 경우 ▪ 발주처의 요구사항에 누락사항이 50%이상인 경우 ▪ 당해 용역관련 주요 검토항목에 대해 일반적인 수준과 동떨어진 매우 부실한 답변 |

첨부 3. 신용 평가등급 기준

|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 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 기업신용평가 등급 |
|----------------|-----------------|---|
| AAA | - | AAA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AA에 준하는 등급) |
| AA+, AA0, AA- | A1 | AA+, AA0, AA-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A+, AA0, AA-에 준하는 등급) |
| A+ | A2+ | A+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에 준하는 등급) |
| A0 | A20 | A0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0에 준하는 등급) |
| A- | A2- | A-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에 준하는 등급) |
| BBB+ | A3+ | BBB+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에 준하는 등급) |
| BBB0 | A30 | BBB0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0에 준하는 등급) |
| BBB- | A3- | BBB-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에 준하는 등급) |
| BB+, BB0 | B+ | BB+, BB0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 BB0에 준하는 등급) |
| BB- | B0 | BB-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에 준하는 등급) |
| B+, B0, B- | B- | B+, B0, B-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 B0, B-에 준하는 등급) |
| CCC+ 이하 | C 이하 | CCC+ 이하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CCC+에 준하는 등급) |

해외 설계용역 수행실적 확인서

| | | | | | |
|--|--|-----------|---------------------------------|------------------|--|
| I. 일반적인 사항 | | | | 발급번호 | |
| 1) 용역명 | (국문) (영문) | | | 2) 발주기관 (발주국) | |
| 3) 발주관성격 | 정부(), 공공기관(), 민간() | 4) 계약주체 | 본사(), 지사(), 현지법인(), 지분율(%) | | |
| 5) 신청자 (대표) | 5-1) 회사명 | 5-2) 면허번호 | 5-3) 대표자 | | |
| | 5-4) 영업소재지 | | 5-5) 전화번호 | | |
| 6) 계약 및 준공 | 6-1) 계약일자 | 6-2) 착공일자 | 6-3) 준공일자 | | |
| | 6-4) 계약금액 | 6-5) 준공금액 | | | |
| 7) 원하도급 여부 | 원도급(), 하도급() | | | ※ 해당란에 ○ 표 | |
| 8) 공동도급여부 | 공동이행방식(), 분담이행방식(), 단독도급() | | | ※ 해당란에 ○ 표 | |
| 9) 실적의 종류 | 개념설계(), 기본설계(), 실시설계(), 감리(), 건설관리(), 타당성조사(), 기타() | | | | |
| II. 용역실적의 내용 * 공동수급체 구성원별로 구분 작성 | | | | | |
| 구분 | 계약자 (대표) | 계약자 | 계약자 | | |
| 1) 회사명 | | | | | |
| 2) 대표 | (인) | (인) | (인) | | |
| 3) 준공금액 | (지분 : %) | (지분 : %) | (지분 : %) | | |
| 4) 전체용역규모 (본란에는 주요 물량을 기재하고, 필요시 세부 물량은 별지 제6호 서식을 활용) | | | | | |
| III. 붙임 | | | | | |
| 1) 기타 실적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 | | | |
| 위와같이 용역 준공실적이 있음을 증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 해외건설협회장 귀하 주소 : 회사명 : 대표 : (인) | | | | | |
| 확인자 | | | | | |
| 용도 | P.Q, 입찰, 적격심사, 기타 | | | 위 내용을 증명함. | |
| 용역명 | 해외건설협회장(인) | | | | |
| 발주처 | | | | | |

해외 설계용역 참여기술인 확인서

| | | | | | | | |
|--|-------------------------------|-----------|-----------|------------|------------------|-----------------|------------|
| I. 일반적인 사항 | | | | | | 발급번호 | |
| 1) 신청인 | 1-1) 회사명 | | | | | 1-2) 대표자 | |
| | 1-3) 영업소재지 | | | | | 1-4) 면허번호 | |
| II. 해외설계용역 | | | | | | | |
| 1) 공사명 | (국문) (영문) | | | | 2) 발주기관 (발주국) | | |
| 3) 계약 및 준공 | 3-1) 계약일자 | 3-2) 착공일자 | 3-3) 준공일자 | | | | |
| | 3-4) 계약금액 | | 3-5) 준공금액 | | | | |
| 4) 공동도급여부 | 공동이행방식(), 분담이행방식(), 단독도급() | | | | | | ※ 해당란에 ○ 표 |
| III. 참여기술인 현황 | | | | | | * 참여기술인별로 구분 작성 | |
| 구분 | 성명 | 생년월일 | 자격종목 | 자격등록번호 | 참여기간 | | |
| 1) 사업책임기술인 | ○○○ | 000000 | ○○○○○기술사 | ○○○○○○○○○ | 개월 | | |
| 2) ○○분야 책임기술인 | ○○○ | | | | 개월 | | |
| 3) ○○분야 책임기술인 | ○○○ | | | | 개월 | | |
| 4) ○○분야 책임기술인 | ○○○ | | | | 개월 | | |
| 5) ○○분야 책임기술인 | ○○○ | | | | 개월 | | |
| IV. 붙임 | | | | | | | |
| 1) 기타 실적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 | | | | | |
| 위와같이 해외설계용역 참여기술인이 있음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 한국건설기술인협회장 귀하 주소 : 회사명 : 대표 : (인) | | | | | | | |
| 확인자 | | | | | | | |
| 용도 | P.Q, 입찰, 적격심사, 기타 | | | 위 내용을 증명함. | | | |
| 발주처 | 한국건설기술인협회장(인) | | | | | | |
| 공사명 | | | | | | | |

첨부 6. 보안 위반사항 범례 (“14. 9. 2 이후 위반사항부터 적용)

| 구분 | 위 반 내 용 | 비 고 |
|---|---|-----|
| 비밀/대외비 누설 | 적법한 절차에 의하지 않고 적국·외국·내국(인원)에 제공 및 설명 | 심각 |
| | 우연히 비밀을 알거나 점유하면서 군사비밀임을 알면서도 타인에게 제공 및 설명 | |
| | 업무상 과실로 제공 및 설명 | |
| 비밀분실 | 업무상 알게 되거나 점유한 군사비밀을 타인에게 누설 / 제공 | 심각 |
| | 고의적으로 유기 | |
| | 비밀 분실 또는 도난 후 미신고 | |
| 비밀/대외비 수집 | 비밀 분실 사실 인지 후 미신고 / 미회수 | 중대 |
| | 영리·이적 외 기타 목적으로 비밀 수집 | 심각 |
| | 비밀을 고의적으로 파기·손괴·은닉하거나 기타의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한 때 | 중대 |
| 비밀/대외비 관리 | 비밀을 고의적으로 파기·손괴·은닉하거나 기타의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한 때 | 심각 |
| | 비밀을 의도적으로 유기·파기·훼손 | 중대 |
| | 비밀생산·보관·배포간 관리부실 또는 보호대책을 강구하지 않아 분실·도난·누설의 요인 제공 | |
| | 비밀을 임의로 보관시설 아닌 기타지역에 반출 | |
| | 비밀을 보호대책이 미장구된 장소에 보관 | 경미 |
| | 비인가업체 이용 비밀생산 또는 반출 | |
| | 비밀을 미분류, 음성비밀 생산·보관·활용 | |
| | 비밀보관장소에 미보관하거나 방치 | 미흡 |
| | 통제구역 출입통제 소홀(출입근거 미유지, 비인가자 출입, 열쇠관리 미흡 등) | |
| | 비밀·대외비를 개인 책상서랍·서류함 등에 임의 보관하는 등 규정 미준수 | |
| | 비밀 미분류, 임의 생산·보관·활용·인계 인수 | 중대 |
| | 비밀의 지출·대출·열람 근거 미유지 | |
| 비밀·대외비를 일반서류함에 보관하는 등 규정 미준수 | | |
| 비밀발간업체 이용 비밀생산시 승인권자 미승인, 감독관 미운영 등 보안조치 미실시 | 심각 | |
| 비밀을 복제·복사하면서 규정 미준수 | | |
| 도청·도촬장치를 설치하거나 도청·도촬행위 | | |
| 정보통신 시스템 관리위반 | 해킹 및 바이러스 유포 | 심각 |
| | 외부 전산망에 비밀(대외비포함)을 임의 저장·게시·공유·전송 | 심각 |
| | 저장매체(USB 등) 무단반출로 군사비밀자료 유출 | 중대 |
| | 비인가 저장매체(USB 등) 무단 반입하여 군사비밀자료 저장 | |
| | 비밀용 저장매체(USB 등) 분실 | |
| | 외부 전산망(인터넷망 등) 무단 설치·운용 | 경미 |
| | 인터넷PC 해킹으로 군사비밀·대외비 자료 유출 | |
| | 군사자료를 임의 저장·게시·공유·전송 | |
| | 전산망에 보호대책 없이 비밀을 임의 저장·게시·공유·전송하여 비인가자 인지 등 피해 발생 | 중대 |
| | 비인가 상용정보통신 장비(시설) 반입·사용 | |
| | 개인소유 상용정보통신 장비를 비밀작업용(업무용)전산기에 연결하거나 군사자료 임의 저장·활용·전송 | |
| | 바이러스 방역체계 미운영 | 경미 |
| | 업무용 전산망과 외부망 임의 연동 | |
| | 승인받지 않은 인터넷 무단사용 | |
| | 승인받지 않은 PC에서 비밀작업 또는 저장 | 중대 |
| | 저장매체(USB 등) 무단 반출로 일반 군사자료 유출 | |
| | 용역종료 후 관련 군사자료를 전량반납하지 않고 보관 | |
| | 해킹·바이러스 등 침해사고 예방대책 미장구 | 중대 |
| | 과실에 의해 바이러스를 감염시켰을 때 | |
| 외부 전산망에 군사자료를 임의 저장·게시·공유·전송 | | |
| 네트워크가 차단된 PC내 업무목적의 비밀 임의 저장, 미소거 | 중대 | |
| 일반용 저장매체(USB CD 등) 무단 반출 | | |
| 비인가 저장매체(USB, CD 등) 무단 반입, 일반군사자료 저장 | | |
| 일반용 저장매체(USB CD 등) 분실 | 중대 | |
| 보안대책 검토 및 보안측정 등 보안절차를 준수하지 않거나 보안대책 검토 및 보안측정 결과 조치 미흡 | | |
| 휴대용 컴퓨터의 무선 접속 기능 미제거 | | |
| 보안(보호) 시스템 관리위반 | 비밀(대외비 포함)을 비인가자가 관리·취급·열람 | 중대 |
| | 보안행정 서류 및 정보통신기록(Log File) 등을 고의적으로 미유지, 파기·폐기·삭제·변경 | 경미 |
| | 비밀공사시 불법 채류중인 외국인 채용 | 중대 |
| 기 타 | 일반 군사자료의 대외기관 제공·설명시 보안성 검토 미실시 등으로 불의야기 원인 제공 | 중대 |
| | 보안점검간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 미실시 | 중대 |

첨부 7. 설계 등 용역 상대평가 등급배분 예시

상대평가 등급배분 및 평가방법

1. 신청자수 별 평가등급 배분

| 업체수 | 등 급 | | | | | 업체수 | 등 급 | | | | |
|-----|-----|---|-----|---|---|-----|-----|---|----|---|---|
| | 수 | 우 | 미 | 양 | 가 | | 수 | 우 | 미 | 양 | 가 |
| 2,3 | 1 | 1 | (1) | | | 22 | 2 | 5 | 9 | 4 | 2 |
| 4 | 1 | 2 | 1 | | | 23 | 2 | 5 | 9 | 5 | 2 |
| 5 | 1 | 2 | 1 | 1 | | 24 | 2 | 5 | 10 | 5 | 2 |
| 6 | 1 | 2 | 1 | 1 | 1 | 25 | 3 | 5 | 10 | 5 | 2 |
| 7 | 1 | 2 | 2 | 1 | 1 | 26 | 3 | 5 | 10 | 5 | 3 |
| 8 | 1 | 2 | 3 | 1 | 1 | 27 | 3 | 5 | 11 | 5 | 3 |
| 9 | 1 | 2 | 3 | 2 | 1 | 28 | 3 | 6 | 11 | 5 | 3 |
| 10 | 1 | 2 | 4 | 2 | 1 | 29 | 3 | 6 | 11 | 6 | 3 |
| 11 | 1 | 2 | 5 | 2 | 1 | 30 | 3 | 6 | 12 | 6 | 3 |
| 12 | 1 | 3 | 5 | 2 | 1 | 31 | 3 | 6 | 13 | 6 | 3 |
| 13 | 1 | 3 | 5 | 3 | 1 | 32 | 3 | 7 | 13 | 6 | 3 |
| 14 | 1 | 3 | 6 | 3 | 1 | 33 | 3 | 7 | 13 | 7 | 3 |
| 15 | 2 | 3 | 6 | 3 | 1 | 34 | 3 | 7 | 14 | 7 | 3 |
| 16 | 2 | 3 | 6 | 3 | 2 | 35 | 4 | 7 | 14 | 7 | 3 |
| 17 | 2 | 3 | 7 | 3 | 2 | 36 | 4 | 7 | 14 | 7 | 4 |
| 18 | 2 | 4 | 7 | 3 | 2 | 37 | 4 | 7 | 15 | 7 | 4 |
| 19 | 2 | 4 | 7 | 4 | 2 | 38 | 4 | 8 | 15 | 7 | 4 |
| 20 | 2 | 4 | 8 | 4 | 2 | 39 | 4 | 8 | 15 | 8 | 4 |
| 21 | 2 | 4 | 9 | 4 | 2 | 40 | 4 | 8 | 16 | 8 | 4 |

사업수행능력평가 원본대조필 확인각서

○ 용역명 :

위 용역의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에 참여함에 있어 사업수행능력평가서에 첨부된 모든 증빙자료(사본) 및 부분에 대하여 원본과 같음을 확인하며, 만약 당사와 관련된 모든 증빙자료(사본) 및 부분에 대하여 사실과 상이함이 발견될 경우 「건설기술진흥법」 제31조제1항 및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 제27조제1항에 따라 발주자로 부터 어떠한 불이익도 감수함을 확약합니다.

20

주 소 :
상 호 :
대 표 자 : (인)
전화번호 :

주 소 :
상 호 :
대 표 자 : (인)
전화번호 :

○○○장 귀하

[표지서식 1]

| | |
|------|--|
| 접수번호 | |
|------|--|

00지역 시설공사 설계용역 수행실적평가서

(공고번호 제 호)

업 체 명 : _____

대 표 자 :
주 소 :
전화번호 :
FAX번호 :
평가서 작성자 : (연락처 :)

[양식 1]

용역참여 신청서

수 신 :

참 조 :

제 목 : 설계 수행실적평가서 제출

1. 아래 용역에 대한 “설계 수행실적평가서”를 붙임과 같이 제출합니다.

- 가. 용역명 :
- 나. 입찰공고일 / 평가서 마감일 :
- 다. 입찰예정일시 :

2. 본인은 귀 본부에서 발주한 『○○ 설계용역』에 참여하기 위하여 귀 본부의 평가기준에 의거 붙임과 같이 수행실적평가서를 제출하오니 본 평가서 내용의 허위 기재 또는 부실한 자료 작성으로 인하여 초래되는 평가 상의 불이익은 물론, 귀 본부의 어떠한 처분에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확약합니다.

붙임 : 설계 수행실적평가서 1부
 설계 수행실적 PDF파일(CD) 1부. 끝.

20 . . .

회 사 명 :
 주 소 :
 대 표 자 : (인)
 작 성 자 : (☎ FAX)

[양식 2]

공동수급협정 체결현황

| 구분 | 업체명 | 주소 | 대표자 | 전화 | 출자비율 | 비고 |
|------|-----|----|-----|----|---------------|----|
| 공동이행 | | | | | | |
| | | | | | | |
| | | | | | | |
| 분담이행 | 업체명 | 주소 | 대표자 | 전화 | 분담내용 업종 비율 | 비고 |
| | | | | | | |
| | | | | | | |
| | | | | | | |
| 계 | | | | | 100% | |

증빙서류 : 공동수급협정서

[양식 3]

참여기술인 조직표 (작성 예문)

| 참여 분야 | 성명 | 소속 | 입사일 ¹⁾ | 생년월일 (주민등록상) | 분야 | 등급 ²⁾ | 자격증 (분야) |
|--|----|----|-------------------|-----------------|----|------------------|-------------|
| 사업책임기술인 ³⁾ | | | | | | | |
| 분야별 ⁴⁾ 책임/참여/ 실무 기술인 | 건축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 참여 기술인은 공고일 이전 입사자에 한함.(공고일 기준 발행된 경력증명서 첨부)
- 2) 분야 및 등급은 관련협회 발행 경력증명서에 기재된 내용 기록
- 3) 사업책임기술인 : 주업체의 건설기술인으로서 사업진행의 전반적인 책임/총괄
- 4) 분야별 책임/참여기술인 : 사업책임기술인과 별도로 공고문에 게시된 분야 필히 편성

자기평가서(토목 등)

| 항 목 | 세 부 항 목 | 평 가 내 용 | 실 적 | 배 점 | 평 점 | 비 고 (산출근거) | |
|---------------|------------------------------|-----------------|-----|------|-----|---------------|--|
| 참 여 기 술 자 | 사업책임기술인 (성 명) | 자 격 | 급 | 3 | | | |
| | | 경 력 | 년 | 4 | | | |
| | | 실적(해당분야 설계) | 건 | 5(8) | | | |
| | | 기술 및 업무관리능력 | 년 | 3(0) | - | | |
| | 분야별책임기술인 (성 명) | 소 계 | | 15 | | | |
| | | 자 격 | | 4 | | | |
| | | 경 력 | 년 | 7 | | | |
| | 분야별참여기술인 (성 명) | 실적(해당분야 설계) | 건 | 8 | | | |
| | | 소 계 | | 19 | | | |
| | | 자 격 | 급 | 4 | | | |
| | 교육훈련 | 경 력 | 년 | 5 | | | |
| | | 실적(해당분야 설계) | 건 | 5 | | | |
| | 전차용역 수행실적 | 소 계 | | 14 | | | |
| | | 2주 교육 | 명 | 1 | | | |
| | 1주 교육 | 명 | | | | | |
| | 사업책임기술인 | 명 | 1 | | | | |
| | 분야별책임기술인 | 명 | | | | | |
| | 계 | | 50 | | | | |
| 용 수 행 실 적 | 참여건축사사무소 설계실적 (최근 5년간) | 건 수 | 건 | 6 | | | |
| | | 금 액 | 억원 | 6 | | | |
| | 전차용역 수행실적 | 별도 기준의거 평가 | - | 1 | | | |
| | 용역수행성과 | 절대평가 | - | 2 | | | |
| | 계 | | 15 | | | | |
| 신용도 | 영업정지(업무정지) 기간(최근1년간) | 참여업체/참여기술인 | | 3 | | | |
| | 재정상태 건설도 | 신용평가등급 | | 3 | | | |
| | 부실벌점 | 참여업체와 참여기술인 | | 2 | | | |
| | 보안위규 벌점 | 참여업체와 참여기술인 | | 2 | | | |
| | 계 | | | 10 | | | |
| 기술개발/ 투자실적 | 개발실적 | 건설신기술, 특허, 실용신안 | 건 | 2 | | | |
| | 투자실적 | 기술개발투자액/총매출액 | % | 10 | | | |
| | 활용실적 | 건설신기술, 특허, 실용신안 | | 3 | | | |
| | 계 | | | 15 | | | |
| 업무중복도 | 참여기술인의 업무중복도 | 사업책임기술인 | % | 3 | | | |
| | | 분야별책임기술인 | % | 4 | | | |
| | | 분야별참여기술인 | % | 2 | | | |
| | | 실무기술인 | % | 1 | | | |
| | 계 | | | 10 | | | |
| 합 계 | | | | | | | |
| 가 점 | 건설기술인 신규고용 | | | 0.3 | | | |
| | 젊은 기술인 참여 | | | 0.2 | | | |

주1. () : 용역비 5억 원 미만인 경우 또는 기술 및 업무관리능력 평가 생략 시 적용 배점

주2. 해당분야 설계는 입찰공고에 명시한 참여기술인의 직무(전문)분야에서의 설계 실적

참여기술인 자격/경력 현황

| 구 분 | 성 명 | 해당분야 | 등 급 | 자 격 증 분 야 | | 현재까지 경력 | 비 고 |
|--------------------------|-----|------|-----|-----------|-----|------------|-----|
| | | | | 자격명 | 취득일 | | |
| 사업책임 기술자 | | | | | | | |
| 분야별 책임 / 참여 기술인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첨부 : 1. 자격증 사본

2. 기술인 경력 확인서 1부.

3. 설계용역수행실적확인서(건설기술인경력관리수탁기관 또는 발주청 확인)

참여기술인 유사용역수행실적

| 성명 | 용역명 | 발주 기관 | 평가대상 실적 | | | 용역기간 | | 평가기간 | | 평가 일수 |
|----|-----|----------|----------|-------|------|------|-----|------|-----|----------|
| | | | 공사종류 | 해당분야 | 담당업무 | 계약일 | 준공일 | 착수일 | 종료일 | |
| | | | 예) 항만및해안 | 예) 토목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소계 | | | | | | 전 | | | | |

첨부 : 관련협회 발행 경력증명서, 계약서 또는 발주기관 실적증명서(건설기술경력관리 수탁기관 또는 발주청 발행)

※ 용역기간은 계약기간을 기입, 평가 일수를 계산하여 표기하며 개인의 실적을 건수로 평가

유사용역수행실적 현황

| 업체명 | 용역명 | 발주기관 | 용역기간 (년/월/일) | | 평가대상 실적 | | 계약금액 (백만원) | 지분율 (%) | 지분금액 (백만원) |
|-----|-----|------|-----------------|----|---------|------|---------------|------------|---------------|
| | | | 착공 | 준공 | 공사종류 | 주공종 | | | |
| | | | | | 예)항만/해안 | 예)토목 | | | |
| | | | | | | | | | |
| | 소계 | 건 | | | | | () | | () |

첨부 : 관련 협회 발행 증빙서류, 계약서 또는 발주관서 실적증명서(건설기술 경력관리 수탁기관 또는 발주청 발행)

- ※ 1. 최근 5년 이내에 발주부서의 장이 지정하는 당해용역과 유사한 주 공종분야(토목, 기계 등) 설계수행실적으로 건설기술인 경력관리수탁기관 또는 엔지니어링진흥협회 등 증빙자료 첨부
- 2. 유사용역실적은 회사가 받은 실적으로 인정하며, 준공된 실적에 한하여 인정.
- 3. 유사용역실적 인정범위는 지분금액이 고시금액일 경우에 한해 평가 적용함.

유사용역수행실적 증명서

| | | | | |
|--------|-----------|-----------|--------|-------------------------------|
| 신청인 | 업체명 (상호) | | 대표자 | |
| | 영업소재지 | | 전화번호 | |
| | 사업자번호 | | 제출처 | |
| | 증명서 용도 | | PQ 신청용 | |
| 용역실내 | 용역명 | 구분 | | 설계() : 감리() : 기타() : |
| | 용역개요 | | | |
| | 계약번호 | 계약일자 | 계약기간 | 계약규모 |
| | | | 이행실적 | |
| | | 공동비율 | 실적 | |
| 증명서급관 | 위 사실을 증명함 | | | |
| | 년 월 일 | | | |
| | 기관명 : | (인) | | (전화번호 :) |
| | 주소 : | (FAX번호:) | | |
| 발급부서 : | 담당자 : | | (인) | |

- ※ 1. 엔지니어링실적을 공동계약으로 이행하였을 경우 참여비율과 이행실적을 기재하여야 함.
- 2. 별도 양식으로 작성하는 경우는 그에 따름.

업체 및 기술인 자격·영업정지(업무정지) 등

| 업체명 및 기술인성명 | 정지 및 제재기간 | 기간(월) | 조치기관명 | 사유요약 | 점수 |
|-------------|-----------|-------|-------|------|----|
| | ~ | | | | |
| | ~ | | | | |
| | ~ | | | | |
| 계 | | | | | |

첨부 : 분담된 면허와 관련된 업종에 해당하는 경력관리수탁기관 확인서 또는 관할 행정기관 증빙서류

- ※ 1. 최근 1년간(공고일 기준) 업체 및 기술인 자격정지 또는 영업정지(업무정지) 처분 받은 사항을 기재(과징금 처분 포함)
- 2. 해당사항이 없는 회사는 “해당사항 없음” 표시하고 관련협회 확인서를 첨부할 것.

[양식 10]

재정상태건실도

| 구 분 | 기 재 사 항 |
|----------|---------|
| 1. 회 사 명 | |
| 2. 설립년도 | |
| 3. 경영실적 | 자기자본 |
| | 총 자 산 |
| | 유동자산 |
| | 유동부채 |
| | 총 매출액 |
| | 기술개발비 |

※ 자기자본비율 및 유동자산비율

| 산 출 근 거 | 계 산 치 (%) | 비 고 |
|------------|-----------|-----|
| 자기자본/총 자 산 | | |
| 유동자산/유동부채 | | |

첨부 : 공인회계사 또는 세무사가 관계법령에 의거 작성·확인한 최근 회계연도 재무제표

[양식 11]

부 실 별 점

○ 참여업체 및 참여기술인이 설계업무와 관련하여 받은 부실별점에 따라 평가

| 참여업체 및 참여기술인 | 측정기관 | 누계부실별점 | 부실점수 | 비 고 |
|--------------|------|--------|------|-----|
| | | | | |
| | | | | |
| 계 | | | | |

첨부 : 각 경력관리수탁기관 및 발주청의 확인서 사본 첨부.

[양식 12]

군사보안위반

○ 참여업체 및 참여기술인의 보안위반사항 평가

| 참여업체 및 참여기술인 | 위반내용 (등급) | 처분기관 | 처분일시 | 점 수 |
|--------------|-----------|------|------|-----|
| | | | | |
| | | | | |
| | | | | |
| | | | | |
| 계 | | | | |

첨부 : 발주청(조사기관)의 확인서 사본 첨부.

※ 조사기관 확인서 상 단일건에 한해, 보안위반 내용이 다수인 경우에는 [첨부 6]의 보안 위반사항 범례에서 최상위 등급으로 감점

기술개발 및 투자실적

1. 기술개발 실적

| 구 분 | 제 목 | 특허권자 | 출원일 (경과년수) | 인정기관 | 비 고 (등록번호) |
|-------|-----|------|---------------|------|---------------|
| 건설신기술 | | | | | |
| 특 허 | | | | | |
| 실용신안 | | | | | |
| 계 | | | | | |

첨부 : 증빙서류(등록증 사본 등) 첨부

- ※ 1. 당해 업체(대표자 포함)가 등록권리자로 등록된 건수 이외(일부양도, 허락 등)는 제외함
- 2. 2인 이상 최초 출원 시 공동으로 출원한 경우 해당점수를 출원자 수로 나누어 인정
- 3. 동일 건으로 신기술, 특허, 실용신안을 받은 경우는 한 건으로 인정함

2. 투자실적

| 업체명 | 1년차 | | | 2년차 | | | 3년차 | | | 계 | 비고 |
|-----|-----|---|------------|-----|---|------------|-----|---|------------|---------------|----|
| | A | B | A/B (a) | A | B | A/B (b) | A | B | A/B (c) | | |
| | | | | | | | | | | (a+b+c)/3×지분율 | |
| | | | | | | | | | | (a+b+c)/3×지분율 | |
| 계 | | | | | | | | | | 가 + 나 | |

※ A : 건설기술개발투자액, B : 건설부문 총매출액

- 첨부 : 1. 공인회계사 또는 세무사가 증명한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3회계년도 재정상태 검토보고서 또는 재무제표
2. 투자실적 자료의 미비 또는 제출하지 못하는 경우 사유 및 증빙서류 첨부

3. 활용실적

| 구 분 | 제 목 | 출원인 | 출원일 (경과년수) | 활용 건수 | 활용 금액 | 가중치 | 점 수 | 비 고 (인정기관) |
|-------|-----|-----|---------------|----------|----------|-----|-----|---------------|
| 건설신기술 | | | | | | | | |
| 특 허 | | | | | | | | |
| 실용신안 | | | | | | | | |
| 계 | | | | | | | | |

첨부 :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1개월 이내 지정·고시된 기관에서 발행한 증빙서류

참여기술인의 업무중복도

| 구 분 (성 명) | 용역수행(계약) 현황 | | | | 점수 | 비 고 (용역중단 여부 등) | |
|---|-------------|-----|--------------|------|----|-----------------------|---------------|
| | 용역명 | 발주청 | 용역비 (백만원) | 참여기간 | | | |
| | | | | 계약기간 | | | 잔여기간 (예정일) |
| 사업책임기술인 ○○○ | | | | | | | |
| | 소 계 | 건 | () | | | | |
| 분야별 책 임 / 참 여 / 실 무 기술인 | ○○○ | | | | | | |
| | | 소 계 | 건 | () | | | |
| | ○○○ | | | | | | |
| | | 소 계 | 건 | () | | | |
| ○○○ | | | | | | | |
| | 소 계 | 건 | () | | | | |

첨부 : 건설엔지니어링실적관리시스템 증명원

- * 발주청 요구시, 중복도 확인을 위한 추가 관련서류 제출(관련서류 : 공고일 이후 금융거래 확인원과 관련서류 제출계약보증과 선급금 보증기간이 업무중복도 해당기간일 경우에는 해당용역의 계약서와 참여기술인 명단 제출)
- ※ 참여기술인의 건설기술인경력관리수탁기관에서 발행한 경력확인서상 현재 수행 중인 모든 용역과 관련협회에 등록 또는 신고하지 아니하고 수행중인 용역(고시금액 이상)을 모두 기재

[별표3]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의 수행실적평가 배점 및 세부평가기준

| 평가항목 | 세부평가항목 | | 배 점 | <대미사업> 배점 | |
|-------------|---------------------|------------------------|----------|-----------|---|
| 참여기술인 | 책임건설사업 관리기술인 | 해 당 분 야 경 력 | 15<12.5> | 15<12.5> | |
| | | 직 무 분 야 실 적 | 9 | 8 | |
| | | 교 육 훈 련 | 1 | 2 | |
| | | 면 접 | <2.5> | <2.5> | |
| | | 계 | 25 | 25 | |
| | 분야별건설사업 관리기술인 | 해 당 분 야 경 력 | 15<13.5> | 15<13.5> | |
| | | 직 무 분 야 실 적 | 9 | 10.5 | |
| | | 교 육 훈 련 | 1 | 1 | |
| | | 면 접 | <1.5> | <1.5> | |
| | | 계 | 25 | 25 | |
| | 기술지원기술인 | 등 급 | | 3 | 3 |
| | | 해 당 분 야 경 력 | | 6 | 6 |
| | | 교 육 훈 련 | | 1 | 1 |
| 계 | | | 10 | 10 | |
| 소 계 | | | 60 | 60 | |
| 유사용역 수행실적 | 최근 3년간 건설엔지니어링 수행실적 | CM실적+감리실적×0.7+설계실적×0.7 | 8 | 8 | |
| | 용역수행성과 | 최근3년간 평가실적 | 2 | 2 | |
| | 소 계 | 10 | 10 | 10 | |
| 신용도 | 영업정지(업무정지) | 회사/참여기술인 | 7 | 7 | |
| | 부실벌점 | 회사/참여기술인 | 2 | 2 | |
| | 보안위규 벌점 | 회사/참여기술인 | 3 | 3 | |
| | 재정상태건실도 | 신용평가등급 | 3 | 3 | |
| 소 계 | | | 15 | 15 | |
| 기술개발 및 투자실적 | 개발실적 | 건설신기술, 특히 | 3 | 3 | |
| | 투자실적 | 최근3년간 투자실적 | 7 | 7 | |
| | 소 계 | 10 | 10 | 10 | |
| 교체빈도 | 참여기술인의교체빈도 |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 | 3 | 3 | |
| | | 참여기술인 | 2 | 2 | |
| | 소 계 | 5 | 5 | | |
| 총 계 | | | 100 | 100 | |
| 가점 및 감점 | 가점 | 공사비절감 기여 기술인 | 0.2 | 0.2 | |
| | | 건설기술인 신규 고용 | 0.3 | 0.3 | |
| | 감점 | 부패행위 관련자 | 5 | 5 | |

※ < >의 배점은 면접을 평가하는 경우 적용한다.

| 평가 항목 | 세부평가 항목 | 배점 | 세 부 평 가 방 법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가. 참여 기술자 | (1) 책임건설사업 관리기술인 | 60 [25] | <p>○ 시공단계의 건설사업관리를 포함하는 경우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제35조제1항 각 호에 의한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경력 및 배치기준에 부적합할 경우 실격처리함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 경력 및 배치기준</p> <table border="1"> <thead> <tr> <th>당해 공사규모</th> <th>경 력</th> </tr> </thead> <tbody> <tr> <td>500억원 이상</td> <td>총 공사비 300억원 이상인 건설공사에 대한 시공단계 건설사업관리 경력 1년 이상인 특급기술인</td> </tr> <tr> <td>500억원 미만 300억원 이상</td> <td>총 공사비 200억원 이상인 건설공사에 대한 시공단계 건설사업관리 경력 1년 이상인 특급기술인</td> </tr> <tr> <td>300억원 미만 100억원 이상</td> <td>총 공사비 100억원 이상인 건설공사에 대한 시공단계 건설사업관리 경력 1년 이상인 고급기술인</td> </tr> </tbody> </table> | 당해 공사규모 | 경 력 | 500억원 이상 | 총 공사비 300억원 이상인 건설공사에 대한 시공단계 건설사업관리 경력 1년 이상인 특급기술인 | 500억원 미만 300억원 이상 | 총 공사비 200억원 이상인 건설공사에 대한 시공단계 건설사업관리 경력 1년 이상인 특급기술인 | 300억원 미만 100억원 이상 | 총 공사비 100억원 이상인 건설공사에 대한 시공단계 건설사업관리 경력 1년 이상인 고급기술인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당해 공사규모 | 경 력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500억원 이상 | 총 공사비 300억원 이상인 건설공사에 대한 시공단계 건설사업관리 경력 1년 이상인 특급기술인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500억원 미만 300억원 이상 | 총 공사비 200억원 이상인 건설공사에 대한 시공단계 건설사업관리 경력 1년 이상인 특급기술인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300억원 미만 100억원 이상 | 총 공사비 100억원 이상인 건설공사에 대한 시공단계 건설사업관리 경력 1년 이상인 고급기술인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가) 해당 분야 경력 | <12.5> | <p>○ 해당분야경력 인정 담당업무범위 : 설계, 시공, 품질관리, 안전관리, 안전진단 및 점검, 유지보수 및 보강, 건설사업관리, 감리, 관리감독, 감독, 공사감독, 용역감독, 일반감독, 사업관리, 기술조사, 행정지원 등</p> <table border="1"> <thead> <tr> <th>해당공사규모</th> <th colspan="5">해당분야경력 기간 (단위: 년)</th> </tr> </thead> <tbody> <tr> <td>1,000억원이상</td> <td>15이상</td> <td>15미만 13이상</td> <td>13미만 11이상</td> <td>11미만 9이상</td> <td>9미만</td> </tr> <tr> <td>1,000억원미만 500억원이상</td> <td>13이상</td> <td>13미만 11이상</td> <td>11미만 9이상</td> <td>9미만 7이상</td> <td>7미만</td> </tr> <tr> <td>500억원미만 300억원이상</td> <td>11이상</td> <td>11미만 9이상</td> <td>9미만 7이상</td> <td>7미만 5이상</td> <td>5미만</td> </tr> <tr> <td>300억원미만</td> <td>9이상</td> <td>9미만 7이상</td> <td>7미만 5이상</td> <td>5미만 3이상</td> <td>3미만</td> </tr> <tr> <td>점수</td> <td>15 <12.5></td> <td>13.5 <11></td> <td>12 <9.5></td> <td>10.5 <8></td> <td>9 <6.5></td> </tr> </tbody> </table> <p>< >안의 배점은 건설사업관리책임기술인 면접을 평가하는 경우에 적용한다. * 해당분야경력 산정 후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에 의한 수행경력 인정율적용</p> | 해당공사규모 | 해당분야경력 기간 (단위: 년) | | | | | 1,000억원이상 | 15이상 | 15미만 13이상 | 13미만 11이상 | 11미만 9이상 | 9미만 | 1,000억원미만 500억원이상 | 13이상 | 13미만 11이상 | 11미만 9이상 | 9미만 7이상 | 7미만 | 500억원미만 300억원이상 | 11이상 | 11미만 9이상 | 9미만 7이상 | 7미만 5이상 | 5미만 | 300억원미만 | 9이상 | 9미만 7이상 | 7미만 5이상 | 5미만 3이상 | 3미만 | 점수 | 15 <12.5> | 13.5 <11> | 12 <9.5> | 10.5 <8> | 9 <6.5> |
| 해당공사규모 | 해당분야경력 기간 (단위: 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000억원이상 | 15이상 | 15미만 13이상 | 13미만 11이상 | 11미만 9이상 | 9미만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000억원미만 500억원이상 | 13이상 | 13미만 11이상 | 11미만 9이상 | 9미만 7이상 | 7미만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500억원미만 300억원이상 | 11이상 | 11미만 9이상 | 9미만 7이상 | 7미만 5이상 | 5미만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300억원미만 | 9이상 | 9미만 7이상 | 7미만 5이상 | 5미만 3이상 | 3미만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점수 | 15 <12.5> | 13.5 <11> | 12 <9.5> | 10.5 <8> | 9 <6.5>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나) 직무 실적 | 9 | <p>○ 직무분야실적 인정 담당업무범위 : 설계, 시공, 품질관리, 안전관리, 안전진단 및 점검, 유지보수 및 보강, 건설사업관리, 감리, 관리감독, 감독, 공사감독, 용역감독, 일반감독, 사업관리, 기술조사, 행정지원 등</p> <table border="1"> <thead> <tr> <th>해당공사규모</th> <th colspan="5">직무분야실적 기간 (단위:년)</th> </tr> </thead> <tbody> <tr> <td>300억원이상</td> <td>15이상</td> <td>15미만 13이상</td> <td>13미만 11이상</td> <td>11미만 9이상</td> <td>9미만</td> </tr> <tr> <td>300억원미만</td> <td>12이상</td> <td>12미만 10이상</td> <td>10미만 8이상</td> <td>8미만 6이상</td> <td>6미만</td> </tr> <tr> <td>점수</td> <td>9</td> <td>8.1</td> <td>7.2</td> <td>6.3</td> <td>5.4</td> </tr> </tbody> </table> | 해당공사규모 | 직무분야실적 기간 (단위:년) | | | | | 300억원이상 | 15이상 | 15미만 13이상 | 13미만 11이상 | 11미만 9이상 | 9미만 | 300억원미만 | 12이상 | 12미만 10이상 | 10미만 8이상 | 8미만 6이상 | 6미만 | 점수 | 9 | 8.1 | 7.2 | 6.3 | 5.4 | | | | | | | | | | | | |
| 해당공사규모 | 직무분야실적 기간 (단위: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300억원이상 | 15이상 | 15미만 13이상 | 13미만 11이상 | 11미만 9이상 | 9미만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300억원미만 | 12이상 | 12미만 10이상 | 10미만 8이상 | 8미만 6이상 | 6미만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점수 | 9 | 8.1 | 7.2 | 6.3 | 5.4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다) 교육 훈련 및 기술자격 | 1 | <p>○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이 최근 3년간 「건설기술진흥법」 제20조제2항에 따른 건설기술인 교육훈련을 받거나 해당분야의 기술자격 또는 「건축사법」에 의한 건축사건축사자격을 갖춘 경우 다음 기준에 따라 적용 (기술자격은 최상위 1종목만 인정) - 교육훈련 : 2주이상(0.5점), 1주이상 2주미만(0.3점) - 기술자격 : 건축사 . 기술사(0.5점), 기사(0.3점), 산업기사(0.1점) ※ 5일(1주) 또는 35시간 교육을 수료한 자는 1주일로 인정</p>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평가 항목 | 세부평가 항목 | 배점 | 세 부 평 가 방 법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라) 면접 (발표) | <2.5> | - 참여업체의 등급을 판정한 후, 배점한도에 상대평가(별지1) 가중치를 곱하여 평가 점수 산정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 분야별건설사업관리기술인 | [25] 15 <13.5>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해당분야경력 인정 담당업무범위 : 설계, 시공, 품질관리, 안전관리, 안전진단 및 점검, 유지보수 및 보강, 건설사업관리, 감리, 관리감독, 감독, 공사감독, 용역감독, 일반감독, 사업관리, 기술조사, 행정지원 등 <table border="1"> <thead> <tr> <th>해당공사규모</th> <th colspan="6">해당분야경력 기간 (단위: 월)</th> </tr> </thead> <tbody> <tr> <td>300억원 이상</td> <td>72이상</td> <td>72미만 66이상</td> <td>66미만 60이상</td> <td>60미만 54이상</td> <td>54미만</td> <td>54미만</td> </tr> <tr> <td>300억원 미만 100억원 이상</td> <td>60이상</td> <td>60미만 54이상</td> <td>54미만 48이상</td> <td>48미만 42이상</td> <td>42미만</td> <td>42미만</td> </tr> <tr> <td>100억원 미만</td> <td>48이상</td> <td>48미만 42이상</td> <td>42미만 36이상</td> <td>36미만 30이상</td> <td>30미만</td> <td>30미만</td> </tr> <tr> <td>점수</td> <td>15 <13.5></td> <td>13.5 <12></td> <td>12 <10.5></td> <td>10.5 <9></td> <td>9 <7.5></td> <td>9 <7.5></td> </tr> </tbody> </table> <ul style="list-style-type: none"> ※ < >의 배점은 면접을 평가하는 경우 적용한다 ※ 해당분야경력 산정 후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에 의한 수행경력 인정을 적용(인정을 적용대상에 한함.) | 해당공사규모 | 해당분야경력 기간 (단위: 월) | | | | | | 300억원 이상 | 72이상 | 72미만 66이상 | 66미만 60이상 | 60미만 54이상 | 54미만 | 54미만 | 300억원 미만 100억원 이상 | 60이상 | 60미만 54이상 | 54미만 48이상 | 48미만 42이상 | 42미만 | 42미만 | 100억원 미만 | 48이상 | 48미만 42이상 | 42미만 36이상 | 36미만 30이상 | 30미만 | 30미만 | 점수 | 15 <13.5> | 13.5 <12> | 12 <10.5> | 10.5 <9> | 9 <7.5> | 9 <7.5> |
| 해당공사규모 | 해당분야경력 기간 (단위: 월)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300억원 이상 | 72이상 | 72미만 66이상 | 66미만 60이상 | 60미만 54이상 | 54미만 | 54미만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300억원 미만 100억원 이상 | 60이상 | 60미만 54이상 | 54미만 48이상 | 48미만 42이상 | 42미만 | 42미만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00억원 미만 | 48이상 | 48미만 42이상 | 42미만 36이상 | 36미만 30이상 | 30미만 | 30미만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점수 | 15 <13.5> | 13.5 <12> | 12 <10.5> | 10.5 <9> | 9 <7.5> | 9 <7.5>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가) 해당 분야 경력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나) 직무 분야 실적 | 9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직무분야실적 인정 담당업무범위 : 설계, 시공, 품질관리, 안전관리, 안전진단 및 점검, 유지보수 및 보강, 건설사업관리, 감리, 관리감독, 감독, 공사감독, 용역감독, 일반감독, 사업관리, 기술조사, 행정지원 등 <table border="1"> <thead> <tr> <th>해당공사규모</th> <th colspan="6">직무분야실적 기간 (단위: 년)</th> </tr> </thead> <tbody> <tr> <td>300억원 이상</td> <td>12이상</td> <td>12미만 10이상</td> <td>10미만 8이상</td> <td>8미만 6이상</td> <td>6미만</td> <td>6미만</td> </tr> <tr> <td>300억원 미만 100억원 이상</td> <td>10이상</td> <td>10미만 8이상</td> <td>8미만 6이상</td> <td>6미만 4이상</td> <td>4미만</td> <td>4미만</td> </tr> <tr> <td>100억원 미만</td> <td>8이상</td> <td>8미만 6이상</td> <td>6미만 4이상</td> <td>4미만 2이상</td> <td>2미만</td> <td>2미만</td> </tr> <tr> <td>점수</td> <td>9</td> <td>8.1</td> <td>7.2</td> <td>6.3</td> <td>5.4</td> <td>5.4</td> </tr> </tbody> </table> | 해당공사규모 | 직무분야실적 기간 (단위: 년) | | | | | | 300억원 이상 | 12이상 | 12미만 10이상 | 10미만 8이상 | 8미만 6이상 | 6미만 | 6미만 | 300억원 미만 100억원 이상 | 10이상 | 10미만 8이상 | 8미만 6이상 | 6미만 4이상 | 4미만 | 4미만 | 100억원 미만 | 8이상 | 8미만 6이상 | 6미만 4이상 | 4미만 2이상 | 2미만 | 2미만 | 점수 | 9 | 8.1 | 7.2 | 6.3 | 5.4 | 5.4 |
| 해당공사규모 | 직무분야실적 기간 (단위: 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300억원 이상 | 12이상 | 12미만 10이상 | 10미만 8이상 | 8미만 6이상 | 6미만 | 6미만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300억원 미만 100억원 이상 | 10이상 | 10미만 8이상 | 8미만 6이상 | 6미만 4이상 | 4미만 | 4미만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00억원 미만 | 8이상 | 8미만 6이상 | 6미만 4이상 | 4미만 2이상 | 2미만 | 2미만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점수 | 9 | 8.1 | 7.2 | 6.3 | 5.4 | 5.4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다) 교육 훈련 | 1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최근 3년간 「건설기술진흥법」 제20조제2항에 따른 건설기술인 교육훈련을 받은 경우 다음 기준에 따라 적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주이상 교육 (1.0점) - 1주이상 2주미만 교육(0.5점) ※ 5일(1주) 또는 35시간 교육을 수료한 자는 1주일로 인정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라) 면접 (발표) | <1.5> | - 참여업체의 등급을 판정한 후, 배점한도에 상대평가(별지1) 가중치를 곱하여 평가 점수 산정 ※ 면접대상 분야별기술인은 1인(주된 공종분야로서 참여기간이 가장 많은 자) 이상을 대상으로 한다.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평가 항목 | 세부평가 항목 | 배점 | 세 부 평 가 방 법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3) 기술 지원 기술인 | [10]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가)등급 | 3 | <table border="1"> <thead> <tr> <th>당해공사규모</th> <th colspan="2">등 급(점수)</th> </tr> </thead> <tbody> <tr> <td rowspan="2">총공사비 300억원이상</td> <td>특급기술인</td> <td>고급기술인 이하</td> </tr> <tr> <td>3</td> <td>2</td> </tr> <tr> <td rowspan="2">총공사비 300억원미만</td> <td>고급기술인 이상</td> <td>중급기술인 이하</td> </tr> <tr> <td>3</td> <td>2</td> </tr> </tbody> </table> | 당해공사규모 | 등 급(점수) | | 총공사비 300억원이상 | 특급기술인 | 고급기술인 이하 | 3 | 2 | 총공사비 300억원미만 | 고급기술인 이상 | 중급기술인 이하 | 3 | 2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당해공사규모 | 등 급(점수)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총공사비 300억원이상 | 특급기술인 | 고급기술인 이하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3 | 2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총공사비 300억원미만 | 고급기술인 이상 | 중급기술인 이하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3 | 2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나) 해당 분야 경력 | 6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해당분야경력 인정 담당업무범위 : 설계, 시공, 품질관리, 안전관리, 안전진단 및 점검, 유지보수 및 보강, 건설사업관리, 감리, 관리감독, 감독, 공사감독, 용역감독, 일반감독, 사업관리, 기술조사, 행정지원 등 <table border="1"> <thead> <tr> <th>해당공사규모</th> <th colspan="6">해당분야경력 기간 (단위: 년)</th> </tr> </thead> <tbody> <tr> <td>1,000억원이상</td> <td>15이상</td> <td>15미만 13이상</td> <td>13미만 11이상</td> <td>11미만 9이상</td> <td>9미만</td> <td>9미만</td> </tr> <tr> <td>1,000억원미만 500억원이상</td> <td>13이상</td> <td>13미만 11이상</td> <td>11미만 9이상</td> <td>9미만 7이상</td> <td>7미만</td> <td>7미만</td> </tr> <tr> <td>500억원미만 300억원이상</td> <td>11이상</td> <td>11미만 9이상</td> <td>9미만 7이상</td> <td>7미만 5이상</td> <td>5미만</td> <td>5미만</td> </tr> <tr> <td>300억원미만</td> <td>9이상</td> <td>9미만 7이상</td> <td>7미만 5이상</td> <td>5미만 3이상</td> <td>3미만</td> <td>3미만</td> </tr> <tr> <td>점수</td> <td>6</td> <td>5.4</td> <td>4.8</td> <td>4.2</td> <td>3.6</td> <td>3.6</td> </tr> </tbody> </table>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해당분야경력 산정 후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에 의한 수행경력 인정을 적용(인정을 적용대상에 한함.) | 해당공사규모 | 해당분야경력 기간 (단위: 년) | | | | | | 1,000억원이상 | 15이상 | 15미만 13이상 | 13미만 11이상 | 11미만 9이상 | 9미만 | 9미만 | 1,000억원미만 500억원이상 | 13이상 | 13미만 11이상 | 11미만 9이상 | 9미만 7이상 | 7미만 | 7미만 | 500억원미만 300억원이상 | 11이상 | 11미만 9이상 | 9미만 7이상 | 7미만 5이상 | 5미만 | 5미만 | 300억원미만 | 9이상 | 9미만 7이상 | 7미만 5이상 | 5미만 3이상 | 3미만 | 3미만 | 점수 | 6 | 5.4 | 4.8 | 4.2 | 3.6 | 3.6 |
| 해당공사규모 | 해당분야경력 기간 (단위: 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000억원이상 | 15이상 | 15미만 13이상 | 13미만 11이상 | 11미만 9이상 | 9미만 | 9미만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000억원미만 500억원이상 | 13이상 | 13미만 11이상 | 11미만 9이상 | 9미만 7이상 | 7미만 | 7미만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500억원미만 300억원이상 | 11이상 | 11미만 9이상 | 9미만 7이상 | 7미만 5이상 | 5미만 | 5미만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300억원미만 | 9이상 | 9미만 7이상 | 7미만 5이상 | 5미만 3이상 | 3미만 | 3미만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점수 | 6 | 5.4 | 4.8 | 4.2 | 3.6 | 3.6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다) 교육훈련 및 기술 자격 | 1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술지원기술인이 최근 3년간 「건설기술진흥법」 제20조제2항에 따른 건설기술인 교육훈련을 받거나 해당분야의 기술인력 또는 「건축사법」에 의한 건축사자격을 갖춘 경우 다음 기준에 따라 적용 (기술자격은 최상위 1종목만 인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교육훈련 : 2주이상(0.5점), 1주이상 2주미만(0.3점) - 기술자격 : 건축사 . 기술사(0.5점), 기사(0.3점), 산업기사(0.1점) ※ 기술자격자 평가는 기술지원기술인 중 1인에 한하여 적용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나. 유 사 용 역 수 행 실적 | 10 [8] |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3년간 해당 건설사업관리용역의 건설공사와 같거나 유사한 공종의 건설공사에 대한 용역사업을 준공하였거나, 수행 중인 실적(전체 용역기간 중 최근 3년간 실제 용역을 수행한 개월 수에 따라 산정)을 인정 2) 산정방법 <o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설계와 시공단계의 건설사업관리 : 설계 와 시공 단계를 포함한 건설사업관리 용역실적 × 1.0 + 설계단계의 건설사업관리용역실적(설계용역실적 70% 인정) × 0.7 + 시공단계의 건설사업관리용역실적(건축법·주택법 감리실적 70% 인정) × 0.7 ② 설계단계의 건설사업관리용역 : 설계 와 시공 단계를 포함한 건설사업관리용역실적 × 1.0 + 설계단계의 건설사업관리용역실적(설계용역실적 70% 인정) × 1.0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평가 항목 | 세부평가 항목 | 배점 | 세 부 평 가 방 법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p>③ 시공단계의 건설사업관리용역 : 설계 와 시공 단계를 포함한 건설사업관리용역실적 × 1.0 + 시공단계의 건설사업관리용역실적(건축법·주택법 감리실적 70% 인정) × 1.0</p> <p>※ 설계 또는 시공단계의 건설사업관리용역실적은 해당 단계를 포함하지 않는 건설사업관리를 시행하는 경우에는 인정하지 않으며, 각각 해당 단계에 국한하여 건설사업관리를 시행하는 경우에만 100% 인정하되, 설계 및 시공 단계를 같이 포함하는 건설사업관리를 시행하는 경우에는 70%를 인정한다.</p> <p>※ 건축법·주택법에 따른 감리실적은 시공단계의 건설사업관리용역실적에 포함하고, 설계용역(타당성조사, 기본계획, 기본설계, 실시설계) 실적은 설계단계의 건설사업관리용역실적에 포함하여 산정하되 70%만 인정한다.</p> <p>3) 해당 공사의 주된 공종이 건축공사인 경우</p> <table border="1"> <thead> <tr> <th>해당 공사규모</th> <th colspan="5">건설엔지니어링 수행실적(단위 : 억원)</th> </tr> </thead> <tbody> <tr> <td>1,000억원이상</td> <td>60이상</td> <td>60미만 50이상</td> <td>50미만 40이상</td> <td>40미만 30이상</td> <td>30미만 20이상</td> </tr> <tr> <td>1,000억원미만 500억원이상</td> <td>50이상</td> <td>50미만 40이상</td> <td>40미만 30이상</td> <td>30미만 20이상</td> <td>20미만 10이상</td> </tr> <tr> <td>500억원미만 300억원이상</td> <td>40이상</td> <td>40미만 30이상</td> <td>30미만 20이상</td> <td>20미만 10이상</td> <td>10미만 5이상</td> </tr> <tr> <td>300억원미만 100억원이상</td> <td>30이상</td> <td>30미만 20이상</td> <td>20미만 10이상</td> <td>10미만 5이상</td> <td>-</td> </tr> <tr> <td>100억원미만</td> <td>20이상</td> <td>20미만 15이상</td> <td>15미만 10이상</td> <td>10미만 5이상</td> <td>-</td> </tr> <tr> <td>점수</td> <td>8</td> <td>7.2</td> <td>6.4</td> <td>5.6</td> <td>4.8</td> </tr> </tbody> </table> <p>※ 당해 공사규모별 유사용역수행실적이 최저규모 미만인 경우는 0점으로 처리함.</p> <p>4) 해당 공사의 주된 공종이 건축공사 이외의 공사(토목, 설비 등)</p> <table border="1"> <thead> <tr> <th>해당 공사규모</th> <th colspan="5">건설엔지니어링 수행실적 (단위 : 억원)</th> </tr> </thead> <tbody> <tr> <td>3,000억원이상</td> <td>120이상</td> <td>120미만 110이상</td> <td>110미만 100이상</td> <td>100미만 90이상</td> <td>90미만 45이상</td> </tr> <tr> <td>3,000억원미만 2,000억원이상</td> <td>100이상</td> <td>100미만 90이상</td> <td>90미만 80이상</td> <td>80미만 70이상</td> <td>70미만 35이상</td> </tr> <tr> <td>2,000억원미만 1,000억원이상</td> <td>80이상</td> <td>80미만 70이상</td> <td>70미만 60이상</td> <td>60미만 50이상</td> <td>50미만 25이상</td> </tr> <tr> <td>1,000억원미만 500억원이상</td> <td>60이상</td> <td>60미만 50이상</td> <td>50미만 40이상</td> <td>40미만 30이상</td> <td>30미만 15이상</td> </tr> <tr> <td>500억원미만 300억원이상</td> <td>40이상</td> <td>40미만 30이상</td> <td>30미만 25이상</td> <td>25미만 20이상</td> <td>20미만 10이상</td> </tr> <tr> <td>300억원미만 100억원이상</td> <td>30이상</td> <td>30미만 25이상</td> <td>25미만 20이상</td> <td>20미만 15이상</td> <td>15미만 7이상</td> </tr> <tr> <td>100억원미만</td> <td>20이상</td> <td>20미만 15이상</td> <td>15미만 10이상</td> <td>10미만 5이상</td> <td>-</td> </tr> <tr> <td>점수</td> <td>8</td> <td>7.2</td> <td>6.4</td> <td>5.6</td> <td>4.8</td> </tr> </tbody> </table> <p>※ 당해 공사규모별 유사용역수행실적이 최저규모 미만인 경우는 0점으로 처리함.</p> | 해당 공사규모 | 건설엔지니어링 수행실적(단위 : 억원) | | | | | 1,000억원이상 | 60이상 | 60미만 50이상 | 50미만 40이상 | 40미만 30이상 | 30미만 20이상 | 1,000억원미만 500억원이상 | 50이상 | 50미만 40이상 | 40미만 30이상 | 30미만 20이상 | 20미만 10이상 | 500억원미만 300억원이상 | 40이상 | 40미만 30이상 | 30미만 20이상 | 20미만 10이상 | 10미만 5이상 | 300억원미만 100억원이상 | 30이상 | 30미만 20이상 | 20미만 10이상 | 10미만 5이상 | - | 100억원미만 | 20이상 | 20미만 15이상 | 15미만 10이상 | 10미만 5이상 | - | 점수 | 8 | 7.2 | 6.4 | 5.6 | 4.8 | 해당 공사규모 | 건설엔지니어링 수행실적 (단위 : 억원) | | | | | 3,000억원이상 | 120이상 | 120미만 110이상 | 110미만 100이상 | 100미만 90이상 | 90미만 45이상 | 3,000억원미만 2,000억원이상 | 100이상 | 100미만 90이상 | 90미만 80이상 | 80미만 70이상 | 70미만 35이상 | 2,000억원미만 1,000억원이상 | 80이상 | 80미만 70이상 | 70미만 60이상 | 60미만 50이상 | 50미만 25이상 | 1,000억원미만 500억원이상 | 60이상 | 60미만 50이상 | 50미만 40이상 | 40미만 30이상 | 30미만 15이상 | 500억원미만 300억원이상 | 40이상 | 40미만 30이상 | 30미만 25이상 | 25미만 20이상 | 20미만 10이상 | 300억원미만 100억원이상 | 30이상 | 30미만 25이상 | 25미만 20이상 | 20미만 15이상 | 15미만 7이상 | 100억원미만 | 20이상 | 20미만 15이상 | 15미만 10이상 | 10미만 5이상 | - | 점수 | 8 | 7.2 | 6.4 | 5.6 | 4.8 |
| 해당 공사규모 | 건설엔지니어링 수행실적(단위 : 억원)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000억원이상 | 60이상 | 60미만 50이상 | 50미만 40이상 | 40미만 30이상 | 30미만 20이상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000억원미만 500억원이상 | 50이상 | 50미만 40이상 | 40미만 30이상 | 30미만 20이상 | 20미만 10이상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500억원미만 300억원이상 | 40이상 | 40미만 30이상 | 30미만 20이상 | 20미만 10이상 | 10미만 5이상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300억원미만 100억원이상 | 30이상 | 30미만 20이상 | 20미만 10이상 | 10미만 5이상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00억원미만 | 20이상 | 20미만 15이상 | 15미만 10이상 | 10미만 5이상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점수 | 8 | 7.2 | 6.4 | 5.6 | 4.8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해당 공사규모 | 건설엔지니어링 수행실적 (단위 : 억원)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3,000억원이상 | 120이상 | 120미만 110이상 | 110미만 100이상 | 100미만 90이상 | 90미만 45이상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3,000억원미만 2,000억원이상 | 100이상 | 100미만 90이상 | 90미만 80이상 | 80미만 70이상 | 70미만 35이상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000억원미만 1,000억원이상 | 80이상 | 80미만 70이상 | 70미만 60이상 | 60미만 50이상 | 50미만 25이상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000억원미만 500억원이상 | 60이상 | 60미만 50이상 | 50미만 40이상 | 40미만 30이상 | 30미만 15이상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500억원미만 300억원이상 | 40이상 | 40미만 30이상 | 30미만 25이상 | 25미만 20이상 | 20미만 10이상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300억원미만 100억원이상 | 30이상 | 30미만 25이상 | 25미만 20이상 | 20미만 15이상 | 15미만 7이상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00억원미만 | 20이상 | 20미만 15이상 | 15미만 10이상 | 10미만 5이상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점수 | 8 | 7.2 | 6.4 | 5.6 | 4.8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평가 항목 | 세부평가 항목 | 배점 | 세 부 평 가 방 법 | | | | | | | | | | | | | | | | | | | | |
|-----------------------------|-------------------|---------------|--|---------------|--------|---------------|-----------------------------|---------------|---------|--------|------------|--------|---------|--------|---------|-------------|--------|-----|----|-----|-----|-----|---|
| | 용역수행성과 | [2] | <p>- 업체가 해당 발주청에서 수행한 용역평가 결과에 따라 평가하며, 해당 발주청의 상위기관에서 수행한 용역평가 결과를 활용할 수 있음. * 용역평가는 건진법 제50조에 따른 평가를 원칙으로 하되, 용역 특성을 반영하여 발주청에서 별도로 정한 평가의 결과를 활용할 수 있음(필요시 입찰공고에 명시)</p> <table border="1"> <thead> <tr> <th>용역평가 결과</th> <th>95점 이상</th> <th>95점 미만 92점 이상</th> <th>92점 미만 89점 이상</th> <th>89점 미만 86점 이상</th> <th>85점 미만</th> </tr> </thead> <tbody> <tr> <td>점수</td> <td>2</td> <td>1.8</td> <td>1.6</td> <td>1.4</td> <td>1.2</td> </tr> </tbody> </table> <p>- 해당 발주청에서 발주한 용역 성과가 없는 업체에 대해서는 용역수행평가시 "1.8" 또는 "1.6"의 점수를 부여할 수 있으며, 발주청에서 집찰계획공고 또는 입찰공고시 기준을 제시하여야 한다.</p> | 용역평가 결과 | 95점 이상 | 95점 미만 92점 이상 | 92점 미만 89점 이상 | 89점 미만 86점 이상 | 85점 미만 | 점수 | 2 | 1.8 | 1.6 | 1.4 | 1.2 | | | | | | | | |
| 용역평가 결과 | 95점 이상 | 95점 미만 92점 이상 | 92점 미만 89점 이상 | 89점 미만 86점 이상 | 85점 미만 | | | | | | | | | | | | | | | | | | |
| 점수 | 2 | 1.8 | 1.6 | 1.4 | 1.2 | | | | | | | | | | | | | | | | | | |
| 다. 신 용 도 | (1) 영업 정지 (업무 정지) | [7] | <p>○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대표자 포함)가 건설사업관리(건축법·주택법상 감리포함) 업무와 관련하여 최근 1년간 관계법령에 따라 영업정지(업무정지, 과징금 부과처분 포함)를 받은 기간을 합산하여 합산기간 1개월마다 0.2점씩 감점(1개월 미만인 경우 1개월로 계산)</p> <p>○ 참여기술인이 건설사업관리(건축법·주택법상 감리포함) 업무와 관련하여 최근 1년간 관계법령에 따라 기술자격정지 또는 업무정지를 받은 기간을 합산하여 합산기간 1개월마다 0.2점씩 감점(1개월 미만인 경우 1개월로 계산)</p> | | | | | | | | | | | | | | | | | | | | |
| | (2)벌점 | [2] | <p>○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 및 참여기술인이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87조에 따른 벌점을 받은 경우 같은 법 시행령 별표8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감점</p> | | | | | | | | | | | | | | | | | | | | |
| | (3)보안 위규벌점 | [3] | <p>○ 「군사기밀보호법 시행령」제5조(군사기밀의 보호조치 등)을 위반한 경우 0점으로 처리함.</p> <p>○ 건설엔지니어링 수행간 군사보안 위배를 한 경우 각 등급에 따라 감점</p> <table border="1"> <thead> <tr> <th>평가요소</th> <th>등 급</th> <th>평 점</th> </tr> </thead> <tbody> <tr> <td rowspan="4">군사보안 위배관련 감점 (세부내용 참조 3 참조)</td> <td>A. 심 각</td> <td>-1.0 감점</td> </tr> <tr> <td>B. 중 대</td> <td>-0.8 감점</td> </tr> <tr> <td>C. 경 미</td> <td>-0.6 감점</td> </tr> <tr> <td>D. 미 흘</td> <td>-0.4 감점</td> </tr> </tbody> </table> <p>○ 군사보안 위배관련 감점은 최근 3년간 감점을 누계하며 배점이상 감점 처리된 경우 0점으로 처리함.</p> | 평가요소 | 등 급 | 평 점 | 군사보안 위배관련 감점 (세부내용 참조 3 참조) | A. 심 각 | -1.0 감점 | B. 중 대 | -0.8 감점 | C. 경 미 | -0.6 감점 | D. 미 흘 | -0.4 감점 | | | | | | | | |
| 평가요소 | 등 급 | 평 점 | | | | | | | | | | | | | | | | | | | | | |
| 군사보안 위배관련 감점 (세부내용 참조 3 참조) | A. 심 각 | -1.0 감점 | | | | | | | | | | | | | | | | | | | | | |
| | B. 중 대 | -0.8 감점 | | | | | | | | | | | | | | | | | | | | | |
| | C. 경 미 | -0.6 감점 | | | | | | | | | | | | | | | | | | | | | |
| | D. 미 흘 | -0.4 감점 | | | | | | | | | | | | | | | | | | | | | |
| | (4)재정 상태건설도 | [3] | <p>○ 재정상태 건설도는 신용평가등급을 기준으로 평가하며, 참여업체가 "신용평가등급 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0점으로 처리함.</p> <p><신용평가등급 기준></p> <table border="1"> <thead> <tr> <th>회사채</th> <th>BBB-이상</th> <th>BBB-미만 B-이상</th> <th>CCC+ 이하</th> <th>미제출</th> </tr> </thead> <tbody> <tr> <td>기업어음</td> <td>A3-이상</td> <td>A3-미만 B-이상</td> <td>C이하</td> <td>미제출</td> </tr> <tr> <td>기업신용</td> <td>BBB-이상</td> <td>BBB-미만 B-이상</td> <td>CCC+이하</td> <td>미제출</td> </tr> <tr> <td>점수</td> <td>3.0</td> <td>2.8</td> <td>2.1</td> <td>0</td> </tr> </tbody> </table> <p>*주정가액 10억원 미만의 건설사업관리의 경우 한단계식 하향평가 실시</p> | 회사채 | BBB-이상 | BBB-미만 B-이상 | CCC+ 이하 | 미제출 | 기업어음 | A3-이상 | A3-미만 B-이상 | C이하 | 미제출 | 기업신용 | BBB-이상 | BBB-미만 B-이상 | CCC+이하 | 미제출 | 점수 | 3.0 | 2.8 | 2.1 | 0 |
| 회사채 | BBB-이상 | BBB-미만 B-이상 | CCC+ 이하 | 미제출 | | | | | | | | | | | | | | | | | | | |
| 기업어음 | A3-이상 | A3-미만 B-이상 | C이하 | 미제출 | | | | | | | | | | | | | | | | | | | |
| 기업신용 | BBB-이상 | BBB-미만 B-이상 | CCC+이하 | 미제출 | | | | | | | | | | | | | | | | | | | |
| 점수 | 3.0 | 2.8 | 2.1 | 0 | | | | | | | | | | | | | | | | | | | |

| 평가 항목 | 세부평가 항목 | 배점 | 세 부 평 가 방 법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라. 기술개발 및 투자 실적 | (1) 개발·활용실적 | 10 [3] | <p>1) 「건설기술진흥법」 제14조에 따라 지정된 건설신기술은 건설사업관리자가 보유하고 있거나 실제 활용한 실적(건수, 금액)에 따라 평가하고, 건설기술에 관한 특허는 실제 활용한 실적(건수, 금액) 및 출원일로부터 경과기간에 따라 평가</p> <p>2) 건설신기술은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가 건설공사의 설계용역을 수행하면서 보호기간 내에 설계에 적용하여 보호기간 만료일 이후 3년 이내에 공사에 실제 활용된 실적과 건설사업관리(건축법·주택법상 감리포함) 용역을 수행하면서 설계에 적용되어 있거나, 직접 제안 또는 설계변경으로 보호기간 내에 적용한 건설신기술을 보호기간 만료일 이후 3년 이내에 공사에 실제 활용한 실적에 대하여 인정</p> <p>3) 건설기술에 관한 특허는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가 건설공사의 설계용역을 수행하면서 존속기간 내에 설계에 적용하여 공사에 실제 활용된 실적과 건설사업관리(건축법·주택법상 감리포함) 용역을 수행하면서 설계에 적용되어 있거나, 직접 제안 또는 설계변경으로 존속기간 내에 적용한 특허를 공사에 실제 활용한 실적에 대하여 인정하며, 최대 1점까지만 인정</p> <p>4) 평가점수는 아래의 방법에 따라 산정한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개발실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건설신기술 : 기준점수 × 1/n (n=기술개발자수) ○ 활용실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건설신기술 : 기준점수 × 사용실적에 따른 가중치 - 건설기술에 관한 특허 : 기준점수 × 사용실적에 따른 가중치 × 경과기간에 따른 가중치 <p>- 기준점수</p> <table border="1"> <thead> <tr> <th colspan="2">구 분</th> <th>기준점수</th> </tr> </thead> <tbody> <tr> <td>개발실적</td> <td>건설신기술</td> <td>2.0점/건당</td> </tr> <tr> <td rowspan="2">활용실적</td> <td>건설신기술</td> <td>0.5점/건당</td> </tr> <tr> <td>건설기술에 관한 특허</td> <td>0.3점/건당</td> </tr> </tbody> </table> <p>- 사용실적(건수, 금액)에 따른 가중치(건설신기술 및 특허에 적용)</p> <table border="1"> <thead> <tr> <th rowspan="2">구 분</th> <th colspan="5">가 중 치</th> </tr> <tr> <th>1.0</th> <th>0.9</th> <th>0.8</th> <th>0.7</th> <th>0.6</th> </tr> </thead> <tbody> <tr> <td>실적건수(건)</td> <td>5이상</td> <td>5미만 4이상</td> <td>4미만 3이상</td> <td>3미만 2이상</td> <td>2미만 1이상</td> </tr> <tr> <td>실적금액(억원)</td> <td>20이상</td> <td>20미만 18이상</td> <td>18미만 16이상</td> <td>16미만 14이상</td> <td>14미만 12이상</td> </tr> </tbody> </table> <p>※ 공동이행방식으로 수행한 용역의 사용실적은 참여지분율을 곱하여 산정하며, 실적건수와 금액 중에서 한 가지 이상을 충족시켜야 함</p> <p>- 출원일로부터 경과기간에 따른 가중치(특허에만 적용)</p> <table border="1"> <thead> <tr> <th>구 분</th> <th>5년미만</th> <th>5년이상 10년미만</th> <th>10년이상 20년미만</th> </tr> </thead> <tbody> <tr> <td>인정률</td> <td>100%</td> <td>80%</td> <td>60%</td> </tr> </tbody> </table> <p>5) 동일한 내용으로 건설신기술, 특허를 각각 받은 경우의 활용실적은 점수가 높은 1건만 인정하며, 여러 건설신기술, 특허를 사용한 경우에는 건설신기술 또는 특허별로 4)에 따라 산정한 점수를 합산한다.</p> | 구 분 | | 기준점수 | 개발실적 | 건설신기술 | 2.0점/건당 | 활용실적 | 건설신기술 | 0.5점/건당 | 건설기술에 관한 특허 | 0.3점/건당 | 구 분 | 가 중 치 | | | | | 1.0 | 0.9 | 0.8 | 0.7 | 0.6 | 실적건수(건) | 5이상 | 5미만 4이상 | 4미만 3이상 | 3미만 2이상 | 2미만 1이상 | 실적금액(억원) | 20이상 | 20미만 18이상 | 18미만 16이상 | 16미만 14이상 | 14미만 12이상 | 구 분 | 5년미만 | 5년이상 10년미만 | 10년이상 20년미만 | 인정률 | 100% | 80% | 60% |
| 구 분 | | 기준점수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개발실적 | 건설신기술 | 2.0점/건당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활용실적 | 건설신기술 | 0.5점/건당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건설기술에 관한 특허 | 0.3점/건당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구 분 | 가 중 치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0 | 0.9 | 0.8 | 0.7 | 0.6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실적건수(건) | 5이상 | 5미만 4이상 | 4미만 3이상 | 3미만 2이상 | 2미만 1이상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실적금액(억원) | 20이상 | 20미만 18이상 | 18미만 16이상 | 16미만 14이상 | 14미만 12이상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구 분 | 5년미만 | 5년이상 10년미만 | 10년이상 20년미만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인정률 | 100% | 80% | 60%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평가 항목 | 세부평가 항목 | 배점 | 세 부 평 가 방 법 | | | | | | | | | | | | | | |
|----------|-----------------|-----------------|--|-----------------|-----------------|-----------------|-----------------|-----------------|-----------------|----------------|---------------|------|---------|-----------------|-----------------|-----|-----|
| | (2) 투자 실적 | [7] | <p>○ 최근 3년간 기술개발투자실적의 건설부문 총매출액에 대한 비율(건설기술개발투자액/건설부문 총매출액)에 따라 계산</p> <p>- 다만, 회사 설립년수 부족으로 3년간 자료를 제출치 못하는 경우에는 제출된 년수를 기준으로 건설부문 총매출액 합계에 대한 비율로 평가</p> <table border="1"> <thead> <tr> <th>구분</th> <th>1.5%이상</th> <th>1.50%미만 1.25%이상</th> <th>1.25%미만 1.00%이상</th> <th>1.00%미만 0.75%이상</th> <th>0.75%미만 0.50%이상</th> <th>0.5%미만</th> </tr> </thead> <tbody> <tr> <td>점수</td> <td>7</td> <td>6.8</td> <td>6.6</td> <td>6.4</td> <td>6.2</td> <td>6.0</td> </tr> </tbody> </table> <p>※ 건설기술연구개발사업 참여실적에 적용된 실적금액을 투자실적에 포함</p> | 구분 | 1.5%이상 | 1.50%미만 1.25%이상 | 1.25%미만 1.00%이상 | 1.00%미만 0.75%이상 | 0.75%미만 0.50%이상 | 0.5%미만 | 점수 | 7 | 6.8 | 6.6 | 6.4 | 6.2 | 6.0 |
| 구분 | 1.5%이상 | 1.50%미만 1.25%이상 | 1.25%미만 1.00%이상 | 1.00%미만 0.75%이상 | 0.75%미만 0.50%이상 | 0.5%미만 | | | | | | | | | | | |
| 점수 | 7 | 6.8 | 6.6 | 6.4 | 6.2 | 6.0 | | | | | | | | | | | |
| 마. 교체빈도 | (1)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 | [3] | <p>○ 시공단계의 건설사업관리를 포함하지 않는 경우 교체빈도 평가점수는 배점한도인 5점을 적용한다.</p> <p>○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 소속 전체 건설기술인 중 최근 1년간 건설사업관리(건축법·주택법상 감리포함) 용역의 시공단계에 배치된 기술인수에 대한 교체건수 합계의 비율(교체빈도율)</p> <p>※ 기술지원기술인의 경우 교체 5건마다 1건으로 계산</p> <table border="1"> <thead> <tr> <th>교체빈도율(%)</th> <th>5%미만</th> <th>5%이상 10%미만</th> <th>10%이상 15%미만</th> <th>15%이상 20%미만</th> <th>20%이상</th> </tr> </thead> <tbody> <tr> <td>점수</td> <td>3</td> <td>2.5</td> <td>2</td> <td>1</td> <td>0</td> </tr> </tbody> </table> | 교체빈도율(%) | 5%미만 | 5%이상 10%미만 | 10%이상 15%미만 | 15%이상 20%미만 | 20%이상 | 점수 | 3 | 2.5 | 2 | 1 | 0 | | |
| 교체빈도율(%) | 5%미만 | 5%이상 10%미만 | 10%이상 15%미만 | 15%이상 20%미만 | 20%이상 | | | | | | | | | | | | |
| 점수 | 3 | 2.5 | 2 | 1 | 0 | | | | | | | | | | | | |
| | (2) 참여기술인 | [2] | <p>○ 상주기술인으로 최근 1년간 건설사업관리(건축법·주택법상 감리포함) 용역의 시공단계에 배치된 참여기술인의 교체 1회당 0.25점씩 감점 (기술지원기술인의 경우 1회당 0.1점씩 감점)</p> | | | | | | | | | | | | | | |
| 가 점 | 공사비절감 기여 기술인 | 0.2 | <p>○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3년내 참여기술인이 발주청(인.허가기관 제외)이 시행하는 건설공사에 대해 제안하여 발주청으로부터 공사비 절감을 확인(발주청 심의결서 사본첨부) 받은 참여기술인</p> <p>- 상주 참여기술인으로 참여하는 경우 : 0.1점/1건</p> <p>- 기술지원기술인으로 참여하는 경우 0.1점/1건 적용</p> <p>가점부여 점수 = 0.1점(0.1점) × 1건 × 가중치</p> <p><절감실적에 따른 가중치></p> <table border="1"> <thead> <tr> <th>가중치</th> <th>1.0</th> <th>0.8</th> <th>0.5</th> </tr> </thead> <tbody> <tr> <td>절감금액</td> <td>10억원 이상</td> <td>10억원 미만 5억원 이상</td> <td>5억원 미만 1억원 이상</td> </tr> <tr> <td>절감비율</td> <td>1.0% 이상</td> <td>1.0% 미만 0.5% 이상</td> <td>0.5% 미만 0.1% 이상</td> </tr> </tbody> </table> <p>* 1인이 2건 이상 공사비 절감실적이 있을 경우 절감금액은 합산하고, 절감비율은 총공사비를 합한 금액에 대한 절감금액 합계의 비율에 따라 적용</p> <p>* 해당 건설사업관리용역과 주된 공종이 같거나 유사한 경우 적용</p> <p>* 상주기술인(평가대상) 및 기술지원기술인(평가대상) 각각 1인에 한하여 적용</p> <p>* 절감금액 = 공사비절감금액 × 절감기여율</p> <p>* 절감비율 = (공사비절감금액 × 절감기여율) / 총공사비</p> <p>* 위의 절감금액 또는 절감비율 중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인정</p> | 가중치 | 1.0 | 0.8 | 0.5 | 절감금액 | 10억원 이상 | 10억원 미만 5억원 이상 | 5억원 미만 1억원 이상 | 절감비율 | 1.0% 이상 | 1.0% 미만 0.5% 이상 | 0.5% 미만 0.1% 이상 | | |
| 가중치 | 1.0 | 0.8 | 0.5 | | | | | | | | | | | | | | |
| 절감금액 | 10억원 이상 | 10억원 미만 5억원 이상 | 5억원 미만 1억원 이상 | | | | | | | | | | | | | | |
| 절감비율 | 1.0% 이상 | 1.0% 미만 0.5% 이상 | 0.5% 미만 0.1% 이상 | | | | | | | | | | | | | | |

| 평가 항목 | 세부평가 항목 | 배점 | 세 부 평 가 방 법 |
|-------|--------------|-----|---|
| 가 점 | 건설 기술인 신규 고용 | 0.3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건설기술인 신규고용율에 따라 가점 부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 이상 : 0.1점 . 2% 이상 : 0.2점 . 3% 이상 : 0.3점 - 건설기술인 신규 고용율 = 최근 1년간 건설기술인 신규 고용인원(입찰 공고일 전월 기준) / 직전년도 동기간 평균 고용인원 - 신규 건설기술인은 입찰공고일 현재 해당업체 재직 중인 자로 건설기술인 경력관리 수탁기관의 경력증명서에 최초로 입사 등록된 자(이전 건설분야 근무경력이 없는 자)에 한함 - 직전년도 동기간 평균 고용인원은 건설기술인 경력관리 수탁기관에 신고한 자로서 해당업체의 기술인 재직인원(월말 기준)을 월단위로 평균하여 산정 ○ 건설기술인 경력관리 수탁기관에서 확인한 후 발급한 자료로 평가 ○ 공동이행방식으로 용역을 수행하는 경우에는 공동수급체의 구성원별 평가점수에 용역참여지분율을 곱하여 산정한 후 이를 합산 |
| 감 점 | 부패행위 관련자 | 5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입찰 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2년 내 해당 발주청에서 부패행위로 형사처벌 또는 건설기술진흥법령에 의한 행정처분을 받은 건설사업관리기술인과 부패행위 당시 그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이 소속된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는 감점(건설사업관리기술인 및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의 감점처분 대상일은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형사처벌일 또는 행정처분일이며, 동일 건으로 형사처벌과 행정처분을 받았을 경우 선행된 처벌(분)일을 적용함) ○ 감점적용 점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부패행위로 인한 피해금액이 계약금액(총공사 부기금액)의 3%를 초과하거나 10억원 초과 : 5점 감점 - 부패행위로 인한 피해금액이 계약금액(총공사 부기금액)의 1%를 초과하거나 3% 이하 또는 3억원을 초과하거나 10억원 이하 : 3점 감점 - 부패행위로 인한 피해금액이 계약금액(총공사 부기금액)의 1% 이하이거나 3억원 이하 : 1점 감점 <p><부패행위>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이 건설사업관리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그 지위 또는 권한을 남용하거나 법령을 위반하여,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도모하는 행위를 하거나 발주청에 재산상 손해를 가하는 행위</p> <p>※ 위 내용의 평가는 처분기관(수요기관 포함)에서 통보한 자료에 따라 평가함</p> |

<대미사업>

| 평가 항목 | 세부평가 항목 | 배점 | 세 부 평 가 방 법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가. 참여 기술자 | (1)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 | 60 [25]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공단계의 건설사업관리를 포함하는 경우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제35조제1항 각 호에 의한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경력 및 배치기준에 부적합할 경우 실격처리함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 경력 및 배치기준 <table border="1"> <thead> <tr> <th>당해 공사규모</th> <th>경 력</th> </tr> </thead> <tbody> <tr> <td>500억원 이상</td> <td>총 공사비 300억원 이상인 건설공사에 대한 시공단계 건설사업관리 경력 1년 이상인 특급기술인</td> </tr> <tr> <td>500억원 미만 300억원 이상</td> <td>총 공사비 200억원 이상인 건설공사에 대한 시공단계 건설사업관리 경력 1년 이상인 특급기술인</td> </tr> <tr> <td>300억원 미만 100억원 이상</td> <td>총 공사비 100억원 이상인 건설공사에 대한 시공단계 건설사업관리 경력 1년 이상인 고급기술인</td> </tr> </tbody> </table> | 당해 공사규모 | 경 력 | 500억원 이상 | 총 공사비 300억원 이상인 건설공사에 대한 시공단계 건설사업관리 경력 1년 이상인 특급기술인 | 500억원 미만 300억원 이상 | 총 공사비 200억원 이상인 건설공사에 대한 시공단계 건설사업관리 경력 1년 이상인 특급기술인 | 300억원 미만 100억원 이상 | 총 공사비 100억원 이상인 건설공사에 대한 시공단계 건설사업관리 경력 1년 이상인 고급기술인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당해 공사규모 | 경 력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500억원 이상 | 총 공사비 300억원 이상인 건설공사에 대한 시공단계 건설사업관리 경력 1년 이상인 특급기술인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500억원 미만 300억원 이상 | 총 공사비 200억원 이상인 건설공사에 대한 시공단계 건설사업관리 경력 1년 이상인 특급기술인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300억원 미만 100억원 이상 | 총 공사비 100억원 이상인 건설공사에 대한 시공단계 건설사업관리 경력 1년 이상인 고급기술인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가) 해당 분야 경력 | | 15 <12.5>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해당분야경력 인정 담당업무범위 : 설계, 시공, 품질관리, 안전관리, 안전진단 및 점검, 유지보수 및 보강, 건설사업관리, 감리, 관리감독, 감독, 공사감독, 용역감독, 일반감독, 사업관리, 기술조사, 행정지원 등 <table border="1"> <thead> <tr> <th>해당공사규모</th> <th colspan="5">해당분야경력 기간 (단위:년)</th> </tr> </thead> <tbody> <tr> <td>1,000억원이상</td> <td>15이상</td> <td>15미만 13이상</td> <td>13미만 11이상</td> <td>11미만 9이상</td> <td>9미만</td> </tr> <tr> <td>1,000억원미만 500억원이상</td> <td>13이상</td> <td>13미만 11이상</td> <td>11미만 9이상</td> <td>9미만 7이상</td> <td>7미만</td> </tr> <tr> <td>500억원미만 300억원이상</td> <td>11이상</td> <td>11미만 9이상</td> <td>9미만 7이상</td> <td>7미만 5이상</td> <td>5미만</td> </tr> <tr> <td>300억원미만</td> <td>9이상</td> <td>9미만 7이상</td> <td>7미만 5이상</td> <td>5미만 3이상</td> <td>3미만</td> </tr> <tr> <td>점수</td> <td>15 <12.5></td> <td>13.5 <11></td> <td>12 <9.5></td> <td>10.5 <8></td> <td>9 <6.5></td> </tr> </tbody> </table> <p>< >안의 배점은 건설사업관리책임기술인 면접을 평가하는 경우에 적용한다. * 해당분야경력 산정 후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에 의한 수행경력 인정율적용</p> | 해당공사규모 | 해당분야경력 기간 (단위:년) | | | | | 1,000억원이상 | 15이상 | 15미만 13이상 | 13미만 11이상 | 11미만 9이상 | 9미만 | 1,000억원미만 500억원이상 | 13이상 | 13미만 11이상 | 11미만 9이상 | 9미만 7이상 | 7미만 | 500억원미만 300억원이상 | 11이상 | 11미만 9이상 | 9미만 7이상 | 7미만 5이상 | 5미만 | 300억원미만 | 9이상 | 9미만 7이상 | 7미만 5이상 | 5미만 3이상 | 3미만 | 점수 | 15 <12.5> | 13.5 <11> | 12 <9.5> | 10.5 <8> | 9 <6.5> | | | | | | | | | | | | |
| 해당공사규모 | 해당분야경력 기간 (단위: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000억원이상 | 15이상 | 15미만 13이상 | 13미만 11이상 | 11미만 9이상 | 9미만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000억원미만 500억원이상 | 13이상 | 13미만 11이상 | 11미만 9이상 | 9미만 7이상 | 7미만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500억원미만 300억원이상 | 11이상 | 11미만 9이상 | 9미만 7이상 | 7미만 5이상 | 5미만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300억원미만 | 9이상 | 9미만 7이상 | 7미만 5이상 | 5미만 3이상 | 3미만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점수 | 15 <12.5> | 13.5 <11> | 12 <9.5> | 10.5 <8> | 9 <6.5>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나) 직무 분야 실적 | | 8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직무분야실적 인정 담당업무범위 : 설계, 시공, 품질관리, 안전관리, 안전진단 및 점검, 유지보수 및 보강, 건설사업관리, 감리, 관리감독, 감독, 공사감독, 용역감독, 일반감독, 사업관리, 기술조사, 행정지원 등 <table border="1"> <thead> <tr> <th>해당공사규모</th> <th colspan="5">직무분야실적 기간 (단위:년)</th> </tr> </thead> <tbody> <tr> <td>300억원이상</td> <td>15이상</td> <td>15미만 13이상</td> <td>13미만 11이상</td> <td>11미만 9이상</td> <td>9미만</td> </tr> <tr> <td>300억원미만</td> <td>12이상</td> <td>12미만 10이상</td> <td>10미만 8이상</td> <td>8미만 6이상</td> <td>6미만</td> </tr> <tr> <td>점수</td> <td>6</td> <td>5.4</td> <td>4.8</td> <td>4.2</td> <td>3.6</td> </tr> </tbody> </table> <ul style="list-style-type: none"> ○ COE, FED, 해외공사 및 대미공사 : 설계, 시공, 품질관리, 안전관리, 안전진단 및 점검, 유지보수 및 보강, 건설사업관리, 감리, 관리감독, 감독, 공사감독, 용역감독, 일반감독, 사업관리, 기술조사, 행정지원 등 <table border="1"> <thead> <tr> <th>등급</th> <th colspan="5">COE, FED, 해외공사 및 대미공사 기간 (단위:년)</th> </tr> </thead> <tbody> <tr> <td>300억원이상</td> <td>4이상</td> <td>4미만 3이상</td> <td>3미만 2이상</td> <td>2미만 1이상</td> <td>1미만</td> </tr> <tr> <td>300억원미만</td> <td>3이상</td> <td>3미만 2이상</td> <td>2미만 1이상</td> <td>1미만</td> <td>-</td> </tr> <tr> <td>점수</td> <td>2</td> <td>1.8</td> <td>1.6</td> <td>1.4</td> <td>1.2</td> </tr> </tbody> </table> | 해당공사규모 | 직무분야실적 기간 (단위:년) | | | | | 300억원이상 | 15이상 | 15미만 13이상 | 13미만 11이상 | 11미만 9이상 | 9미만 | 300억원미만 | 12이상 | 12미만 10이상 | 10미만 8이상 | 8미만 6이상 | 6미만 | 점수 | 6 | 5.4 | 4.8 | 4.2 | 3.6 | 등급 | COE, FED, 해외공사 및 대미공사 기간 (단위:년) | | | | | 300억원이상 | 4이상 | 4미만 3이상 | 3미만 2이상 | 2미만 1이상 | 1미만 | 300억원미만 | 3이상 | 3미만 2이상 | 2미만 1이상 | 1미만 | - | 점수 | 2 | 1.8 | 1.6 | 1.4 | 1.2 |
| 해당공사규모 | 직무분야실적 기간 (단위: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300억원이상 | 15이상 | 15미만 13이상 | 13미만 11이상 | 11미만 9이상 | 9미만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300억원미만 | 12이상 | 12미만 10이상 | 10미만 8이상 | 8미만 6이상 | 6미만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점수 | 6 | 5.4 | 4.8 | 4.2 | 3.6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등급 | COE, FED, 해외공사 및 대미공사 기간 (단위: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300억원이상 | 4이상 | 4미만 3이상 | 3미만 2이상 | 2미만 1이상 | 1미만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300억원미만 | 3이상 | 3미만 2이상 | 2미만 1이상 | 1미만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점수 | 2 | 1.8 | 1.6 | 1.4 | 1.2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평가 항목 | 세부평가 항목 | 배점 | 세 부 평 가 방 법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다) 교육 훈련 및 기술자격 | (라) 면접 (발표) | 2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이 최근 3년간 「건설기술진흥법」 제20조제2항에 따른 건설기술인 교육훈련을 받거나 해당분야의 기술자격 또는 「건축사법」에 의한 건축사자격을 갖춘 경우 다음 기준에 따라 적용 (기술자격은 최상위 1종목만 인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교육훈련 : 2주이상(1점), 1주이상 2주미만(0.5점) - 기술자격 : 건축사, 기술사(0.5점), 기사(0.3점), 산업기사(0.1점) ○ FED 교육훈련(최근 5년) : 품질·안전(0.5점), 품질 또는 안전 1개 과정 이수(0.3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5일(1주) 또는 35시간 교육을 수료한 자는 1주일로 인정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5>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참여업체의 등급을 판정한 후, 배점한도에 상대평가(별지1) 가중치를 곱하여 평가 점수 산정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가) 해당 분야 경력 | (나) 직무 분야 실적 | [25]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해당분야경력 인정 담당업무범위 : 설계, 시공, 품질관리, 안전관리, 안전진단 및 점검, 유지보수 및 보강, 건설사업관리, 감리, 관리감독, 감독, 공사감독, 용역감독, 일반감독, 사업관리, 기술조사, 행정지원 등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3.5 <12> | <table border="1"> <thead> <tr> <th>해당공사규모</th> <th colspan="5">해당분야경력 기간 (단위: 월)</th> </tr> </thead> <tbody> <tr> <td>300억원 이상</td> <td>72이상</td> <td>72미만 66이상</td> <td>66미만 60이상</td> <td>60미만 54이상</td> <td>54미만</td> </tr> <tr> <td>300억원 미만 100억원 이상</td> <td>60이상</td> <td>60미만 54이상</td> <td>54미만 48이상</td> <td>48미만 42이상</td> <td>42미만</td> </tr> <tr> <td>100억원 미만</td> <td>48이상</td> <td>48미만 42이상</td> <td>42미만 36이상</td> <td>36미만 30이상</td> <td>30미만</td> </tr> <tr> <td>점수</td> <td>13.5 <12></td> <td>12.0 <10.5></td> <td>10.5 <9></td> <td>9.0 <7.5></td> <td>7.5 <6></td> </tr> </tbody> </table> <ul style="list-style-type: none"> ※ < >의 배점은 면접을 평가하는 경우 적용한다 ※ 해당분야경력 산정 후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에 의한 수행경력 인정을 적용(인정을 적용대상에 한함.) | 해당공사규모 | 해당분야경력 기간 (단위: 월) | | | | | 300억원 이상 | 72이상 | 72미만 66이상 | 66미만 60이상 | 60미만 54이상 | 54미만 | 300억원 미만 100억원 이상 | 60이상 | 60미만 54이상 | 54미만 48이상 | 48미만 42이상 | 42미만 | 100억원 미만 | 48이상 | 48미만 42이상 | 42미만 36이상 | 36미만 30이상 | 30미만 | 점수 | 13.5 <12> | 12.0 <10.5> | 10.5 <9> | 9.0 <7.5> | 7.5 <6> | | | | | | | | | | | | | | | | | | | | | | |
| 해당공사규모 | 해당분야경력 기간 (단위: 월)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300억원 이상 | 72이상 | 72미만 66이상 | 66미만 60이상 | 60미만 54이상 | 54미만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300억원 미만 100억원 이상 | 60이상 | 60미만 54이상 | 54미만 48이상 | 48미만 42이상 | 42미만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00억원 미만 | 48이상 | 48미만 42이상 | 42미만 36이상 | 36미만 30이상 | 30미만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점수 | 13.5 <12> | 12.0 <10.5> | 10.5 <9> | 9.0 <7.5> | 7.5 <6>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다) 교육 훈련 | | 10.5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직무분야실적 인정 담당업무범위 : 설계, 시공, 품질관리, 안전관리, 안전진단 및 점검, 유지보수 및 보강, 건설사업관리, 감리, 관리감독, 감독, 공사감독, 용역감독, 일반감독, 사업관리, 기술조사, 행정지원 등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 | <table border="1"> <thead> <tr> <th>해당공사규모</th> <th colspan="5">직무분야실적 기간 (단위: 년)</th> </tr> </thead> <tbody> <tr> <td>300억원 이상</td> <td>12이상</td> <td>12미만 10이상</td> <td>10미만 8이상</td> <td>8미만 6이상</td> <td>6미만</td> </tr> <tr> <td>300억원 미만 100억원 이상</td> <td>10이상</td> <td>10미만 8이상</td> <td>8미만 6이상</td> <td>6미만 4이상</td> <td>4미만</td> </tr> <tr> <td>100억원 미만</td> <td>8이상</td> <td>8미만 6이상</td> <td>6미만 4이상</td> <td>4미만 2이상</td> <td>2미만</td> </tr> <tr> <td>점수</td> <td>3.5</td> <td>3.2</td> <td>2.9</td> <td>2.6</td> <td>2.3</td> </tr> </tbody> </table> <ul style="list-style-type: none"> ○ COE, FED, 해외공사 및 대미공사 : 설계, 시공, 품질관리, 안전관리, 안전진단 및 점검, 유지보수 및 보강, 건설사업관리, 감리, 관리감독, 감독, 공사감독, 용역감독, 일반감독, 사업관리, 기술조사, 행정지원 등 <table border="1"> <thead> <tr> <th>등 급</th> <th colspan="5">COE, FED, 해외공사 및 대미공사 기간 (단위: 년)</th> </tr> </thead> <tbody> <tr> <td>300억원 이상</td> <td>4이상</td> <td>4미만 3이상</td> <td>3미만 2이상</td> <td>2미만 1이상</td> <td>1미만</td> </tr> <tr> <td>300억원 이하</td> <td>3이상</td> <td>3미만 2이상</td> <td>2미만 1이상</td> <td>1미만</td> <td>-</td> </tr> <tr> <td>점수</td> <td>7</td> <td>6.3</td> <td>5.6</td> <td>4.9</td> <td>4.2</td> </tr> </tbody> </table>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최근 3년간 「건설기술진흥법」 제20조제2항에 따른 건설기술인 교육훈련을 받은 경우 다음 기준에 따라 적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주이상 교육 (0.5점), 1주이상 2주미만 교육(0.3점) ○ FED 교육훈련(최근 5년) : 품질·안전(0.5점), 품질 또는 안전 1개 과정 이수(0.3점) | 해당공사규모 | 직무분야실적 기간 (단위: 년) | | | | | 300억원 이상 | 12이상 | 12미만 10이상 | 10미만 8이상 | 8미만 6이상 | 6미만 | 300억원 미만 100억원 이상 | 10이상 | 10미만 8이상 | 8미만 6이상 | 6미만 4이상 | 4미만 | 100억원 미만 | 8이상 | 8미만 6이상 | 6미만 4이상 | 4미만 2이상 | 2미만 | 점수 | 3.5 | 3.2 | 2.9 | 2.6 | 2.3 | 등 급 | COE, FED, 해외공사 및 대미공사 기간 (단위: 년) | | | | | 300억원 이상 | 4이상 | 4미만 3이상 | 3미만 2이상 | 2미만 1이상 | 1미만 | 300억원 이하 | 3이상 | 3미만 2이상 | 2미만 1이상 | 1미만 | - | 점수 | 7 | 6.3 | 5.6 |
| 해당공사규모 | 직무분야실적 기간 (단위: 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300억원 이상 | 12이상 | 12미만 10이상 | 10미만 8이상 | 8미만 6이상 | 6미만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300억원 미만 100억원 이상 | 10이상 | 10미만 8이상 | 8미만 6이상 | 6미만 4이상 | 4미만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00억원 미만 | 8이상 | 8미만 6이상 | 6미만 4이상 | 4미만 2이상 | 2미만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점수 | 3.5 | 3.2 | 2.9 | 2.6 | 2.3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등 급 | COE, FED, 해외공사 및 대미공사 기간 (단위: 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300억원 이상 | 4이상 | 4미만 3이상 | 3미만 2이상 | 2미만 1이상 | 1미만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300억원 이하 | 3이상 | 3미만 2이상 | 2미만 1이상 | 1미만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점수 | 7 | 6.3 | 5.6 | 4.9 | 4.2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평가 항목 | 세부평가 항목 | 배점 | 세 부 평 가 방 법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라) 면접 (발표) | (가)등급 | <1.5>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5일(1주) 또는 35시간 교육을 수료한 자는 1주일로 인정 - 참여업체의 등급을 판정한 후, 배점한도에 상대평가(별지1) 가중치를 곱하여 평가 점수 산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면접대상 분야별기술인은 1인(주된 공종분야로서 참여기간이 가장 많은 자) 이상을 대상으로 한다.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0] | <table border="1"> <thead> <tr> <th>당해공사규모</th> <th colspan="2">등 급(점수)</th> </tr> </thead> <tbody> <tr> <td rowspan="2">총공사비 300억원이상</td> <td>특급기술인</td> <td>고급기술인 이하</td> </tr> <tr> <td>3</td> <td>2</td> </tr> <tr> <td rowspan="2">총공사비 300억원미만</td> <td>고급기술인 이상</td> <td>중급기술인 이하</td> </tr> <tr> <td>3</td> <td>2</td> </tr> </tbody> </table> | 당해공사규모 | 등 급(점수) | | 총공사비 300억원이상 | 특급기술인 | 고급기술인 이하 | 3 | 2 | 총공사비 300억원미만 | 고급기술인 이상 | 중급기술인 이하 | 3 | 2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당해공사규모 | 등 급(점수)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총공사비 300억원이상 | 특급기술인 | 고급기술인 이하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3 | 2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총공사비 300억원미만 | 고급기술인 이상 | 중급기술인 이하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3 | 2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나) 해당 분야 경력 | | 6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해당분야경력 인정 담당업무범위 : 설계, 시공, 품질관리, 안전관리, 안전진단 및 점검, 유지보수 및 보강, 건설사업관리, 감리, 관리감독, 감독, 공사감독, 용역감독, 일반감독, 사업관리, 기술조사, 행정지원 등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table border="1"> <thead> <tr> <th>해당공사규모</th> <th colspan="5">해당분야경력 기간 (단위: 년)</th> </tr> </thead> <tbody> <tr> <td>1,000억원이상</td> <td>15이상</td> <td>15미만 13이상</td> <td>13미만 11이상</td> <td>11미만 9이상</td> <td>9미만</td> </tr> <tr> <td>1,000억원미만 500억원이상</td> <td>13이상</td> <td>13미만 11이상</td> <td>11미만 9이상</td> <td>9미만 7이상</td> <td>7미만</td> </tr> <tr> <td>500억원미만 300억원이상</td> <td>11이상</td> <td>11미만 9이상</td> <td>9미만 7이상</td> <td>7미만 5이상</td> <td>5미만</td> </tr> <tr> <td>300억원미만</td> <td>9이상</td> <td>9미만 7이상</td> <td>7미만 5이상</td> <td>5미만 3이상</td> <td>3미만</td> </tr> <tr> <td>점수</td> <td>4</td> <td>3.6</td> <td>3.2</td> <td>2.8</td> <td>2.4</td> </tr> </tbody> </table>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해당분야경력 산정 후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에 의한 수행경력 인정을 적용(인정을 적용대상에 한함.) ○ COE, FED, 해외공사 및 대미공사 : 설계, 시공, 품질관리, 안전관리, 안전진단 및 점검, 유지보수 및 보강, 건설사업관리, 감리, 관리감독, 감독, 공사감독, 용역감독, 일반감독, 사업관리, 기술조사, 행정지원 등 <table border="1"> <thead> <tr> <th>해당공사규모</th> <th colspan="5">해당분야경력 기간 (단위: 년)</th> </tr> </thead> <tbody> <tr> <td>1,000억원이상</td> <td>6이상</td> <td>6미만 5이상</td> <td>5미만 4이상</td> <td>4미만 3이상</td> <td>3미만</td> </tr> <tr> <td>1,000억원미만 500억원이상</td> <td>5이상</td> <td>5미만 4이상</td> <td>4미만 3이상</td> <td>3미만 2이상</td> <td>2미만</td> </tr> <tr> <td>500억원미만 300억원이상</td> <td>4이상</td> <td>4미만 3이상</td> <td>3미만 2이상</td> <td>2미만 1이상</td> <td>1미만</td> </tr> <tr> <td>300억원미만</td> <td>3이상</td> <td>3미만 2이상</td> <td>2미만 1이상</td> <td>1미만</td> <td>-</td> </tr> <tr> <td>점수</td> <td>2</td> <td>1.8</td> <td>1.6</td> <td>1.4</td> <td>1.2</td> </tr> </tbody> </table> | 해당공사규모 | 해당분야경력 기간 (단위: 년) | | | | | 1,000억원이상 | 15이상 | 15미만 13이상 | 13미만 11이상 | 11미만 9이상 | 9미만 | 1,000억원미만 500억원이상 | 13이상 | 13미만 11이상 | 11미만 9이상 | 9미만 7이상 | 7미만 | 500억원미만 300억원이상 | 11이상 | 11미만 9이상 | 9미만 7이상 | 7미만 5이상 | 5미만 | 300억원미만 | 9이상 | 9미만 7이상 | 7미만 5이상 | 5미만 3이상 | 3미만 | 점수 | 4 | 3.6 | 3.2 | 2.8 | 2.4 | 해당공사규모 | 해당분야경력 기간 (단위: 년) | | | | | 1,000억원이상 | 6이상 | 6미만 5이상 | 5미만 4이상 | 4미만 3이상 | 3미만 | 1,000억원미만 500억원이상 | 5이상 | 5미만 4이상 | 4미만 3이상 | 3미만 2이상 | 2미만 | 500억원미만 300억원이상 | 4이상 | 4미만 3이상 | 3미만 2이상 | 2미만 1이상 | 1미만 | 300억원미만 | 3이상 | 3미만 2이상 | 2미만 1이상 | 1미만 | - | 점수 | 2 | 1.8 | 1.6 |
| 해당공사규모 | 해당분야경력 기간 (단위: 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000억원이상 | 15이상 | 15미만 13이상 | 13미만 11이상 | 11미만 9이상 | 9미만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000억원미만 500억원이상 | 13이상 | 13미만 11이상 | 11미만 9이상 | 9미만 7이상 | 7미만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500억원미만 300억원이상 | 11이상 | 11미만 9이상 | 9미만 7이상 | 7미만 5이상 | 5미만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300억원미만 | 9이상 | 9미만 7이상 | 7미만 5이상 | 5미만 3이상 | 3미만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점수 | 4 | 3.6 | 3.2 | 2.8 | 2.4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해당공사규모 | 해당분야경력 기간 (단위: 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000억원이상 | 6이상 | 6미만 5이상 | 5미만 4이상 | 4미만 3이상 | 3미만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000억원미만 500억원이상 | 5이상 | 5미만 4이상 | 4미만 3이상 | 3미만 2이상 | 2미만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500억원미만 300억원이상 | 4이상 | 4미만 3이상 | 3미만 2이상 | 2미만 1이상 | 1미만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300억원미만 | 3이상 | 3미만 2이상 | 2미만 1이상 | 1미만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점수 | 2 | 1.8 | 1.6 | 1.4 | 1.2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평가 항목 | 세부평가 항목 | 배점 | 세 부 평 가 방 법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다)교육 훈련 및 기술 자격 | 1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술지원기술인이 최근 3년간 「건설기술진흥법」 제20조제2항에 따른 건설기술인 교육훈련을 받거나 해당분야의 기술자격 또는 「건축사법」에 의한 건축사자격을 갖춘 경우 다음 기준에 따라 적용 (기술자격은 최상위 1종목만 인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교육훈련 : 2주이상(0.5점), 1주이상 2주미만(0.3점) - 기술자격 : 건축사 . 기술사(0.5점), 기사(0.3점), 산업기사(0.1점) ※ 기술자격자 평가는 기술지원기술인 중 1인에 한하여 적용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나. 유 사 용 역 수 행 실 적 | 건설 기술 용역 실적 | 10 [8] | <p>1)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3년간 해당 건설사업관리용역의 건설공사와 같거나 유사한 공종의 건설공사에 대한 용역사업을 준공하였거나, 수행 중인 실적(전체 용역기간 중 최근 3년간 실제 용역을 수행한 개월 수에 따라 산정)을 인정</p> <p>2) 산정방법</p> <p>① 설계와 시공단계의 건설사업관리 : 설계 와 시공 단계를 포함한 건설사업관리 용역실적 × 1.0 + 설계단계의 건설사업관리용역실적(설계용역실적 70% 인정) × 0.7 + 시공단계의 건설사업관리용역실적(건축법·주택법 감리실적 70% 인정) × 0.7</p> <p>② 설계단계의 건설사업관리용역 : 설계 와 시공 단계를 포함한 건설사업관리용역실적 × 1.0 + 설계단계의 건설사업관리용역실적(설계용역실적 70% 인정) × 1.0</p> <p>③ 시공단계의 건설사업관리용역 : 설계 와 시공 단계를 포함한 건설사업관리용역실적 × 1.0 + 시공단계의 건설사업관리용역실적(건축법·주택법 감리실적 70% 인정) × 1.0</p> <p>※ 설계 또는 시공단계의 건설사업관리용역실적은 해당 단계를 포함하지 않는 건설사업관리를 시행하는 경우에는 인정하지 않으며, 각각 해당 단계에 국한하여 건설사업관리를 시행하는 경우에만 100% 인정하되, 설계 및 시공 단계를 같이 포함하는 건설사업관리를 시행하는 경우에는 70%를 인정한다.</p> <p>※ 건축법·주택법에 따른 감리실적은 시공단계의 건설사업관리용역실적에 포함하고, 설계용역(타당성조사, 기본계획, 기본설계, 실시설계) 실적은 설계단계의 건설사업관리용역실적에 포함하여 산정하되 70%만 인정한다.</p> <p>3) 해당 공사의 주된 공종이 건축공사인 경우</p>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text-align: center;"> <thead> <tr> <th>해당 공사규모</th> <th colspan="5">건설엔지니어링 수행실적(단위 : 억원)</th> </tr> </thead> <tbody> <tr> <td>1,000억원이상</td> <td>60이상</td> <td>60미만 50이상</td> <td>50미만 40이상</td> <td>40미만 30이상</td> <td>30미만 20이상</td> </tr> <tr> <td>1,000억원미만 500억원이상</td> <td>50이상</td> <td>50미만 40이상</td> <td>40미만 30이상</td> <td>30미만 20이상</td> <td>20미만 10이상</td> </tr> <tr> <td>500억원미만 300억원이상</td> <td>40이상</td> <td>40미만 30이상</td> <td>30미만 20이상</td> <td>20미만 10이상</td> <td>10미만 5이상</td> </tr> <tr> <td>300억원미만 100억원이상</td> <td>30이상</td> <td>30미만 20이상</td> <td>20미만 10이상</td> <td>10미만 5이상</td> <td>-</td> </tr> <tr> <td>100억원미만</td> <td>20이상</td> <td>20미만 15이상</td> <td>15미만 10이상</td> <td>10미만 5이상</td> <td>-</td> </tr> <tr> <td>점 수</td> <td>8</td> <td>7.2</td> <td>6.4</td> <td>5.6</td> <td>4.8</td> </tr> </tbody> </table> <p>※ 당해 공사규모별 유사용역수행실적이 최저규모 미만인 경우는 0점으로 처리함.</p> | 해당 공사규모 | 건설엔지니어링 수행실적(단위 : 억원) | | | | | 1,000억원이상 | 60이상 | 60미만 50이상 | 50미만 40이상 | 40미만 30이상 | 30미만 20이상 | 1,000억원미만 500억원이상 | 50이상 | 50미만 40이상 | 40미만 30이상 | 30미만 20이상 | 20미만 10이상 | 500억원미만 300억원이상 | 40이상 | 40미만 30이상 | 30미만 20이상 | 20미만 10이상 | 10미만 5이상 | 300억원미만 100억원이상 | 30이상 | 30미만 20이상 | 20미만 10이상 | 10미만 5이상 | - | 100억원미만 | 20이상 | 20미만 15이상 | 15미만 10이상 | 10미만 5이상 | - | 점 수 | 8 | 7.2 | 6.4 | 5.6 | 4.8 |
| 해당 공사규모 | 건설엔지니어링 수행실적(단위 : 억원)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000억원이상 | 60이상 | 60미만 50이상 | 50미만 40이상 | 40미만 30이상 | 30미만 20이상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000억원미만 500억원이상 | 50이상 | 50미만 40이상 | 40미만 30이상 | 30미만 20이상 | 20미만 10이상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500억원미만 300억원이상 | 40이상 | 40미만 30이상 | 30미만 20이상 | 20미만 10이상 | 10미만 5이상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300억원미만 100억원이상 | 30이상 | 30미만 20이상 | 20미만 10이상 | 10미만 5이상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00억원미만 | 20이상 | 20미만 15이상 | 15미만 10이상 | 10미만 5이상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점 수 | 8 | 7.2 | 6.4 | 5.6 | 4.8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평가 항목 | 세부평가 항목 | 배점 | 세 부 평 가 방 법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p>4) 해당 공사의 주된 공종이 건축공사 이외의 공사(토목, 설비 등)</p>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text-align: center;"> <thead> <tr> <th>해당 공사규모</th> <th colspan="5">건설엔지니어링 수행실적 (단위 : 억원)</th> </tr> </thead> <tbody> <tr> <td>3,000억원이상</td> <td>120이상</td> <td>120미만 110이상</td> <td>110이상 100미만</td> <td>100이상 90이상</td> <td>90미만 45이상</td> </tr> <tr> <td>3,000억원미만 2,000억원이상</td> <td>100이상</td> <td>100미만 90이상</td> <td>90미만 80이상</td> <td>80미만 70이상</td> <td>70미만 35이상</td> </tr> <tr> <td>2,000억원미만 1,000억원이상</td> <td>80이상</td> <td>80미만 70이상</td> <td>70미만 60이상</td> <td>60미만 50이상</td> <td>50미만 25이상</td> </tr> <tr> <td>1,000억원미만 500억원이상</td> <td>60이상</td> <td>60미만 50이상</td> <td>50미만 40이상</td> <td>40미만 30이상</td> <td>30미만 15이상</td> </tr> <tr> <td>500억원미만 300억원이상</td> <td>40이상</td> <td>40미만 30이상</td> <td>30미만 25이상</td> <td>25미만 20이상</td> <td>20미만 10이상</td> </tr> <tr> <td>300억원미만 100억원이상</td> <td>30이상</td> <td>30미만 25이상</td> <td>25미만 20이상</td> <td>20미만 15이상</td> <td>15미만 7이상</td> </tr> <tr> <td>100억원미만</td> <td>20이상</td> <td>20미만 15이상</td> <td>15미만 10이상</td> <td>10미만 5이상</td> <td>-</td> </tr> <tr> <td>점 수</td> <td>8</td> <td>7.2</td> <td>6.4</td> <td>5.6</td> <td>4.8</td> </tr> </tbody> </table> <p>※ 당해 공사규모별 유사용역수행실적이 최저규모 미만인 경우는 0점으로 처리함.</p> | 해당 공사규모 | 건설엔지니어링 수행실적 (단위 : 억원) | | | | | 3,000억원이상 | 120이상 | 120미만 110이상 | 110이상 100미만 | 100이상 90이상 | 90미만 45이상 | 3,000억원미만 2,000억원이상 | 100이상 | 100미만 90이상 | 90미만 80이상 | 80미만 70이상 | 70미만 35이상 | 2,000억원미만 1,000억원이상 | 80이상 | 80미만 70이상 | 70미만 60이상 | 60미만 50이상 | 50미만 25이상 | 1,000억원미만 500억원이상 | 60이상 | 60미만 50이상 | 50미만 40이상 | 40미만 30이상 | 30미만 15이상 | 500억원미만 300억원이상 | 40이상 | 40미만 30이상 | 30미만 25이상 | 25미만 20이상 | 20미만 10이상 | 300억원미만 100억원이상 | 30이상 | 30미만 25이상 | 25미만 20이상 | 20미만 15이상 | 15미만 7이상 | 100억원미만 | 20이상 | 20미만 15이상 | 15미만 10이상 | 10미만 5이상 | - | 점 수 | 8 | 7.2 | 6.4 | 5.6 | 4.8 |
| 해당 공사규모 | 건설엔지니어링 수행실적 (단위 : 억원)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3,000억원이상 | 120이상 | 120미만 110이상 | 110이상 100미만 | 100이상 90이상 | 90미만 45이상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3,000억원미만 2,000억원이상 | 100이상 | 100미만 90이상 | 90미만 80이상 | 80미만 70이상 | 70미만 35이상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000억원미만 1,000억원이상 | 80이상 | 80미만 70이상 | 70미만 60이상 | 60미만 50이상 | 50미만 25이상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000억원미만 500억원이상 | 60이상 | 60미만 50이상 | 50미만 40이상 | 40미만 30이상 | 30미만 15이상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500억원미만 300억원이상 | 40이상 | 40미만 30이상 | 30미만 25이상 | 25미만 20이상 | 20미만 10이상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300억원미만 100억원이상 | 30이상 | 30미만 25이상 | 25미만 20이상 | 20미만 15이상 | 15미만 7이상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00억원미만 | 20이상 | 20미만 15이상 | 15미만 10이상 | 10미만 5이상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점 수 | 8 | 7.2 | 6.4 | 5.6 | 4.8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용역수행 성과 | [2] | <p>- 업체가 해당 발주청에서 수행한 용역평가 결과에 따라 평가하며, 해당 발주청의 상위기관에서 수행한 용역평가 결과를 활용할 수 있음. * 용역평가는 건진법 제50조에 따른 평가를 원칙으로 하되, 용역 특성을 반영하여 발주청에서 별도로 정한 평가의 결과를 활용할 수 있음(필요시 입찰공고에 명시)</p>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text-align: center;"> <thead> <tr> <th>용역평가 결과</th> <th>95점 이상</th> <th>95점 미만 92점 이상</th> <th>92점 미만 89점 이상</th> <th>89점 미만 86점 이상</th> <th>85점 미만</th> </tr> </thead> <tbody> <tr> <td>점수</td> <td>2</td> <td>1.8</td> <td>1.6</td> <td>1.4</td> <td>1.2</td> </tr> </tbody> </table> <p>- 해당 발주청에서 발주한 용역 성과가 없는 업체에 대해서는 용역수행평가지 "1.8" 또는 "1.6"의 점수를 부여할 수 있으며, 발주청에서 집행정확공고 또는 입찰공고시 기준을 제시하여야 한다.</p> | 용역평가 결과 | 95점 이상 | 95점 미만 92점 이상 | 92점 미만 89점 이상 | 89점 미만 86점 이상 | 85점 미만 | 점수 | 2 | 1.8 | 1.6 | 1.4 | 1.2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용역평가 결과 | 95점 이상 | 95점 미만 92점 이상 | 92점 미만 89점 이상 | 89점 미만 86점 이상 | 85점 미만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점수 | 2 | 1.8 | 1.6 | 1.4 | 1.2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다. 신 용 도 | (1) 영업 정지 (업무 정지) | [7] | <p>○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대표자 포함)가 건설사업관리(건축법·주택법상 감리포함) 업무와 관련하여 최근 1년간 관계법령에 따라 영업정지(업무정지, 과징금 부과처분 포함)를 받은 기간을 합산하여 합산기간 1개월마다 0.2점씩 감점(1개월 미만인 경우 1개월로 계산)</p> <p>○ 참여기술인이 건설사업관리(건축법·주택법상 감리포함) 업무와 관련하여 최근 1년간 관계법령에 따라 기술자격정지 또는 업무정지를 받은 기간을 합산하여 합산기간 1개월마다 0.2점씩 감점(1개월 미만인 경우 1개월로 계산)</p>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벌점 | [2] | <p>○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 및 참여기술인이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87조에 따른 벌점을 받은 경우 같은 법 시행령 별표8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감점</p>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3)보안 위규벌점 | [3] | <p>○ 「군사기밀보호법 시행령」 제5조(군사기밀의 보호조치 등)를 위반한 경우 0점으로 처리함.</p> <p>○ 건설엔지니어링 수행간 군사보안 위배를 한 경우 각 등급에 따라 감점</p>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text-align: center;"> <thead> <tr> <th>평가요소</th> <th>등 급</th> <th>평 점</th> </tr> </thead> <tbody> <tr> <td rowspan="4">군사보안 위배관련 감점 (세부내용 첨부 6 참조)</td> <td>A. 심 각</td> <td>-1.0 감점</td> </tr> <tr> <td>B. 중 대</td> <td>-0.8 감점</td> </tr> <tr> <td>C. 경 미</td> <td>-0.6 감점</td> </tr> <tr> <td>D. 미 흡</td> <td>-0.4 감점</td> </tr> </tbody> </table> <p>○ 군사보안 위배관련 감점은 최근 3년간 감점을 누계하며 배점이상 감점 처리된 경우 0점으로 처리함.</p> | 평가요소 | 등 급 | 평 점 | 군사보안 위배관련 감점 (세부내용 첨부 6 참조) | A. 심 각 | -1.0 감점 | B. 중 대 | -0.8 감점 | C. 경 미 | -0.6 감점 | D. 미 흡 | -0.4 감점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평가요소 | 등 급 | 평 점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군사보안 위배관련 감점 (세부내용 첨부 6 참조) | A. 심 각 | -1.0 감점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B. 중 대 | -0.8 감점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C. 경 미 | -0.6 감점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D. 미 흡 | -0.4 감점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평가 항목 | 세부평가 항목 | 배점 | 세 부 평 가 방 법 | | | | | | | | | | | | | | | | | | | | |
|-------|-------------|-------------|---|-----|--------|-------------|---------|-------|---------|-------|------------|------|-------|---------|-------------|-------------|--------|-----|----|----|----|----|---|
| | (4)재정 상태건설도 | [3]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재정상태 건실도는 신용평가등급을 기준으로 평가하며, 참여업체가 "신용평가등급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0점으로 처리함. <p><신용평가등급 기준></p> <table border="1"> <tr> <td>회사채</td> <td>BBB-이상</td> <td>BBB-미만 B-이상</td> <td>CCC+ 이하</td> <td>미제출</td> </tr> <tr> <td>기업어음</td> <td>A3-이상</td> <td>A3-미만 B-이상</td> <td>C이하</td> <td>미제출</td> </tr> <tr> <td>기업신용</td> <td>BBB-이상</td> <td>BBB-미만 B-이상</td> <td>CCC+이하</td> <td>미제출</td> </tr> <tr> <td>점수</td> <td>30</td> <td>28</td> <td>21</td> <td>0</td> </tr> </table> <p>*추정가격 10억원 미만의 건설사업관리의 경우 한단계식 하향평가 실시</p> | 회사채 | BBB-이상 | BBB-미만 B-이상 | CCC+ 이하 | 미제출 | 기업어음 | A3-이상 | A3-미만 B-이상 | C이하 | 미제출 | 기업신용 | BBB-이상 | BBB-미만 B-이상 | CCC+이하 | 미제출 | 점수 | 30 | 28 | 21 | 0 |
| 회사채 | BBB-이상 | BBB-미만 B-이상 | CCC+ 이하 | 미제출 | | | | | | | | | | | | | | | | | | | |
| 기업어음 | A3-이상 | A3-미만 B-이상 | C이하 | 미제출 | | | | | | | | | | | | | | | | | | | |
| 기업신용 | BBB-이상 | BBB-미만 B-이상 | CCC+이하 | 미제출 | | | | | | | | | | | | | | | | | | | |
| 점수 | 30 | 28 | 21 | 0 | | | | | | | | | | | | | | | | | | | |
| 라. | (1) 개발·활용실적 | 10 [3] | <p>1) 「건설기술진흥법」 제14조에 따라 지정된 건설신기술은 건설사업관리자가 보유하고 있거나 실제 활용한 실적(건수, 금액)에 따라 평가하고, 건설기술에 관한 특허는 실제 활용한 실적(건수, 금액) 및 출원일로부터의 경과기간에 따라 평가</p> <p>2) 건설신기술은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가 건설공사의 설계용역을 수행하면서 보호기간 내에 설계에 적용하여 보호기간 만료일 이후 3년 이내에 공사에 실제 활용된 실적과 건설사업관리(건축법·주택법상 감리포함) 용역을 수행하면서 설계에 적용되어 있거나, 직접 제안 또는 설계변경으로 보호기간 내에 적용한 건설신기술을 보호기간 만료일 이후 3년 이내에 공사에 실제 활용한 실적에 대하여 인정</p> <p>3) 건설기술에 관한 특허는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가 건설공사의 설계용역을 수행하면서 존속기간 내에 설계에 적용하여 공사에 실제 활용된 실적과 건설사업관리(건축법·주택법상 감리포함) 용역을 수행하면서 설계에 적용되어 있거나, 직접 제안 또는 설계변경으로 존속기간 내에 적용한 특허를 공사에 실제 활용한 실적에 대하여 인정하며, 최대 1점까지만 인정</p> <p>4) 평가점수는 아래의 방법에 따라 산정한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개발실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건설신기술 : 기준점수 × 1/n (n=기술개발자수) ○ 활용실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건설신기술 : 기준점수 × 사용실적에 따른 가중치 - 건설기술에 관한 특허 : 기준점수 × 사용실적에 따른 가중치 × 경과기간에 따른 가중치 <p>- 기준점수</p> <table border="1"> <thead> <tr> <th colspan="2">구 분</th> <th>기준점수</th> </tr> </thead> <tbody> <tr> <td rowspan="2">개발실적</td> <td>건설신기술</td> <td>2.0점/건당</td> </tr> <tr> <td>활용실적</td> <td>0.5점/건당</td> </tr> <tr> <td rowspan="2">활용실적</td> <td>건설신기술</td> <td>0.5점/건당</td> </tr> <tr> <td>건설기술에 관한 특허</td> <td>0.3점/건당</td> </tr> </tbody> </table> | 구 분 | | 기준점수 | 개발실적 | 건설신기술 | 2.0점/건당 | 활용실적 | 0.5점/건당 | 활용실적 | 건설신기술 | 0.5점/건당 | 건설기술에 관한 특허 | 0.3점/건당 | | | | | | | |
| 구 분 | | 기준점수 | | | | | | | | | | | | | | | | | | | | | |
| 개발실적 | 건설신기술 | 2.0점/건당 | | | | | | | | | | | | | | | | | | | | | |
| | 활용실적 | 0.5점/건당 | | | | | | | | | | | | | | | | | | | | | |
| 활용실적 | 건설신기술 | 0.5점/건당 | | | | | | | | | | | | | | | | | | | | | |
| | 건설기술에 관한 특허 | 0.3점/건당 | | | | | | | | | | | | | | | | | | | | | |

| 평가 항목 | 세부평가 항목 | 배점 | 세 부 평 가 방 법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용실적(건수, 금액)에 따른 가중치(건설신기술 및 특허에 적용) <table border="1"> <thead> <tr> <th rowspan="2">구 분</th> <th colspan="5">가 중 치</th> </tr> <tr> <th>1.0</th> <th>0.9</th> <th>0.8</th> <th>0.7</th> <th>0.6</th> </tr> </thead> <tbody> <tr> <td>실적건수(건)</td> <td>5이상</td> <td>5미만 4이상</td> <td>4미만 3이상</td> <td>3미만 2이상</td> <td>2미만 1이상</td> </tr> <tr> <td>실적금액(억원)</td> <td>20이상</td> <td>20미만 18이상</td> <td>18미만 16이상</td> <td>16미만 14이상</td> <td>14미만 12이상</td> </tr> </tbody> </table>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동이행방식으로 수행한 용역의 사용실적은 참여지분율을 곱하여 산정하며, 실적건수와 금액 중에서 한 가지 이상을 충족시켜야 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출원일로부터 경과기간에 따른 가중치(특허에만 적용) <table border="1"> <thead> <tr> <th>구 분</th> <th>5년미만</th> <th>5년이상 10년미만</th> <th>10년이상 20년미만</th> </tr> </thead> <tbody> <tr> <td>인정률</td> <td>100%</td> <td>80%</td> <td>60%</td> </tr> </tbody> </table> <p>5) 동일한 내용으로 건설신기술, 특허를 각각 받은 경우의 활용실적은 점수가 높은 1건만 인정하며, 여러 건설신기술, 특허를 사용한 경우에는 건설신기술 또는 특허별로 4)에 따라 산정한 점수를 합산한다.</p> | 구 분 | 가 중 치 | | | | | 1.0 | 0.9 | 0.8 | 0.7 | 0.6 | 실적건수(건) | 5이상 | 5미만 4이상 | 4미만 3이상 | 3미만 2이상 | 2미만 1이상 | 실적금액(억원) | 20이상 | 20미만 18이상 | 18미만 16이상 | 16미만 14이상 | 14미만 12이상 | 구 분 | 5년미만 | 5년이상 10년미만 | 10년이상 20년미만 | 인정률 | 100% | 80% | 60% |
| 구 분 | 가 중 치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0 | 0.9 | 0.8 | 0.7 | 0.6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실적건수(건) | 5이상 | 5미만 4이상 | 4미만 3이상 | 3미만 2이상 | 2미만 1이상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실적금액(억원) | 20이상 | 20미만 18이상 | 18미만 16이상 | 16미만 14이상 | 14미만 12이상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구 분 | 5년미만 | 5년이상 10년미만 | 10년이상 20년미만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인정률 | 100% | 80% | 60%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 투자 실적 | [7]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최근 3년간 기술개발투자실적의 건설부문 총매출액에 대한 비율(건설기술개발투자액/건설부문 총매출액)에 따라 계산 - 다만, 회사 설립년수 부족으로 3년간 자료를 제출치 못하는 경우에는 제출된 년수를 기준으로 건설부문 총매출액 합계에 대한 비율로 평가 <table border="1"> <thead> <tr> <th>구분</th> <th>1.5%이상</th> <th>1.50%미만 1.25%이상</th> <th>1.25%미만 1.00%이상</th> <th>1.00%미만 0.75%이상</th> <th>0.75%미만 0.50%이상</th> <th>0.5%미만</th> </tr> </thead> <tbody> <tr> <td>점수</td> <td>7</td> <td>6.8</td> <td>6.6</td> <td>6.4</td> <td>6.2</td> <td>6.0</td> </tr> </tbody> </table>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건설기술연구개발사업 참여실적에 적용된 실적금액을 투자실적에 포함 | 구분 | 1.5%이상 | 1.50%미만 1.25%이상 | 1.25%미만 1.00%이상 | 1.00%미만 0.75%이상 | 0.75%미만 0.50%이상 | 0.5%미만 | 점수 | 7 | 6.8 | 6.6 | 6.4 | 6.2 | 6.0 | | | | | | | | | | | | | | | | | |
| 구분 | 1.5%이상 | 1.50%미만 1.25%이상 | 1.25%미만 1.00%이상 | 1.00%미만 0.75%이상 | 0.75%미만 0.50%이상 | 0.5%미만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점수 | 7 | 6.8 | 6.6 | 6.4 | 6.2 | 6.0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마. | (1) 교체빈도 | 5 [3]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공단계의 건설사업관리를 포함하지 않는 경우 교체빈도 평가점수는 배점한도인 5점을 적용한다. ○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 소속 전체 건설기술인 중 최근 1년간 건설사업관리(건축법·주택법상 감리포함) 용역의 시공단계에 배치된 기술인수에 대한 교체건수합계의 비율(교체빈도율) ※ 기술지원기술인의 경우 교체 5건마다 1건으로 계산 <table border="1"> <thead> <tr> <th>교체빈도율(%)</th> <th>5%미만</th> <th>5%이상 10%미만</th> <th>10%이상 15%미만</th> <th>15%이상 20%미만</th> <th>20%이상</th> </tr> </thead> <tbody> <tr> <td>점 수</td> <td>3</td> <td>2.5</td> <td>2</td> <td>1</td> <td>0</td> </tr> </tbody> </table> | 교체빈도율(%) | 5%미만 | 5%이상 10%미만 | 10%이상 15%미만 | 15%이상 20%미만 | 20%이상 | 점 수 | 3 | 2.5 | 2 | 1 | 0 | | | | | | | | | | | | | | | | | | | |
| 교체빈도율(%) | 5%미만 | 5%이상 10%미만 | 10%이상 15%미만 | 15%이상 20%미만 | 20%이상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점 수 | 3 | 2.5 | 2 | 1 | 0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 참여기술인 | [2]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상주기술인으로 최근 1년간 건설사업관리(건축법·주택법상 감리포함) 용역의 시공단계에 배치된 참여기술인의 교체 1회당 0.25점씩 감점 (기술지원기술인의 경우 1회당 0.1점씩 감점)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가 점 | 공사비절감 기여 기술인 | 0.2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3년내 참여기술인이 발주청(인.허가기관 제외)이 시행하는 건설공사에 대해 제안하여 발주청으로부터 공사비 절감을 확인(발주청 심의의결서 사본첨부) 받은 참여기술인 - 상주 참여기술인으로 참여하는 경우 : 0.1점/1건 - 기술지원기술인으로 참여하는 경우 0.1점/1건 적용 가점부여 점수 = 0.1점(0.1점) × 1건 × 가중치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평가 항목 | 세부평가 항목 | 배점 | 세 부 평 가 방 법 | | | | | | | | | | | | |
|-------|-------------|--------------------|---|-----|-----|-----|-----|------|---------|-------------------|------------------|------|---------|--------------------|--------------------|
| | | | <p><절감실적에 따른 가중치></p> <table border="1"> <thead> <tr> <th>가중치</th> <th>1.0</th> <th>0.8</th> <th>0.5</th> </tr> </thead> <tbody> <tr> <td>절감금액</td> <td>10억원 이상</td> <td>10억원 미만 5억원 이상</td> <td>5억원 미만 1억원 이상</td> </tr> <tr> <td>절감비율</td> <td>1.0% 이상</td> <td>1.0% 미만 0.5% 이상</td> <td>0.5% 미만 0.1% 이상</td> </tr> </tbody> </table> <p>* 1인이 2건 이상 공사비 절감실적이 있을 경우 절감금액은 합산하고, 절감비율은 총공사비를 합한 금액에 대한 절감금액 합계의 비율에 따라 적용 * 해당 건설사업관리용역과 주된 공종이 같거나 유사한 경우 적용 * 상주기술인(평가대상) 및 기술지원기술인(평가대상) 각각 1인에 한하여 적용 * 절감금액 = 공사비절감금액 × 절감기여율 * 절감비율 = (공사비절감금액 × 절감기여율) / 총공사비 * 위의 절감금액 또는 절감비율 중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인정</p> | 가중치 | 1.0 | 0.8 | 0.5 | 절감금액 | 10억원 이상 | 10억원 미만 5억원 이상 | 5억원 미만 1억원 이상 | 절감비율 | 1.0% 이상 | 1.0% 미만 0.5% 이상 | 0.5% 미만 0.1% 이상 |
| 가중치 | 1.0 | 0.8 | 0.5 | | | | | | | | | | | | |
| 절감금액 | 10억원 이상 | 10억원 미만 5억원 이상 | 5억원 미만 1억원 이상 | | | | | | | | | | | | |
| 절감비율 | 1.0% 이상 | 1.0% 미만 0.5% 이상 | 0.5% 미만 0.1% 이상 | | | | | | | | | | | | |
| | 건설기술인 신규 고용 | 0.3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건설기술인 신규고용율에 따라 가점 부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 이상 : 0.1점 . 2% 이상 : 0.2점 . 3% 이상 : 0.3점 - 건설기술인 신규 고용율 = 최근 1년간 건설기술인 신규 고용인원(입찰 공고일 전월 기준) / 직전년도 동기간 평균 고용인원 - 신규 건설기술인은 입찰공고일 현재 해당업체 재직 중인 자로 건설기술인 경력관리 수탁기관의 경력증명서에 최초로 입사 등록된 자(이전 건설분야 근무경력이 없는 자)에 한함 - 직전년도 동기간 평균 고용인원은 건설기술인 경력관리 수탁기관에 신고한 자료서 해당업체의 기술인 재직인원(월말 기준)을 월단위로 평균하여 산정 ○ 건설기술인 경력관리 수탁기관에서 확인한 후 발급한 자료로 평가 ○ 공동이행방식으로 용역을 수행하는 경우에는 공동수급체의 구성원별 평가점수에 용역참여지분율을 곱하여 산정한 후 이를 합산 | | | | | | | | | | | | |
| 감점 | 부패행위 관련자 | 5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입찰 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2년 내 해당 발주청에서 부패행위로 형사처벌 또는 건설기술진흥법령에 의한 행정처분을 받은 건설사업관리기술인과 부패행위 당시 그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이 소속된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는 감점(건설사업관리기술인 및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의 감점처분 대상일은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형사처벌일 또는 행정처분일이며, 동일 건으로 형사처벌과 행정처분을 받았을 경우 선행된 처벌(분)일을 적용함) ○ 감점적용 점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부패행위로 인한 피해금액이 계약금액(총공사 부기금액)의 3%를 초과하거나 10억원 초과 : 5점 감점 - 부패행위로 인한 피해금액이 계약금액(총공사 부기금액)의 1%를 초과하거나 3% 이하 또는 3억원을 초과하거나 10억원 이하 : 3점 감점 - 부패행위로 인한 피해금액이 계약금액(총공사 부기금액)의 1% 이하이거나 3억원 이하 : 1점 감점 | | | | | | | | | | | | |

| 평가 항목 | 세부평가 항목 | 배점 | 세 부 평 가 방 법 |
|-------|---------|----|--|
| | | | <p><부패행위></p> <p>건설사업관리기술인이 건설사업관리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그 지위 또는 권한을 남용하거나 법령을 위반하여,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도모하는 행위를 하거나 발주청에 재산상 손해를 가하는 행위</p> <p>※ 위 내용의 평가는 처분기관(수요기관 포함)에서 통보한 자료에 따라 평가함</p> |

건설사업관리용역 수행실적에 대한 평가방법 및 세부기준

I. 일반사항

1. 참여기술인의 경력 및 실적은 건설기술인 경력관리 수탁기관의 확인을 받아야 하며, 유사용역수행실적, 신용도, 기술개발 및 투자실적, 교체빈도 등은 건설엔지니어링 실적관리 수탁기관 등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고시한 위탁업무 수행기관, 해당 현황 관리기관 또는 해당 용역 발주청의 확인을 받거나, 건설엔지니어링 실적관리 수탁기관이 운영하는 실적관리시스템을 통해 확인 한다.
2. 수행실적평가에서 선정된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와 관련하여 평가점수에 영향을 미치는 상이한 부분이 발견되어 해당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를 입찰참가자 선정에서 제외하였을 경우에는 그 사유를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잔여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만을 입찰에 참여할 자로 선정한다.
3. 참여기술인의 업무중복도를 확인하여 다음에 해당되는 경우 해당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를 평가대상에서 실격 처리한다.

가.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 및 시공단계에 배치되는 분야별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이 다른 건설사업관리용역(「주택법」 및 「건축법」에 따른 감리용역을 포함한다. 이하 나목 및 다목에서 같다) 및 설계용역에 중복 참여하는 경우

나. 기술지원기술인이 다른 건설사업관리용역에 상주기술인으로 중복 배치되어 있거나, 다른 건설사업관리용역의 참여기술인 및 설계용역의 사업책임기술인 또는 분야별 책임기술인으로 총 10개 이상 중복 참여하는 경우

다. 시공 전 단계에 배치되는 분야별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이 다른 건설사업관리용역에 상주기술인으로 중복 배치되어 있거나, 주된 공종분야로서 참여기간이 가장 많은 1인이 다른 건설사업관리용역의 참여기술인 및 설계용역의 사업책임기술인 또는 분야별 책임기술인으로 중복 참여하는 경우(그 밖의 분야별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총 3개 이상 중복 참여하는 경우 실격처리)

※ 다른 용역의 참여기간이 해당 용역의 배치기간과 중복되지 않는 경우 제외 (다른 용역의 발주청장으로부터 해당 용역의 평가기준일 이전에 확정된 배치계획 등에 따라 확인받은 경우 또는 건설엔지니어링 실적관리 수탁기관에서 발급한 업무중복 현황 확인서에 따라 확인받은 경우에만 인정하며, 발주청은 공사 및 건설사업관리용역 발주 여건을 고려하여 중복배치 제외기간을 정할 수 있다)

※ 건설사업관리용역(「주택법」 및 「건축법」에 따른 감리용역을 포함)의 업무중복도평가는 「건설기술진흥법」 제82조제2항에 따라 고시한 국토교통부장관의 위탁업무수행기관의 확인서, 시행령 제45조에 따른 건설엔지니어링실적관리시스템자료로 평가함

※ 설계용역의 업무중복도평가는 「건설기술진흥법」 제82조제2항에 따라 고시한 국토교통부장관의 위탁업무수행기관의 확인서, 시행령 제45조에 따른 건설엔지니어링실적관리시스템자료로 평가함

4.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제35조제7항에 따라 3개월 이상 요양이 필요한 질병·부상으로 인하여 교체된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철수일로부터 3개월 이내의 기간 동안 평가대상 용역에 참여할 수 없으며, 그 사실이 확인된 경우에는 평가대상에서 실격 처리한다.
5. 입찰 참여사는 사업수행능력평가에 필요한 증빙서류에 대한 확인각서(첨부 3)를 제출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원본대조필 및 간인처리를 생략할 수 있다.

II. 항목별 세부평가방법

1. 평가방법은 절대평가를 원칙으로 하며, 점수가 합리적 통계 등에 의하여 산정하기 곤란하거나 평가의 변별력이 필요한 경우에는 상대평가(별지 1)에 의한다.
2. 참여기술인에 대한 상대평가지 등급별 배분은 수(10%), 우(20%), 미(40%), 양(20%), 가(10%)로 하고, 점수는 수(100%), 우(80%), 미(60%), 양(40%), 가(20%)로 배분을 원칙으로 하되([별지 1] 예시 참조), 필요한 경우 발주청에서 평가등급 및 등급별 배분, 점수 기준을 조정할 수 있다. 평가 결과 동점자 발생시 상위 등급을 부여할 수 있으며, 해당 발주청에서 발주한 용역 성과가 없는 업체에 대해서는 용역수행평가 시 중간값 “미”의 점수를 부여할 수 있다.

3. 참여기술인의 평가는 다음 각 목과 같이 적용한다.

가. 평가대상 참여기술인

- 1) 시공단계 참여기술인 중 안전관리담당자로 지정할 자는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별표 3 제2호나목4)에 따른 건설기술인 교육훈련을 받은 자가 반드시 평가에 참여하여야 하며, 교육훈련을 받은 실적이 없거나 정해진 기한이 경과되었음에도 교육훈련을 받지 않은 자가 참여하는 경우에는 실격 처리한다.
- 2)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 및 분야별 책임자급 건설사업관리기술인 전원을 평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나, 사업의 특수성을 감안하여 평가대상 기술인수를 조정하는 경우 공고문에 별도로 명시한다.

3) 기술지원기술인은 투입인원이 3인 이내일 경우 전원 평가하고, 3인 초과 시 초과인원에 대하여는 공고문에 별도로 명시한다.

나. 참여기술인의 경력은 자격취득시기, 자격보유 여부에 관계없이 해당 분야의 설계·시공·감독 또는 건설사업관리 수행 등의 경력 및 실적을 평가한다.

다. 해당분야 경력평가

1) 해당분야 경력이라 함은 해당 건설사업관리용역과 주된 공종이 같거나 유사한 공종에서의 설계, 시공, 품질관리, 안전관리, 안전진단 및 점검, 유지보수 및 보강, 건설사업관리, 감리, 관리감독, 감독, 공사감독, 용역감독, 일반감독, 사업관리, 기술조사, 행정지원 등을 수행한 실적을 말한다.

가) 주된 공종이 같거나 유사한 공종은 다음 공종 중 지정된 공종을 말하며, 참여기술인의 평가 분야별로 다르게 지정할 수 있다.

-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에 따른 국방·군사시설의 시설유형에 해당하는 공종
- 「건설기술인 등급 인정 및 교육·훈련 등에 관한 기준 [별표 3] 건설기술인의 등급 산정 및 경력인정방법」에 따른 건설공사의 종류 또는 건축물의 용도분류에 해당하는 공종

나) 건설사업관리용역을 발주하는 발주청의 소관부서는 사업 발주전 발주청의 기술(의사결정)자문위원회 심의를 통하여 주된 공종이 같거나 유사한 공종을 지정하고 입찰공고에 포함하여 공고한다.

다) 주된 공종이 같거나 유사한 공종의 지정을 위한 발주청의 기술(의사결정)자문위원회 심의시 참여기술인의 평가 분야별(토목·건축·기계·전기 등)로 다음 사항을 고려하여 심의한다.

- 건설사업관리용역의 대상이 되는 시설사업의 평가 분야별 특성
- 해당분야 경력에 대한 과도한 제한 여부
- 국방·군사시설의 전문성 확보를 위한 인정율의 적용을 고려한 해당분야 경력 중복 제한의 적정성

2) 해당분야 이외의 건설공사업무 실적은 해당분야의 60%를 적용한다.

3) 해당분야 경력 평가시 국방·군사시설의 전문성 확보를 위하여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수행경력에 따라 적용대상에 한하여 아래와 같이 인정율을 적용하며, 국방·군사시설의 시설유형에 따라 인정율 적용 대상에 해당하는 분야별 책임/기술지원기술인을 입찰공고시 지정하여 공고하고 차등하여 평가한다.

- 인정율 적용대상

| 구분 | 비밀/방위력개선행업시설 | 부대개편/개선사업시설 | 대미사업시설 | 작전/훈련/교육/교장/장시설 | 방호시설 | 병영시설 | 행정시설 | 정비시설 | 위생/급식시설 | 주거시설 | 의료/교정시설 | 복지시설 | 기타시설 |
|------|-------------------------------------|-------------|--------|-----------------|------|---|------|------|---------|------|---------|------|------|
| 적용대상 | 책임기술인 1인 + 분야별기술인 1~2인 + 기술지원기술인 2인 | | | | | 책임기술인 1인 | | | | | - | | |
| | | | | | | 단, 작전시설 등과의 통합 신축 등 현장 여건에 따라 군 특수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발주청의 심의를 거쳐 인정율 적용 대상 기술인을 추가할 수 있다. | | | | | | | |

- 점수계산 : 해당분야 경력평가점수 × 인정율

- 해당분야 경력 중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수행경력 중 설계, 시공, 품질관리, 안전관리, 안전진단 및 점검, 유지보수 및 보강, 건설사업관리, 감리, 관리감독, 감독, 공사감독, 용역감독, 일반감독, 사업관리, 기술조사, 행정지원 등의 수행경력

| 인정율 | 100% | 95% | 90% | 85% | 80% |
|---------|-------|-------|-------|-------|-------|
| 책임/기술지원 | 9년 이상 | 7년 이상 | 5년 이상 | 3년 이상 | 3년 미만 |
| 분야별기술인 | 6년 이상 | 5년 이상 | 4년 이상 | 3년 이상 | 3년 미만 |

라. 직무분야 실적평가

1) 직무분야 실적이란 참여기술인의 직무분야(「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4조 별표1 제3호 건설기술인 직무분야 및 전문분야 중 “직무분야”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해당하는 설계, 시공, 품질관리, 안전관리, 안전진단 및 점검, 유지보수 및 보강, 건설사업관리, 감리, 관리감독, 감독, 공사감독, 용역감독, 일반감독, 사업관리, 기술조사, 행정지원 등을 수행한 경력을 말한다.

※ 직무분야 : 토목, 건축, 도시·교통, 기계, 환경 등

2) 대미사업 해외경력 : COE, FED, 해외공사 및 대미공사(설계, 시공, 품질관리, 안전관리, 안전진단 및 점검, 유지보수 및 보강, 건설사업관리, 감리, 관리감독, 감독, 공사감독, 용역감독, 일반감독, 사업관리, 기술조사, 행정지원 등) 경력을 인정

마.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제35조제1항 각 호에 따른 “건설사업관리 경력”으로 인정되는 경력은 다음과 같다.

- 1) 「건설기술 진흥법」 제39조에 따른 건설사업관리
- 2) 「주택법」 제24조에 따른 주택건설공사의 감리
- 3) 「건축법」 제25조에 따른 건축물의 공사감리
- 4) 「건설기술 진흥법」 제2조제6호에 따른 발주청의 감독, 공사감독, 관리감독 및 사업관리
- 5) 「해외건설 촉진법」 제2조에 따른 해외건설 엔지니어링활동 중 외국정부 및 공공기관에서 발주한 건설사업관리 및 감리

바. 참여기술인의 기술자격 평가를 위한 자격종목 등 기술자격자 인정 세부기준은 입찰공고 시 별도 제시한다.

사. 참여기술인 경력평가 세부기준

- 1) 영문 또는 약자로 표기한 공사의 실적은 주 공종을 판별할 수 있는 증빙서류가 있을 경우에만 평가대상에 포함된다.
예시) aaa project, 000 기지(이전)시설공사 등
- 2) 경력평가의 경우 직무분야(건축, 토목 등)가 명기되고, 공사종류 및 업무분야 주요경력사항이 명확하게 표시되어야 평가대상에 포함된다.
- 3) 공장건설업무는 건축 및 토목기술인인 경우 경력으로 인정하며, 전기 및 기계기술인은 건축물공사로 명확히 표시되지 않은 경우 공장시설물에 참여한 것으로 인정하여 평가대상에서 제외한다.
- 4) 담당업무가 2개 이상 명시된 경우 평가대상에서 제외한다.
예시) ①계획, 조사설계, 견적 ②견적, 현장대리인 ③감리 및 현장대리인 ④설계, 감독 ⑤설계, 견적 ⑥시공, 공무 ⑦ 설계, 감리
- 5) 사업명이 다수로 표시된 경우 평가대상에서 제외한다.
- 6) 참여기술인이 발주청·감독기관 또는 건설관련업체의 임·직원으로서 직무분야의 건설공사·건설엔지니어링사업을 감독한 경우에는 이를 직무분야의 경력으로 인정한다.
- 7) 협회가 발행한 경력증명의 실적 중 공사명, 수행기간, 직무분야, 공사종류, 담당업무, **발주청이** 명확히 기재된 실적의 수행기간만 평가한다.
예시) 김사장, 이사장주택의 7건 : 기간 '05.2.1-'05.12.31 등은 평가제외

아. 입찰공고일 이전에 해당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 소속으로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제21조에 따라 건설엔지니어링업 등록 등 업무 수탁기관에 등록되지 않은 건설기술인은 평가대상에서 제외한다.

자. 수요부서의 요청이 있는 경우로서 해당공사에 적용되는 기술 또는 공법의 신규성, 친환경건설기법의 요구정도 및 공사수행의 난이도 등을 감안하여 참여기술인 중 해당공사(터널, 특수교량, 복합역사 등)와 동등이상의 경력을 갖춘 자 또는 전문분야의 자격소지자를 참여시킬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참여기술인의 배점(60점) 범위 안에서 0.2점을 부여할 수 있다. 다만, PQ평가 제출 업체 중 본문 내용에 따른 유자격자가 5개사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적용한다.

- 1) 경력 또는 전문분야 자격소지자 중 1개 적용 (중복적용 불가)
- 2) 참여기술인(평가대상) 중 1인에 한하여 적용

2. 업체 유사용역수행실적 평가방법

가. 유사용역수행실적이란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3년간 해당 건설사업관리용역의 건설공사와 같거나 유사한 공종의 건설공사에 대한 용역사업을 준공하였거나 수행 중인 실적으로 「건설기술 진흥법」 제2조 제6호의 발주기관이 발주한 건설사업관리용역 및 설계용역(건축사법에 따른 설계포함)과 「주택법」·「건축법」에 따라 건설기술엔지니어링사업자가 수행하는 감리용역 실적에 한하여 인정한다.

예시) 최근 3년간 실적계산

- 준공된 경우

A공사의 건설사업관리용역 착공일 2009. 3. 1, 준공일 2013.12.31일 경우 입찰공고일이 2014. 5. 1이면, 적용 건설사업관리기간은 2011. 5. 2부터 2013.12.31까지 금액계상[2011. 5. 2.부터 2013.12.31까지의 해당되는 건설사업관리비]

- 수행 중인 경우

A공사의 건설사업관리용역 착공일 2012. 3. 2, 준공예정일 2014.12.31일 경우 입찰공고일이 2014. 5. 1이면, 적용기간은 2012. 3. 2부터 2014. 5. 1까지 금액계상[2012. 3. 2부터 2014. 5. 1까지의 선금급이나 기성금 수령에 관계없이 실제 적용기간 동안의 최종확인된 건설사업관리비]

나. 건설기술인경력관리수탁기관의 실적증명을 첨부하여야 하며 동 기관에 등록되지 아니한 실적은 인정하지 않는다.

다. 각 경력관리수탁기관에 등록하여 수행중인 용역의 실적은 각 기관에 신고하여 관리되고 있는 기성실적, 또는 발주청의 확인을 받아 최종확인된 실적만 인정한다.

라. 공고 시 실적 평가기준을 별도 제시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마. 외국 정부 및 공공기관에서 발주한 용역을 수행한 경우에는 해당분야의 유사용역실적으로 인정한다. 단, 실적금액은 기성 및 준공일 기준으로 한국화폐단위로 환산하여 산정한 금액으로 한다.

바. 유사용역수행실적 이외의 해당 직무분야에 대한 용역수행실적은 해당 용역의 60%를 적용한다.

사. 용역평가결과는 국토안전관리원에 등재된 입찰공고일부터 최근 3년 이내의 용역 평가결과를 활용하여 평가하며, 공동수급체의 경우 참여사별 지분율을 곱해 합산한 점수를 기입한다.(단, 발주청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입찰공고시 별도의 평가기준을 명시하여 평가할 수 있다.)

3. 재정상태 건실도의 평가는 신용평가등급(첨부 2)으로 평가하며, 다음 각목에 따라 적용한다.

가. 신용평가등급은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을 기준으로 하되, 기업어음 및 기업신용에 관한 신용등급도 활용할 수 있다.

나.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1호의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정보업자 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35조의3제1항의 신용평가업자가 입찰공고일 이전 가장 최근에 평가하여 사업수행능력평가(수행실적평가)서 제출마감일까지 조달청에 통보(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등록)한 유효기간 내에 있는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기업신용평가등급』 중에서 가장최근의 등급으로 심사하며, 같은 종류의 신용평가 등급인 경우에도 가장 최근의 등급에 의한다. 다만,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이 같은 날 다수가 있어 그 결과가 상이할 경우 가장 낮은 등급으로 평가한다.

다. 합병한 업체에 대하여는 합병 후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으로 심사하여야 하며, 합병 후의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합병 대상업체 중 가장 낮은 신용평가등급을 받은 업체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하여야 한다.

4. 기술개발 및 투자실적은 다음 각 목과 같이 적용한다.

가. 개발·활용실적

1) 건설신기술 개발실적은 「건설기술진흥법」 제14조에 따라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대표자 포함, 소속직원 제외) 명의로 지정된 것으로 보호기간 내에 있는 경우에 한정하여 인정한다.

2) 활용실적은 해당 용역의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보호기간이 만료된 이후 3년이 경과되지 않은 건설신기술과 존속기간이 만료되지 않은 건설기술에 관한 특허에 한정하여 인정하며, 전체 공사 중 해당 기술의 공사가 완료된 것으로 기성을 인정받은 경우 해당 건설신기술 및 특허를 활용한 것으로 본다.

3) 건설신기술의 활용실적은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제10조제1항에 따라 제출된 활용실적에 대해 같은 법 시행령 제117조제1항에 의해 지정·고시한 기관의 신기술 활용실적 증명서를 제출한 경우에 한정하여 적용한다.

4) 특허의 활용실적은 「발명진흥법」 제52조에서 정한 전문기관의 특허 활용실적 증명서를 제출한 경우에 한정하여 적용한다.

나. 투자실적 평가

1) 건설기술개발투자액이란 재무제표상의 기술개발을 위한 연구개발비, 국·내외 교육훈련비, 그 밖의 기술개발에 투자한 비용을 말한다.

2) 타인이 보유한 특허 또는 실용신안에 대한 사용권을 양수 또는 대여받은 경우에는 이에 대한 비용을 기술개발투자실적으로 인정한다.

3) 건설기술연구개발사업투자비는 「건설기술진흥법」 제7조 및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제98조, 「해양수산발전 기본법」 제33조에 따른 연구개발사업에 최근 3년 내에 투자한 비용을 말한다.

4) 해당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인 경우 공인회계사 또는 세무사가 확인·분석·검토하여 증명한 투자실적을 제출한다.

5. 교체빈도의 평가는 다음 각 목과 같이 적용한다.

가.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에 대해서는 최근 1년간 시공단계의 건설사업관리기술인(「주택법」 및 「건축법」에 따른 감리원 포함)으로 배치된 소속 건설기술인의 교체건수를 합산하여 시공단계의 건설사업관리기술인(「주택법」 및 「건축법」에 따른 감리원 포함)으로 배치된 전체 소속 건설기술인 수의 합계로 나누어 계산된 값으로 평가한다.

나. 참여기술인은 최근 1년간 참여한 건설사업관리용역의 시공단계 배치기간이 만료되기 이전에 교체된 경우 교체건수로 보며,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제27조제2항에 따라 철수사유가 “완료”로 된 경우에 대하여는 교체로 보지 아니한다.

6. 공사비 절감이란 건설공사를 시행함에 있어 구조물의 기능과 안전을 저해하지 않으면서, 자재 등의 재활용, 신공법·신기술의 적용 등 창의적인 사고를 통해

서 참여기술인이 직접 제안하여 예산을 절감한 경우(해당 공사로 인한 참여기술인 절감 기여율의 합은 100%를 초과할 수 없다)로서 입찰공고일 이전에 발주청으로부터 절감실적을 인정받아 다음사항이 포함된 확인서류(양식 15)를 발급 받고 공사비절감에 대한 발주청 심의의결서 사본을 첨부한 경우에만 인정한다.

- 가. 건설사업관리용역 개요(용역명, 발주청, 공사개요, 회사명, 용역기간 등)
- 나. 건설사업관리기술인 현황(성명, 생년월일, 직무분야, 배치기간, 대상여부)
- 다. 공사비 절감현황(절감기여율, 절감금액)
- 라. 발주청 확인(절감인정일, 발급일, 기관명·날인)

7. 수행실적평가서 작성방법

가. 제출서류 명세

- 1) 용역참여 신청서 1부.
- 2) 용역관련 해당등록증 사본 각1부
 - 가) 건설사업관리 전문회사등록증
 - 나) 건설사업관리업등록증(전력)
 - 다) 엔지니어링활동주체신고증 및 엔지니어링활동주체회원수첩
 - 라) 소방공사감리업등록증
- 3) 건설사업관리용역 수행실적평가서 1부.
(공동도급 시 공동수급 협정서 및 각 참여업체의 증빙서류첨부)
단, 선정된 업체는 추후 사본 2부 제출
- 4) 보안서약서 사본 1부
 - ※ 상기 서류는 평가서에 일괄 첨부함

나. 서류 작성 방법

- 1) 페이지 수 : 제한 없음.
- 2) 인쇄 및 제본
 - 가) 용지크기 : A4 (210mm / 297mm)
 - 나) 재 질 : 백상지 (80g/m²)
 - 다) 인쇄방법 : 공판인쇄, 컴퓨터조판 인쇄
 - 라) 제본방법 : 무선상철(끈이나 철선을 사용하지 않고 상단에 철함)
 - 마) 구비서류 명세의 작성지침 및 별첨서식에 의거 작성
 - 바) 제본순서
 - (1) 건설사업관리용역 수행실적평가서(I)
 - (2) 용역참여신청서
 - (3) 용역관련등록증 사본
 - (4) 공동수급협정서
 - (5) 공동수급협정체결현황

- (6) 자기평가서
- (7) 참여기술인의 자격사항
- (8)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 경력확인서
- (9) 분야별건설사업관리기술인 경력확인서
- (10) 기술지원기술인 경력확인서
- (11)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직무분야 경력사항
- (12) 유사용역사업수행실적
- (13) 유사용역수행실적확인서
- (14) 업체 입찰참가자격제한 및 기술인 자격·업무정지 등
- (15) 제재현황 및 부실벌점확인서
- (16) 재정상태 건실도 (신용평가 등급확인서)
- (17) 세무서 발급 최근 재무제표증명원
- (18) 기술개발 및 투자실적
- (19) 신기술지정증서 및 특허, 실용신안등록증 사본
- (20) 투자실적 관련 세무서증명원
- (21) 참여기술인의 업무중복도
- (22) 용역사업자 및 참여감리원 교체빈도
- (23) 부실벌점 현황
- (24) 부실벌점확인서 사본
- (25) 가·감점 서류

3) 등록증 및 기타 제출서류 사본

- 가) 모든 제출서류는 원본서류 제출을 원칙으로 한다.
- 나) 다만, 제출서류 중 사본가능한 서류는 공고문에 별도 명시하며 등록증 및 기타 제출서류 중 사본은 하단여백에 업체대표자 원본 대조필을 날인하여야 한다.

4) 기타사항

- 가) 수행실적평가에 필요한 서류를 위조, 변조, 허위 등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하여 제출한 경우에는 아래와 같이 처리하고 작성한 자(공동수급체의 경우에는 각 구성원을 말함)는 관련규정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제한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
 - (1) 계약체결 이전인 경우에는 적격낙찰자 결정대상에서 제외 또는 결정을 취소한다.
 - (2) 계약체결 이후인 경우에는 당해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 나)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서류 작성에 소요된 비용은 지급하지 않는다.

[별지 1]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 또는 분야별건설사업관리기술인 면접(발표) 상대평가 등급 배분 및 평가방법

상대평가 시 평가등급 배분 및 평가방법은 다음과 같이 한다.

1. 신청자수 별 평가등급 배분

| 신청 자수 | 등 급 | | | | | 신청 자수 | 등 급 | | | | |
|----------|-----|---|-----|---|---|----------|-----|---|----|---|---|
| | 수 | 우 | 미 | 양 | 가 | | 수 | 우 | 미 | 양 | 가 |
| 2,3 | 1 | 1 | (1) | | | 22 | 2 | 5 | 9 | 4 | 2 |
| 4 | 1 | 2 | 1 | | | 23 | 2 | 5 | 9 | 5 | 2 |
| 5 | 1 | 2 | 1 | 1 | | 24 | 2 | 5 | 10 | 5 | 2 |
| 6 | 1 | 2 | 1 | 1 | 1 | 25 | 3 | 5 | 10 | 5 | 2 |
| 7 | 1 | 2 | 2 | 1 | 1 | 26 | 3 | 5 | 10 | 5 | 3 |
| 8 | 1 | 2 | 3 | 1 | 1 | 27 | 3 | 5 | 11 | 5 | 3 |
| 9 | 1 | 2 | 3 | 2 | 1 | 28 | 3 | 6 | 11 | 5 | 3 |
| 10 | 1 | 2 | 4 | 2 | 1 | 29 | 3 | 6 | 11 | 6 | 3 |
| 11 | 1 | 2 | 5 | 2 | 1 | 30 | 3 | 6 | 12 | 6 | 3 |
| 12 | 1 | 3 | 5 | 2 | 1 | 31 | 3 | 6 | 13 | 6 | 3 |
| 13 | 1 | 3 | 5 | 3 | 1 | 32 | 3 | 7 | 13 | 6 | 3 |
| 14 | 1 | 3 | 6 | 3 | 1 | 33 | 3 | 7 | 13 | 7 | 3 |
| 15 | 2 | 3 | 6 | 3 | 1 | 34 | 3 | 7 | 14 | 7 | 3 |
| 16 | 2 | 3 | 6 | 3 | 2 | 35 | 4 | 7 | 14 | 7 | 3 |
| 17 | 2 | 3 | 7 | 3 | 2 | 36 | 4 | 7 | 14 | 7 | 4 |
| 18 | 2 | 4 | 7 | 3 | 2 | 37 | 4 | 7 | 15 | 7 | 4 |
| 19 | 2 | 4 | 7 | 4 | 2 | 38 | 4 | 8 | 15 | 7 | 4 |
| 20 | 2 | 4 | 8 | 4 | 2 | 39 | 4 | 8 | 15 | 8 | 4 |
| 21 | 2 | 4 | 9 | 4 | 2 | 40 | 4 | 8 | 16 | 8 | 4 |

2. 평가등급별 가중치

| 평가등급 | 수 | 우 | 미 | 양 | 가 |
|--|------|------|------|------|------|
| 가중치 | 1.00 | 0.80 | 0.60 | 0.40 | 0.20 |
| 평가방법 : 각 평가요소별로 각각 신청자의 등급을 판정한 후, 평가요소의 배점한도에 해당 가중치를 곱하여 평가점수 산정 | | | | | |
| ※ 총점은 업체별 평가위원들의 합계점수 중 최고점과 최저점을 제외하고 산술평균한다. | | | | | |

[별지 2]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 및 분야별건설사업관리기술인 면접 발표자료 작성요령

1. 분량

- 1) 면접발표자료의 분량은 12페이지 이내로 한다.
- 2) 표지 이외에 내지, 목차, 요약, 간지 등은 모두 쪽수에 포함한다.

2. 구성 및 편집

- 1) 면접발표자료의 구성은 다음의 순서에 따른다.
 - 가) 대상사업의 개요 및 특성
 - 나) 과업수행 환경분석
 - 다) 과업내용의 이해도
 - 라) 건설사업관리단 운영계획
 - 마) 환경관리계획
 - 바) 안전관리계획
 - 사) 공정관리계획
 - 아) 품질관리계획
 - 자) 당해 용역의 예상되는 문제점 및 개선대책
 - 차) 주요구조물 시공 시 착안사항 제시
 - 카) 공사 중 예상되는 민원 발생 시 대응방안
 - 타) 결론
- 3) 각 평가요소별 분량은 배점한도를 고려하여 적절한 분량으로 작성한다.
- 4) 발표자료작성 유의사항
 - 가) 발표자료 작성도구 : MS-Office Power Point
 - 나) 색채의 사용을 금하며, 그림 등은 회색조로 작성
 - 다) 사진이미지, 업체를 인식할 수 있는 도형, 영문문구, 사업내용과 관련이 없는 내용의 표현 등 금지
 - 라) 쪽 번호는 중앙 하단에 "12-1"의 형태로 표기
 - 마) 발표자료는 상기 구성을 준수하고 세부내용은 자유롭게 작성한다.
- 5) 표지 작성
 - 가) 평가용 면접평가자료(과업수행계획서)의 표지는 서식 제1호를 이용하며 측면 등에 일절 추가 표기를 하여서는 아니 됨
 - 나) 발주자 보관용 면접 평가자료(과업수행계획서)의 표지는 서식 제2호를 이용하여 작성

3. 인쇄 및 제본

1) 재질

- 가) 표지 : 색상(흰색) 스노우지(무광택) 250g/㎡
- 나) 본문 : 백상지 80g/㎡, 단면 인쇄
- 다) 간지 : 본문과 같은 재질 사용 (색깔이 있는 간지 사용 불가)

2) 인쇄방법 : 공판타자, 컴퓨터조판 인쇄

3) 제본방법 : 무선상철(끈이나 철선을 사용하지 않고 상단에 철함)

4. 기타 참고사항

- 1) 본 용역의 과업내용을 충분히 파악한 후, 용역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업무수행계획 및 방법을 구체적으로 기술하여야 한다.
- 2) 본 사업을 성공적으로 완수하기 위해 설계용역, 공사목적물 등에 대한 적절한 기술적용방안을 수립하여 제시하고, 보유하고 있는 기술인력의 활용방안을 제시한다.
- 3) 과업내용서 분석에 따른 설계, 시공 및 사후관리 등 각 단계별로 예상되는 문제점 및 대책을 제시하여야 한다.

<첨부 1> 보안 위반사항 범례('14. 9. 2 이후 위반사항부터 적용)

| 구분 | 위반내용 | 비고 |
|---------------------|---|----|
| 비밀/대외비 누설 | 적법한 절차에 의하지 않고 적국,외국,내국(인원)에 제공 및 설명 | 심각 |
| | 우연히 비밀을 알거나 점유하면서 군사비밀임을 알면서도 타인에게 제공 및 설명 | |
| | 업무상 과실로 제공 및 설명 | |
| | 업무상 알게 되거나 점유한 군사비밀을 타인에게 누설 / 제공 | |
| 비밀분실 | 고의적으로 유기 | 심각 |
| | 비밀 분실 또는 도난 후 미신고 | 중대 |
| | 비밀 분실 사실 인지 후 미신고 / 미회수 | |
| | 비밀 분실 사실 인지 후 신고하였으나 미회수 | |
| 비밀/대외비 수집 | 적법한 절차에 의하지 않고 탐지,수집 | 심각 |
| | 영리,이적 외 기타 목적으로 비밀 수집 | 중대 |
| 비밀/대외비 관리 | 비밀을 고의적으로 파기,손괴,은닉하거나 기타의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안 때 | 심각 |
| | 비밀을 의도적으로 유기,파기,훼손 | 중대 |
| | 비밀생산,보관,배포간 관리부실 또는 보호대책을 강구하지 않아 분실,도난,누설의 요인 제공 | |
| | 비밀을 임의로 보관시설 아닌 기타지역에 반출 | 경미 |
| | 비밀을 보호대책이 미강구된 장소에 보관 | |
| | 비인가업체 이용 비밀생산 또는 발간 | |
| | 비밀을 미분류, 음성비밀 생산,보관,활용 | |
| | 비밀보관장소에 미보관하거나 방치 | 미흡 |
| | 통제구역 출입통제 소홀(출입근거 미유지, 비인가자 출입, 열쇠관리 미흡 등) | |
| | 비밀 대외비를 개인 책상서랍,서류함 등에 임의 보관하는 등 규정 미준수 | |
| | 비밀 미분류, 임의 생산,보관,활용,인계 인수 | |
| | 비밀의 지출·대출·열람 근거 미유지 | |
| | 비밀 대외비를 일반서류함에 보관하는 등 규정 미준수 | |
| | 비밀발간업체 이용 비밀생산 시 승인권자 미승인, 감독관 미운영 등 보안조치 미실시 | |
| 비밀을 복제,복사하면서 규정 미준수 | | |
| 불온통신 | 도청,도찰장치를 설치하거나 도청,도찰행위 | 심각 |
| 정보통신 시스템 관리위반 | 해킹 및 바이러스 유포 | 심각 |
| | 외부 전산망에 비밀(대외비포함)을 임의 저장,게시,공유,전송 | |
| | 저장매체(USB 등) 무단반출로 군사비밀자료 유출 | 중대 |
| | 비인가 저장매체(USB 등) 무단 반입하여 군사비밀자료 저장 | |
| | 비밀용 저장매체(USB 등) 분실 | |
| | 외부 전산망(인터넷망 등) 무단 설치,운영 | |
| | 인터넷PC 해킹으로 군사비밀,대외비 자료 유출 | |

| | | |
|--|---|----|
| | 군사자료를 임의 저장.계시.공유.전송 | 경미 |
| | 전산망에 보호대책 없이 비밀을 임의 저장.계시.공유.전송하여 비인가자 인지 등 피해 발생 | |
| | 비인가 상용정보통신 장비(시설) 반입 사용 | |
| | 개인소유 상용정보통신 장비를 비밀작업용(업무용)전산기에 연결하거나 군사자료 임의 저장.촬영.전송 | |
| | 바이러스 방역체계 미운용 | |
| | 업무용 전산망과 외부망 임의 연동 | |
| | 승인받지 않은 인터넷 무단사용 | |
| | 승인받지 않는 PC에서 비밀작업 또는 저장 | |
| | 저장매체(USB 등) 무단 반출로 일반 군사자료 유출 | |
| | 용역종료 후 관련 군사자료를 전량반납하지 않고 보관 | |
| | 해킹.바이러스 등 침해사고 예방대책 미강구 | 미흡 |
| | 과실에 의해 바이러스를 감염시켰을 때 | |
| | 외부 전산망에 군사자료를 임의 저장.계시.공유.전송 | |
| | 네트워크가 차단된 PC내 업무목적의 비밀 임의 저장, 미소거 | |
| | 일반용 저장매체(USB CD 등) 무단 반출 | |
| | 비인가 저장매체(USB, CD 등) 무단 반입, 일반군사자료 저장 | |
| | 일반용 저장매체(USB CD 등) 분실 | |
| | 보안대책 검토 및 보안측정 등 보안절차를 준수하지 않거나 보안대책 검토 및 보안측정 결과 조치 미흡 | |
| | 휴대용 컴퓨터의 무선 접속 기능 미제거 | |
| | 비밀(대외비 포함)을 비인가자가 관리.취급.열람 | |
| 보안행정 서류 및 정보통신기록(Log File) 등을 고의적으로 미유지, 파기.폐기.삭제.변경 | | |
| 비밀공사시 불법 체류중인 외국인 채용 | | |
| 기 타 | 일반 군사자료의 대외기관 제공.설명시 보안성 검토 미실시 등으로 물의야기 원인 제공 | 미흡 |
| | 보안점검간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 미실시 | |

[첨부 2] 신용 평가등급 기준

|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 기업어음에대한 신용평가등급 | 기업신용평가 등급 |
|-------------------|-------------------|---|
| AAA | - | AAA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AA에 준하는 등급) |
| AA+, AA0, AA- | A1 | AA+, AA0, AA-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A+, AA0, AA-에 준하는 등급) |
| A+ | A2+ | A+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에 준하는 등급) |
| A0 | A20 | A0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0에 준하는 등급) |
| A- | A2- | A-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에 준하는 등급) |
| BBB+ | A3+ | BBB+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에 준하는 등급) |
| BBB0 | A30 | BBB0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0에 준하는 등급) |
| BBB- | A3- | BBB-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에 준하는 등급) |
| BB+, BB0 | B+ | BB+, BB0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 BB0에 준하는 등급) |
| BB- | B0 | BB-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에 준하는 등급) |
| B+, B0, B- | B- | B+, B0, B-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 B0, B-에 준하는 등급) |
| CCC+ 이하 | C 이하 | CCC+ 이하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CCC+에 준하는 등급) |

사업수행능력평가 원본대조필 확인각서

○ 용역명 :

위 용역의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에 참여함에 있어 사업수행능력평가서에 첨부된 모든 증빙자료(사본) 및 부분에 대하여 원본과 같음을 확인하며, 만약 당사와 관련된 모든 증빙자료(사본) 및 부분에 대하여 사실과 상이함이 발견될 경우 「건설기술진흥법」 제31조제1항 및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 제27조제1항에 따라 발주자로 부터 어떠한 불이익도 감수함을 확약합니다.

20 . . .

주 소 :
상 호 :
대 표 자 :
전화번호 :

(인)

주 소 :
상 호 :
대 표 자 :
전화번호 :

(인)

○○○장 귀하

<----- 210 mm ----->

| | |
|------|------|
| 접수번호 | 평가번호 |
| | |

(크기 : 가로 50mm, 세로 윗열 10mm, 아랫열 20mm, 박스 좌상단 위치 : 종이기준 가로 20mm, 세로 20mm)

○○ 건설사업관리용역 과업수행계획서

(문단모양: 가운데, 크기: 24, 위치: 종이기준 위에서 100 mm)

2014. 00.

(문단모양 가운데, 크기 : 20, 종이기준 위에서 150 mm)

2
9
7
r
r

<----- 210 mm ----->

○○ 건설사업관리용역 과업수행계획서

(문단모양: 가운데, 크기: 24, 위치: 종이기준 위에서 100 mm)

2014. 00.

(문단모양 가운데, 크기 : 20, 종이기준 위에서 150 mm)

○○사

(문단모양 가운데, 크기 : 20, 종이기준 위에서 247 mm)

2
9
7
m
m

| | |
|------|--|
| 접수번호 | |
|------|--|

건설사업관리자 수행실적평가서 (I)

용역명 : _____

업체명 :

대표자 :

주소 :

전화번호 :

FAX번호 :

평가서 작성자 : _____ (연락처 : _____)

[양식 1]

용역 참여 신청서

수 신 : 발주기관(부대)장

참 조 : 발주기관(부대) 재무관

제 목 : 건설사업관리자 수행실적평가서 제출

아래 용역에 대한 “건설사업관리전문회사 수행실적평가서”를 붙임과 같이 제출합니다.

1. 용역명 :
2. 평가서 마감일 :
3. 입찰예정일시 :

붙임 : 건설사업관리자 수행실적평가서 1부. 끝.

20

회사명 :

주 소

대표자 : (인)

작성자 : (☎ : FAX:)

[양식 2]

공동수급협정 체결현황

| 구 분 | 업체명 | 주소 | 대표자 | 전화 | 출자비율 | 비고 |
|------|-----|----|-----|----|------|----|
| 공동이행 | | | | | | |
| | | | | | | |
| | | | | | | |
| 분담이행 | 업체명 | 주소 | 대표자 | 전화 | 분담내용 | 비고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계 | | | | | 100% | |

- ※ 첨 부 : 1. 공동수급협정서
2. 공동도급대표자 선임계

자기평가서

| 항목 | 세부항목 | 평가내용 | 실적 | 배점 | 평점 | |
|----------------|-----------------|-------------|-------------|----|----|---|
| 참여 기술자 | 사업관리책임자 (성명) | 해당분야 | 년 | 점 | 점 | |
| | | 국방군사시설 경력 | 년 | - | - | |
| | | 직무분야 | 년 | 점 | 점 | |
| | | *COE, FED 등 | 년 | 점 | 점 | |
| | | 교육훈련 | 주 | 점 | 점 | |
| | | 기술자격 | | 점 | 점 | |
| | | *품질·안전 | 개 | 점 | 점 | |
| | 사업관리책임자 소개 | | | 점 | 점 | |
| | 건축 (성명) | 경력 | 해당분야 | 월 | 점 | 점 |
| | | | 국방군사시설 경력 | 년 | - | - |
| | | | 직무분야 | 년 | 점 | 점 |
| | | | *COE, FED 등 | 년 | 점 | 점 |
| | | | 교육훈련 | 주 | 점 | 점 |
| | | | 기술자격 | | 점 | 점 |
| | | | *품질·안전 | 개 | 점 | 점 |
| | 건축 소개 | | | 점 | 점 | |
| | 분야별 참여 기술인 (0인) | 토목 (성명) | 해당분야 | 월 | 점 | 점 |
| | | | 국방군사시설 경력 | 년 | - | - |
| | | | 직무분야 | 년 | 점 | 점 |
| | | | *COE, FED 등 | 년 | 점 | 점 |
| | | | 교육훈련 | 주 | 점 | 점 |
| | | | 기술자격 | | 점 | 점 |
| | | | *품질·안전 | 개 | 점 | 점 |
| | 토목 소개 | | | 점 | 점 | |
| 기계 (성명) | 경력 | 해당분야 | 월 | 점 | 점 | |
| | | 국방군사시설 경력 | 년 | - | - | |
| | | 직무분야 | 년 | 점 | 점 | |
| | | *COE, FED 등 | 년 | 점 | 점 | |
| | | 교육훈련 | 주 | 점 | 점 | |
| | | 기술자격 | | 점 | 점 | |
| | | *품질·안전 | 개 | 점 | 점 | |
| 기계 소개 | | | 점 | 점 | | |
| 분야별 참여기술인 소개 | | | 점 | 점 | | |
| 기술 지원 기술인 (0인) | 기술지원 건축 (성명) | 등 급 | | 점 | 점 | |
| | | 해당분야 | 년 | 점 | 점 | |
| | | 직무분야 | 년 | 점 | 점 | |
| | | 국방군사시설 경력 | | - | - | |
| | | *COE, FED 등 | 년 | 점 | 점 | |
| | | 교육훈련 | 주 | 점 | 점 | |
| | | 기술자격 | | 점 | 점 | |
| *품질·안전 | 개 | 점 | 점 | | | |
| 비상주 건축 소개 | | | 점 | 점 | | |
| 기술지원 토목 (성명) | 경력 | 등 급 | | 점 | 점 | |
| | | 해당분야 | 년 | 점 | 점 | |
| | | 직무분야 | 년 | 점 | 점 | |
| | | 국방군사시설 경력 | 년 | - | - | |
| | | *COE, FED 등 | 년 | 점 | 점 | |
| | | 교육훈련 | 주 | 점 | 점 | |
| | | 기술자격 | | 점 | 점 | |
| *품질·안전 | 개 | 점 | 점 | | | |
| 비상주 토목 소개 | | | 점 | 점 | | |
| 기술지원 기술인 소개 | | | 점 | 점 | | |
| 참여기술인 소개 | | | 점 | 점 | | |

* COE, FED 등 / 품질·안전 경력은 대미사업의 경우에 한함

| 항목 | 세부항목 | 평가내용 | 실적 | 배점 | 평점 | |
|---------------|------------------------|------------------|------------|--------|----------|---|
| 유사용역 실적 | 건설사업관리 및 기타 실적 준공금액 | 대표사 | 억원 | 점 | 점 | |
| | | 공동수급업체 | 억원 | 점 | 점 | |
| | | 공동수급업체 | 억원 | 점 | 점 | |
| | 용역수행평가 | 대표사 | | 점 | 점 | |
| | | 공동수급업체 | | 점 | 점 | |
| | | 공동수급업체 | | 점 | 점 | |
| 신용도 | 영업정지 (업무정지) | 참여기술인 | 월 | | 점 | |
| | | 참여업체 | 월 | | 점 | |
| | 재정상태건실도 | 신용평가등급 | 대표사 | | 점 | 점 |
| | | | 공동수급 | | 점 | 점 |
| | 부실별점 | 별 점 | 점 | 점 | 점 | |
| | 보안위규 | 별 점 | 점 | 점 | 점 | |
| | 소개 | | | 점 | 점 | |
| 기술 개발 및 투자 실적 | 개발 실적 | 건설신기술, 특허·실용신안 | 건 | 점 | 점 | |
| | 투자 실적 | 최근 3년간 투자실적 평균비율 | % | 점 | 점 | |
| | 활용 실적 | 건설신기술, 특허·실용신안 | 건 | 점 | 점 | |
| | 소개 | | | 점 | 점 | |
| 업무 중복지도 | 참여 기술인의 업무중복지도 | 사업관리책임자 | 성명: 개월 | 점 | 점 | |
| | | 기타 참여 기술인 | 건축 | 성명: 개월 | 점 | 점 |
| | | | 토목 | 성명: 개월 | | |
| | | | 기계 | 성명: 개월 | | |
| | | 비상주 건축 | 성명: 개현장 | 점 | 점 | |
| | | 비상주 토목 | 성명: 개현장 | | | |
| | 소개 | | | 점 | 점 | |
| | 가점 감점 | 가점 | 공사비절감 기술인 | | 점 | 점 |
| | | | 건설기술인 신규고용 | | 점 | 점 |
| | | 감점 | 부패행위 관련자 | | 점 | 점 |
| 소개 | | | 점 | 점 | | |
| 총 평점 | | | | | 점 | |

참여기술인 자격사항

| 구 분 | 분야 | 등급 | 소속회사 (입사일) | 주민 등록 번호 | 자격내용 | | 학력내용 | | 비 고 |
|------------------|-----------|----|---------------|----------------|------|-----|----------|--------------------|-----|
| | | | | | 자격명 | 취득일 | 최종 학력 | 졸업일 또는 학위취득일 | |
| 사업관리책임자 ○○○ | | | | | | | | | |
| 상주 참여 기술인 | 건축 ○○○ | | | | | | | | |
| | 토목 ○○○ | | | | | | | | |
| | 기계 ○○○ | | | | | | | | |
| | 기계 ○○○ | | | | | | | | |
| 비상주 참여 기술인 | 건축 ○○○ | | | | | | | | |
| | 토목 ○○○ | | | | | | | | |

※ 첨 부 : 1. 기술인 보유현황 확인서

참여기술인의 경력사항

| 구 분 (성 명) | 현재 까지 경력 | 평 점 | 해당분야 용역참여 실적 | | | | | | |
|-------------------------|----------------|--------|--------------|----|-----|---------|------|--|--|
| | | | 사업명 | 분야 | 발주자 | 참여기간 | 쪽(P) | | |
| 00 참여 기술인 (성명) | 해당 분야 | | | | | ~ (00일) | | | |
| | | | | | | ~ (00일) | | | |
| | | | | | | ~ (00일) | | | |
| | | | | | | ~ (00일) | | | |
| | | | | | | ~ (00일) | | | |
| | | | | | | ~ (00일) | | | |
| | | | | | | ~ (00일) | | | |
| | | | | | | ~ (00일) | | | |
| | | | | | | ~ (00일) | | | |
| | | | | | | ~ (00일) | | | |
| | | | 계 | | | 년 개월(일) | | | |
| | | | 균경력 | | | 년 개월(일) | | | |
| 직무 분야 | 년 개월 | | | | | ~ (00일) | | | |
| | | | | | | ~ (00일) | | | |
| | | | | | | ~ (00일) | | | |
| | | | 계 | | | 년 개월(일) | | | |

※ 첨 부 : 1. 참여기술인 경력확인서

교육이수실적

○ 최근 3년간 참여기술인이 건진법 20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교육을 이수한 실적

| 참여기술인 성명 | 교육과정명 | 교육기간 | 교육기관 | 비 고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점 수 | 2주이상 교육을 받은 경우 : (교육훈련이수자/참여기술인) × 3점 = 1주이상 2주미만 교육을 받은 경우 : (교육훈련이수자/참여기술인) × 1.5점 = | | | |

※ 첨부 : 1. 교육훈련 이수 확인서

유사용역수행실적

| 구분 | 발주자 | 사업명 | 용역기간 자 : 년 월 일 지 : 년 월 일 | 용역금액 (원) | 해당금액 (원) | 분야 |
|--------------------------|-----------|-----|--------------------------------|-------------|-------------|----------|
| 건설사업관리 용역실적 (100%)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소계 | | | | | 원 |
| 기타실적 (60%)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소계 | | | | | 원 |
| 계 | | | | | 원 | |

- ※ 첨부 : 1. 건설사업관리용역실적 확인서(한국CM협회 발행)
 2. 감리용역수행실적 확인서(한국건설감리협회 발행)
 3. 기타 실적 확인서(해당 경력관리수탁기관)

용역평가결과

| 업 체 명 | 참여 비율 | 용역평가점수(업체별 실적기입) | | | | | 용역평가결과 |
|-----------|-------|------------------|-----|-------------|----------|-----------|--------|
| | | 용역명 | 평가일 | 실적 금액 (백만원) | 용역 평가 점수 | 환산실적 및 점수 | |
| 대표사명 | | | | | | | / |
| | | | | | | | |
| 공동도급사명 | | | | | | | |
| 공동도급사명 | | | | | | | |
| 용역평가결과 점수 | | | | | | | |

※ 불 입 : 국토안전관리원의 건설사업관리용역 평가현황 (원본대조필인 포함)

영업정지(업무정지)

| 업체명 | 정지 기간 | 기간(월) | 조치기관명 | 사 유 요 약 | 점 수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계 | | | | | |

| 기술인성명 | 정지 기간 | 기간(월) | 조치기관명 | 사 유 요 약 | 점 수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계 | | | | | |

| | | | | | |
|-----|--|--|--|--|--|
| 계 | | | | | |
| 평 점 | | | | | |

※ 첨부 : 1. 각 관련협회의 확인서

재정상태 건실도

1. 회사명 :

2. 설립년도 :

|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 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 기업신용평가등급 | 평점 |
|-------------------|--------------------|----------|----|
| | | | |

- ※ 첨부 : 1. 신용평가등급 증명서류
2. 세무서 발급 최근 제무제표 증명원

부 실 별 점

○ 참여업체 및 참여기술인이 본 업무와 관련하여 받은 부실별점에 따라 평가

| 참여업체 및 참여기술인 | 측정기관 | 부실별점 | 점 수 | 비 고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계 | | | | |

- ※ 첨부 : 1. 부실별점 확인서 사본

기술개발 및 투자실적

○ 기술개발 실적

| 구 분 | | 제 목 | 특허권자 | 출원일 (경과년수) | 점수 | 비 고 (등록번호) |
|-----------|-----|-----|------|---------------|----|---------------|
| 건설 신기술 | 업체명 | | | | | |
| | 소계 | | | | | |
| 특허 | 업체명 | | | | | |
| | 소계 | | | | | |
| 점 수 | | | | | | |

※ 첨부 : 1. 신기술지정서, 특허/실용신안 등록원부 및 최초출원확인서 1부

○ 투자실적

| 업체명 | 3년간 건설기술개발 총투자액(A) | 3년간 건설부문 총매출액(B) | 3년간 총투자실적 (A/B) | 계 | 비고 |
|-----|--------------------------|------------------------|-----------------------|--------------|----|
| | | | | (A/B)×참여지분율= | |
| | | | | | |
| | | | | | |
| 계 | | | | | |

※ 첨부 : 1. 재정상태검토보고서(공인회계사 또는 세무사 확인) 1부

○ 활용실적

| 구 분 | 제 목 | 출원인 | 출원일 (경과년수) | 활용 건수 | 활용 금액 | 가중치 | 점수 | 비고 |
|-----------|-----|-----|---------------|----------|----------|-----|----|----|
| 건설 신기술 | | | | | | | | |
| | | | | | | | | |
| 특허 | | | | | | | | |
| | | | | | | | | |
| 계 | | | | | | | 점 | |

※ 첨부 : 건설신기술활용 실적증명서 및 건설신기술, 특허 등록증 사본

(단. 건설신기술은 건진법 시행령 제117조1항에 따라 지정·고시된 기관, 특허 및 실용신안은 발명진흥법 제52조에서 정한 전문기관의 특허 활용실적 증명서에 한해 인정)

참여기술인의 업무중복도

| 구 분 (성 명) | 현장 배치현황 | | | 점 수 | 비 고 |
|-----------------|-------------------|--------------|----|-----|-----|
| | 현 장 명 | 배치기간 (개월) | 등급 | | |
| 사업관리책임자 (성명) | | | | | |
| 기타 참여 기술인 | 건축 (성명) | | | | |
| | 토목 (성명) | | | | |
| | 기계 (성명) | | | | |
| | | | | | |
| | 비상주 토목 (성명) | | | | |
| | 비상주 전기 (성명) | | | | |
| | 소 계 | | | | |
| 총 계 | | | | | |

- ※ 첨부 : 1. 참여기술인 배치계획표(배치기간, 환산비, 환산인원수 명기)
 2. 기타 증빙서류(경력관리 수탁기관 확인서)
 3. 중복배치 계약서 사본 및 발주청 확인서

군사보안위반

○ 참여업체 및 참여기술인의 보안위반사항 평가

| 참여업체 및 참여기술인 | 위반내용 (등급) | 처분기관 | 처분일시 | 점 수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계 | | | | |

첨부 : 발주청(조사기관)의 확인서 사본 첨부.

※ 조사기관 확인서 상 보안위반 내용이 다수인 경우 중 [첨부 1]의 보안위반사항 범례 중 최상위 등급으로 감점

건설공사 공사비 절감 확인서

| I. 건설사업관리용역 개요 | | | | | | | | |
|---|------------------------------------|------|------|------|------|----------|-----------------|----|
| 1)용역명 | | | | | | | 3)발주기관 (발주청) | |
| 2)공사현장 위치 | | | | | | | | |
| 4)공사개요 | 4-1)공사규모 | | | | | | | |
| | 4-2)총공사비 | | | | | | | |
| 5)건설사업 관리용역 사업자 (대표사) | 5-1)회사명 | | | | | 5-3)대표자 | | |
| | 5-2)등록번호 | | | | | 5-4)전화번호 | | |
| 6)용역기간 | 20 . . . ~ 20 . . . | | | | | | | |
| 7)과업범위 | (건설사업관리용역이 공동도급일 경우 분담범위 및 업체명 명기) | | | | | | | |
| II. 건설사업관리기술인 현황 | | | | | | | | |
| ※ 공사비 절감기술인에 해당되는 기술인의 경우 대상여부 란에 ○표하고, 대상기술인의 절감기여율(%)에 따라 공사비 절감금액을 산정함(절감기여율의 합은 100%를 초과할 수 없음) | | | | | | | | |
| 구분 | 성명 | 직무분야 | 생년월일 | 배치기간 | 대상여부 | 절감기여율(%) | 절감금액(백만원) | 비고 |
| 합계 | 인 | | | | | 100 | | |
| 1)책임 | | | | | | | | |
| 2)분야별 | | | | | | | | |
| | | | | | | | | |
| 3)기술지원 | | | | | | | | |
| | | | | | | | | |
| III. 공사비절감 인정일 | | | | | | | | |
| 상기 건설사업관리용역의 참여기술인에 대한 공사비 절감 실적을 위와 같이 확인합니다. | | | | | | | | |
| 발 주 기 관 장 직인 | | | | | | | | |

【별표4】 정밀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 용역사업자의 수행실적평가 배점표 및 세부평가기준

| 평가항목 | 세부평가항목 | | 배 점 | |
|-----------------|-----------------|--------------|---------------|--------------|
| [가] 참여기술인 | 책임기술인 | 등 급 | - | |
| | | 경 력 | 8 | |
| | | 실적(건수) | 5 | |
| | 분야별책임기술인 | 실적(금액) | 5 | |
| | | 등 급 | 2 | |
| | | 경 력 | 6 | |
| | 분야별참여기술인 | 실적(건수) | 5 | |
| | | 실적(금액) | 5 | |
| | | 등 급 | 2 | |
| | | | 경 력 | 3 |
| | | | 실적(건수) | 4 |
| | | | 【소 계】 | 【45점】 |
| [나] 유사용역 수행실적 | 최근 5년간 용역수행실적 | 건수 | 12 | |
| | | 금액 | 13 | |
| | | | 【소 계】 | 【25점】 |
| [다] 신용도 | 점검·진단 실시결과 평가결과 | 참여업체 | 4 | |
| | 영업정지(업무정지) | 참여업체/참여기술인 | 3 | |
| | 재정상태건실도 | 신용평가등급 | 3 | |
| | | 【소 계】 | 【10점】 | |
| [라] 기술개발 및 투자실적 | 개발·사용실적 | 건설신기술, 특허 | 2 | |
| | 투자실적 | 최근3년간 투자실적비율 | 8 | |
| | | | 【소 계】 | 【10점】 |
| [마] 업무중복도 | 참여기술인의 업무중복도 | 책임기술인 | 6 | |
| | | 분야별책임기술인 | 4 | |
| | | | 【소 계】 | 【10점】 |
| 【총계】 | | | 【100점】 | |
| 가점 | 건설기술인 신규고용 | | 0.3 | |

| 평가항목 | 세부평가항목 | 배점 | 점수계산방법 | | | | | |
|----------|-------------|--------|--------|---|---------------|-----------------|-----------------|-----------|
| 참여기술인 | 책임기술인 | 등급 | - | 「시설물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7조」의 자격을 갖춘 자 (단, 자격미달 시 실격) | | | | |
| | | 경력 | 8 | 10년이상 | 10년미만~9년이상 | 9년미만~8년이상 | 8년미만~7년이상 | 7년미만 |
| | | | | 8.0 | 7.2 | 6.4 | 5.6 | 4.8 |
| | | 실적(건수) | 5 | 14건이상 | 14건미만~12건이상 | 12건미만~10건이상 | 10건미만~8건이상 | 8건미만 |
| | 5.0 | | | 4.5 | 4.0 | 3.5 | 3.0 | |
| | 실적(금액) | 5 | 7억원이상 | 7억원미만~6억원이상 | 6억원미만~5억원이상 | 5억원미만~4억원이상 | 4억원미만~6억원이상 | |
| | | | 5.0 | 4.5 | 4.0 | 3.5 | 3.0 | |
| | 분야별책임기술인 | 등급 | 2 | 특급 | 고급 | 중급 | 초급 | - |
| | | | | 2.0 | 1.8 | 1.6 | 1.4 | - |
| | | 경력 | 6 | 7년이상 | 7년미만~6년이상 | 6년미만~5년이상 | 5년미만~4년이상 | 4년미만 |
| | | | | 6.0 | 5.4 | 4.8 | 4.2 | 3.6 |
| | | 실적(건수) | 5 | 11건이상 | 11건미만~9건이상 | 9건미만~7건이상 | 7건미만~5건이상 | 5건미만 |
| | | | | 5.0 | 4.5 | 4.0 | 3.5 | 3.0 |
| | | 실적(금액) | 5 | 5억원이상 | 5억원미만~4.5억원이상 | 4.5억원미만~4.0억원이상 | 4.0억원미만~3.5억원이상 | 3.5억원미만 |
| | | | | 5.0 | 4.5 | 4.0 | 3.5 | 3.0 |
| 분야별참여기술인 | | 등급 | 2 | 특급 | 고급 | 중급 | 초급 | - |
| | | | | 2.0 | 2.0 | 1.8 | 1.6 | - |
| | | 경력 | 3 | 5년이상 | 5년미만~4년이상 | 4년미만~3년이상 | 3년미만~2년이상 | 2년미만 |
| | | | 3.0 | 2.7 | 2.4 | 2.1 | 1.8 | |
| | | | 실적(건수) | 4 | 8건이상 | 8건미만~6건이상 | 6건미만~4건이상 | 4건미만~2건이상 |
| 4.0 | 3.6 | 3.2 | | | 2.8 | 2.4 | | |
| 유사용역수행실적 | 참여업체(최근5년간) | 건수 | 12 | 10건이상 | 10건미만~8건이상 | 8건미만~6건이상 | 6건미만~4건이상 | 4건미만 |
| | | | | 12.0 | 10.8 | 9.6 | 8.4 | 7.2 |
| | | 금액 | 13 | 10억원이상 | 10억원미만~8억원이상 | 8억원미만~6억원이상 | 6억원미만~4억원이상 | 4억원미만 |
| | | | | 13.0 | 11.7 | 10.4 | 9.1 | 7.8 |

| 평가항목 | 세부평가항목 | 배점 | 점수계산방법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신용도 | 점검·진단 실시결과 평가결과 | 4 | -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1년간 수행한 용역에 대해 정밀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 실시결과 평가에서 각 용역건수에 따라 '보완' 처분은 0.3점 감점, '부실' 처분은 0.7점 감점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영업정지 (업무정지) | 3 | - 삭제 - 업체 및 참여기술인이 정밀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용역업무와 관련하여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1년간 관계법령에 따라 기술자격정지 또는 업무정지를 받은 기간을 합산하여 합산기간 1월 마다 0.2점씩 감점(단, 1월 미만인 경우, 1월로 계산)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재정상태건실도 | 3 | -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table border="1"> <tr> <td>회사채</td> <td>A-이상</td> <td>A-미만 BBB-이상</td> <td>BBB-미만 B-이상</td> <td>CCC+이하</td> <td>미제출</td> </tr> <tr> <td>기업어음</td> <td>A2-이상</td> <td>A2-미만 A3-이상</td> <td>A3-미만 B-이상</td> <td>C이하</td> <td>미제출</td> </tr> <tr> <td>기업신용</td> <td>A-이상</td> <td>A-미만 BBB-이상</td> <td>BBB-미만 B-이상</td> <td>CCC+이하</td> <td>미제출</td> </tr> <tr> <td>점수</td> <td>3.0</td> <td>2.7</td> <td>2.4</td> <td>2.1</td> <td>0</td> </tr> </table> <p>* 첨부 참조</p> | | | | | 회사채 | A-이상 | A-미만 BBB-이상 | BBB-미만 B-이상 | CCC+이하 | 미제출 | 기업어음 | A2-이상 | A2-미만 A3-이상 | A3-미만 B-이상 | C이하 | 미제출 | 기업신용 | A-이상 | A-미만 BBB-이상 | BBB-미만 B-이상 | CCC+이하 | 미제출 | 점수 | 3.0 | 2.7 | 2.4 | 2.1 | 0 | | | | | | | |
| 회사채 | A-이상 | A-미만 BBB-이상 | BBB-미만 B-이상 | CCC+이하 | 미제출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기업어음 | A2-이상 | A2-미만 A3-이상 | A3-미만 B-이상 | C이하 | 미제출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기업신용 | A-이상 | A-미만 BBB-이상 | BBB-미만 B-이상 | CCC+이하 | 미제출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점수 | 3.0 | 2.7 | 2.4 | 2.1 | 0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기술개발 및 투자실적 | 개발·사용실적 | 2 | <p>1) 「건설기술 진흥법」 제14조에 따라 지정된 건설신기술은 보호기간 내에 있는 경우 인정하고, 특허는 특허등록결정을 받은 경우 인정하되 사용실적(건수, 금액)에 따라 가중치를 부여하여 평가한다. 다만, 특허는 최대 1점까지만 인정한다.</p> <p>* 건설신기술 : 1.0점 / 건당 * 특허 : 0.6점 / 건당 * 건설신기술 사용실적에 따른 가중치</p> <table border="1"> <tr> <td rowspan="2">구분</td> <td colspan="5">가 중 치</td> </tr> <tr> <td>1.0</td> <td>0.9</td> <td>0.8</td> <td>0.7</td> <td>0.6</td> </tr> <tr> <td>건수(건)</td> <td>50이상</td> <td>50미만 20이상</td> <td>20미만 5이상</td> <td>5미만 3이상</td> <td>3미만 1이상</td> </tr> <tr> <td>금액(억원)</td> <td>70이상</td> <td>70미만 25이상</td> <td>25미만 5이상</td> <td>5미만 1이상</td> <td>1미만 0.5이상</td> </tr> </table> <p>(위 두 조건 중 하나 이상의 조건을 충족시켜야 함) * 특허 경과기간에 따른 가중치</p> <table border="1"> <tr> <td>구분</td> <td>5년미만</td> <td>5년이상 10년미만</td> <td>10년이상 20년미만</td> </tr> <tr> <td>가중치</td> <td>100%</td> <td>80%</td> <td>60%</td> </tr> </table> <p>2) 위 1)의 기술개발·사용실적이 동일 내용으로 건설신기술, 특허를 각각 받은 경우, 가장 점수가 높은 1건만 인정 3) 위 1)의 기술개발·사용실적은 2인 이상이 최초 출원시 공동으로 출원한 경우, 해당 점수를 출원자의 수로 나누어 인정</p> | | | | | 구분 | 가 중 치 | | | | | 1.0 | 0.9 | 0.8 | 0.7 | 0.6 | 건수(건) | 50이상 | 50미만 20이상 | 20미만 5이상 | 5미만 3이상 | 3미만 1이상 | 금액(억원) | 70이상 | 70미만 25이상 | 25미만 5이상 | 5미만 1이상 | 1미만 0.5이상 | 구분 | 5년미만 | 5년이상 10년미만 | 10년이상 20년미만 | 가중치 | 100% | 80% | 60% |
| | | | 구분 | 가 중 치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0 | 0.9 | 0.8 | | 0.7 | 0.6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건수(건) | 50이상 | 50미만 20이상 | 20미만 5이상 | 5미만 3이상 | 3미만 1이상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금액(억원) | 70이상 | 70미만 25이상 | 25미만 5이상 | 5미만 1이상 | 1미만 0.5이상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구분 | 5년미만 | 5년이상 10년미만 | 10년이상 20년미만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가중치 | 100% | 80% | 60%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투자실적 | 8 | <p>-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3년간 기술개발투자실적의 건설부문 총매출액에 대한 비율(건설기술개발투자액/건설부문 총매출액)에 따라 계산</p> <table border="1"> <tr> <td>구분</td> <td>3.0%이상</td> <td>3.0%미만 2.5%이상</td> <td>2.5%미만 2.0%이상</td> <td>2.0%미만 1.5%이상</td> <td>1.5%미만</td> </tr> <tr> <td>점수</td> <td>8.0</td> <td>7.2</td> <td>6.4</td> <td>5.6</td> <td>4.8</td> </tr> </table> | | | | | 구분 | 3.0%이상 | 3.0%미만 2.5%이상 | 2.5%미만 2.0%이상 | 2.0%미만 1.5%이상 | 1.5%미만 | 점수 | 8.0 | 7.2 | 6.4 | 5.6 | 4.8 | | | | | | | | | | | | | | | | | | | |
| 구분 | 3.0%이상 | 3.0%미만 2.5%이상 | 2.5%미만 2.0%이상 | 2.0%미만 1.5%이상 | 1.5%미만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점수 | 8.0 | 7.2 | 6.4 | 5.6 | 4.8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평가항목 | 세부평가항목 | 배점 | 점수계산방법 | | | | | | |
|-------|---------------|----|---|-------|----------------|----------------|----------------|-------|--|
| 업무중복도 | 책임기술인 | 6 | - 수행 중인 다른 용역과 중복되는 합계기간 및 참여정도에 따라 평가 * 입찰공고일 기준, 잔여과업기간이 1개월 이상인 용역을 기준으로 중복되는 잔여 과업기간을 합산하여 평가 | | | | | | |
| | | | 구분 | 12월미만 | 12월이상 15월미만 | 15월이상 18월미만 | 18월이상 21월미만 | 21월이상 | |
| | | | 점수 | 6.0 | 5.4 | 4.8 | 4.2 | 3.6 | |
| 업무중복도 | 분야별책임기술인 | 4 | - 수행 중인 다른 용역과 중복되는 합계기간 및 참여정도에 따라 평가 * 입찰공고일 기준, 잔여과업기간이 1개월 이상인 용역을 기준으로 중복되는 잔여 과업기간을 합산하여 평가 * 용역의 특성 등에 따라 분야별 책임기술인에 가중치를 부여하여 산정 | | | | | | |
| | | | 구분 | 12월미만 | 12월이상 15월미만 | 15월이상 18월미만 | 18월이상 21월미만 | 21월이상 | |
| | | | 점수 | 4.0 | 3.6 | 3.2 | 2.8 | 2.4 | |
| 가점 | 건설기술인 신규고용 | | - 건설기술인 신규고용율에 따라 가점 부여 · 1% 이상 : 0.1점 · 2% 이상 : 0.2점 · 3% 이상 : 0.3점 * 건설기술인 신규 고용율 = 최근 1년간 건설기술인 신규 고용인원(입찰공고일 전월 기준) / 직전년도 동기간 평균 고용인원 * 신규 건설기술인은 입찰공고일 현재 해당업체 재직 중인 자로 건설기술인 경력관리 수탁기관의 경력증명서에 최초로 입사 등록된 자(이전 건설분야 근무경력이 없는 자)에 한함 * 직전년도 동기간 평균 고용인원은 건설기술인 경력관리 수탁기관에 신고한 자로서 해당업체의 기술인 재직인원(월말 기준)을 월단위로 평균하여 산정 - 건설기술인 경력관리 수탁기관에서 확인한 후 발급한 자료로 평가 - 공동이행방식으로 용역을 수행하는 경우에는 공동수급체의 구성원별 평가점수에 용역참여비율을 곱하여 산정한 후 이를 합산 | | | | | | |

[부표4]

정밀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 용역사업자 수행실적에 대한 평가방법 및 세부기준

I. 일반사항

- 발주청은 입찰공고기간 중 입찰희망자에게 평가세부기준을 반드시 배부하거나 공람토록 하여야 하며, 사업수행능력 평가 후 해당 용역사업자에게 개별 점수를 통보하고, 낙찰자 선정 후 최종 평가결과를 공개하여야 한다.
- 참여건설기술인의 경력 및 실적은 건설기술인 경력관리수탁기관의 확인을 받아야 하며, 유사용역 수행실적·신용도·기술개발 및 투자실적·업무중복도·해외유사용역 수행실적 등은 각 현황관리기관, 해당 전문기관 또는 해당 용역 발주청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 발주청은 사업수행능력(PQ) 평가 시 관련서류의 사본 또는 입찰참여업체가 작성한 서류를 활용한 후 PQ평가에서 입찰참가자로 선정된 업체에 한하여 건설기술인 경력관리수탁기관, 현황관리기관 또는 발주청이 발행한 서류를 제출받아 관련내용의 진위여부 등을 확인할 수 있다.
- PQ평가에서 선정된 용역업체와 관련하여 평가점수에 영향을 미치는 상이한 부분이 발견되어 해당 업체를 입찰참가자 선정에서 제외하였을 경우, 잔여 업체만을 입찰에 참여할 자로 선정한다.
- 발주청은 이 기준에 의한 점수 이외에 관계법령 등에서 규정하는 사항에 따라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가점 또는 감점을 줄 수 있으며(가점과 감점을 상계한 점수는 3점을 초과하지 못함), 평가기준에 따른 평가결과는 평가항목별 점수에 가점과 감점을 합한 점수로 한다. 이 경우 평가점수가 100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00점으로 하고, 100점 이하일 경우에는 원 점수를 그대로 사용한다.
- 입찰 참여사는 사업수행능력평가에 필요한 증빙서류에 대한 확인각서(첨부 2)를 제출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원본대조필 및 간인처리를 생략할 수 있다.

II. 항목별 세부평가방법

- 평가방법은 절대평가를 원칙으로 하며, 점수가 합리적 통계 등에 의하여 산정하기 곤란하거나 평가의 변별력이 필요한 경우에는 상대평가에 의한다.
- 상대평가 시, 등급별 배분은 수(10%), 우(20%), 미(40%), 양(20%), 가(10%)로 하고, 점수는 수(100%), 우(90%), 미(80%), 양(70%), 가(60%)로 배분한다.
- 참여기술인의 평가는 다음 각 목을 적용한다.

가. 참여기술인의 평가는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4조 별표1의 기준에 따라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기술자격자와 학력 또는 경력에 의한 건설기술인을 등급별로 평가한다.

나. 참여기술인의 경력은 자격취득시기, 자격보유 여부에 관계없이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6조 및 제7조에 따른 정밀점검, 긴급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 등의 경력기간에 따라 평가하며, 참여기술인의 실적은 자격취득시기, 자격보유 여부에 관계없이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6조 및 제7조에 따른 정밀점검, 긴급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 등의 수행실적을 용역의 종류, 규모, 금액, 건수, 수행업무 및 전체 계약기간 중 실제 참여기간에 대한 비율로 평가한다.

다. 필요한 경우 해당 전문분야 외의 분야에서 용역업무를 수행한 자의 경력 및 실적을 인정할 수 있다. 이 경우 평가요소별(경력, 실적) 해당 배점의 60%를 초과할 수 없으며, 전문분야는 교량 및 터널, 수리시설, 항만, 건축분야를 말한다.

라. 참여건설기술인이 관리주체인 임·직원으로서 정밀점검, 긴급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 등을 감독 또는 관리한 경우에는 이를 해당분야의 경력 및 실적으로 인정한다.

마. 평가대상사업에 대한 책임기술인 및 참여기술인은 반드시 해당 용역수행에 참여하여야 하며, 해당 용역에 참여하지 아니하는 경우로서 그 건설기술인에 대한 평가가 업체선정의 중요한 요소인 경우에는 계약해제 또는 해지의 사유가 될 수 있으며, 발주청별로 차기용역 평가 시 이를 감점할 수 있다.

바. 「건설기술진흥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건설관련업체의 임·직원이 아닌 자 중 건설기술인 경력관리수탁기관에 신고한 고급기술인으로서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9조 제2항에 따른 전기·기계설비 또는 계측시설분야의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할 수 있는 고급기술인(이하 “계약직전문기술인”이라 한다)을 당해 용역의 분야별 책임기술인으로 참여시키고자 하는 때에는 해당 업체소속의 기술인과 동일하게 평가할 수 있다. 이 경우 계약직 전문기술인은 당해 업체 소속의 기술인과 동일한 권한과 책임을 가지며 해당업체는 이를 확인하는 내용을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사. 참여건설기술인의 빈번한 이적사례 방지를 위해 이적기간에 따라 평가점수를 감점할 수 있다.

4. 유사용역 수행실적이라 함은 최근 5년간 수행한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6조 및 제7조에 따른 정밀점검, 긴급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 용역사업 중 준공된 해당분야 실적을 말한다.

5. 점검·진단 실시 평가결과는 다음 각 목에 따른다.

가. 점검·진단 실시 평가결과는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1조의 3에 따른 정밀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 실시결과에 대한 평가에 따른 ‘시정’ 또는 ‘부실’처분을 말한다.

나. 점검·진단 실시결과에 따른 처분 건수는 용역발주 단위로 계산한다.

6. 영업정지(업무정지)는 업체 및 참여기술인이 정밀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용역 업무와 관련된 사유로 관계 법령에 따라 처분을 받은 기간에 대하여 평가한다.

7. 재정상태 건실도는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하며, 다음 각 목에 따라 적용한다.

가. 신용평가등급은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을 기준으로 하되, 기업어음 및 기업신용에 관한 신용등급도 활용(첨부)할 수 있다.

나.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1호의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정보업자가 입찰공고일 기준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는 회사채(기업어음 또는 기업신용)에 대한 신용평가등급(위의 신용정보업자가 신용평가등급, 등급평가일 및 등급유효기간 등을 명시하여 작성한 ‘신용평가등급확인서’)을 기준으로 평가한다.

다. 합병한 업체에 대하여는 합병 후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으로 심사하며 합병 후의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합병대상업체 중 가장 낮은 신용평가등급을 받은 업체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8. 기술개발 및 투자실적은 다음 각 목과 같이 적용한다.

가. 개발실적은 건설신기술, 특허를 대상으로 인정하되 건설신기술은 용역사업자(대표자 포함, 소속직원 제외) 명의로 지정된 경우에 한하여 인정하고, 특허는 용역사업자(대표자 포함, 소속직원 제외)가 최초 출원인으로 등록된 경우에 한하여 인정한다.

나. 건설신기술의 활용실적은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제10조 제1항에 따라 제출된 활용실적에 대해 같은 법 시행령 제117조 제1항에 따라 지정·고시된 기관의 신기술 활용실적증명서를 제출한 경우에 한정하여 적용한다.

다. 특허의 활용실적은 「발명진흥법」 제52조에서 정한 전문기관의 특허의 활용실적 증명서를 제출한 경우에 한정하여 적용한다.

라. 투자실적 평가

- 1) 건설기술개발 투자실적(재무재표상의 연구개발비, 교육훈련비 등)은 최근 3년간 건설부문 총매출액 합계에 대한 비율로 평가한다.(다만, 회사 설립년수 부족으로 3년간 자료를 제출치 못하는 경우에는 제출된 년수를 기준으로 건설부문 총매출액 합계에 대한 비율로 평가한다.)
 - 2) 특허의 출원인(법인대표자와 법인과의 관계는 동일하게 인정)과 등록인이 상이한 경우와 사용권을 양수 또는 대여 받은 경우에는 이에 대한 비용을 투자실적으로 인정한다.
 - 3) 해당 용역사업자인 경우 공인회계사 또는 세무사가 증명한 최근 3개년 투자 실적 제출
9. 공동이행방식으로 용역을 수행하는 경우에 유사용역수행실적, 신용도, 기술개발 및 투자실적에 용역참여지분율을 곱하여 산정한 후 이를 합산하여 평가한다. 단, 공동이행방식으로 수행 시 PQ 평가대상자에 해당되는 공동도급자의 참여기술인은 지분율대로 참여하여야 하며, 지분율에 의해 산정 시 소수 이하는 반올림하여 조정할 수 있다.
10. 관계법령에 따라 적법하게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용역사업자의 경우에는 하도급을 받은 만큼 그 실적을 인정한다.
11. 발주청은 정밀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용역의 특성에 맞도록 교량 및 터널, 수리, 항만, 건축분야 중 해당분야를 정하고 참여건설기술인의 경력 및 실적·유사용역수행실적·신용도·기술개발 및 투자실적·업무중복도에 대하여는 세부적으로 작성한 후 입찰공고 시 이를 제시하여야 한다.

[첨부] 신용 평가등급 기준

|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 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 기업 신용평가 등급 |
|----------------|-----------------|---|
| AAA | - | AAA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AA에 준하는 등급) |
| AA+, AA0, AA- | A1 | AA+, AA0, AA-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A+, AA0, AA-에 준하는 등급) |
| A+ | A2+ | A+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에 준하는 등급) |
| A0 | A20 | A0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0에 준하는 등급) |
| A- | A2- | A-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에 준하는 등급) |
| BBB+ | A3+ | BBB+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에 준하는 등급) |
| BBB0 | A30 | BBB0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0에 준하는 등급) |
| BBB- | A3- | BBB-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에 준하는 등급) |
| BB+, BB0 | B+ | BB+, BB0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 BB0에 준하는 등급) |
| BB- | B0 | BB-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에 준하는 등급) |
| B+, B0, B- | B- | B+, B0, B-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 B0, B-에 준하는 등급) |
| CCC+ 이하 | C 이하 | CCC+ 이하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CCC+에 준하는 등급) |

사업수행능력평가 원본대조필 확인각서

○ 용역명 :

위 용역의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에 참여함에 있어 사업수행능력평가서에 첨부된 모든 증빙자료(사본) 및 부분에 대하여 원본과 같음을 확인하며, 만약 당사와 관련된 모든 증빙자료(사본) 및 부분에 대하여 사실과 상이함이 발견될 경우 「건설기술진흥법」 제31조제1항 및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 제27조제1항에 따라 발주자로 부터 어떠한 불이익도 감수함을 확약합니다.

20

주 소 :
상 호 :
대 표 자 : (인)
전화번호 :

주 소 :
상 호 :
대 표 자 : (인)
전화번호 :

○○○장 귀하

Ⅲ. 수행실적평가서 작성방법

1. 제출서류 명세(수행실적평가서에 일괄 첨부 원칙)

- 가. 용역참여 신청서 1부
- 나. 용역관련 해당등록증 사본 각1부
 - 1) 사업등록증, 등기사항증명서
 - 2) 사용인감계, 인감증명서
- 다. 공동수급시 관련서류 각 1부
 - 1) 공동수급협정서 및 각 참여업체 증빙서류
 - 2) 공동도급 대표자 선임계
- 라. 정밀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용역 수행실적평가서 1부

2. 서류작성방법

- 가. 페이지 수 : 제한없음.
- 나. 인쇄 및 제본
 - 1) 용지크기 : A4(210mm / 297mm)
 - 2) 재 질 : 백상지(80g/㎡)
 - 3) 인쇄방법 : 공판인쇄, 컴퓨터조판 인쇄
 - 4) 제본방법 : 무선상철(끈이나 철선을 사용하지 않고 상단에 철함)
 - 5) 구비서류 명세의 작성지침 및 별첨서식에 의거 작성
 - 6) 제본순서
 - ① 정밀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 수행실적평가서 (표지서식 1)
 - ② 용역참여신청서(양식 1)
 - ③ 용역관련 해당등록증 사본
 - ④ 공동수급협정 체결현황 (양식 2)
 - ⑤ 공동수급시 증빙서류
 - ⑥ 참여기술인 명단 (양식 3)
 - ⑦ 자기평가서 (양식 4)
 - ⑨ 참여기술인 등급/경력 현황 (양식 5)
 - ⑩ 참여기술인 경력증명서
 - ⑪ 참여기술인 실적 현황 (양식 6)
 - ⑫ 유사용역 수행실적 (양식 7)
 - ⑬ 유사용역 수행실적증명서 (양식 8)
 - ⑭ 업체 및 기술인 자격·영업정지(업무정지) 등 (양식 9)
 - ⑮ 점검·진단 실시결과 평가결과 현황 (양식 10)
 - ⑯ 입찰참가제한 등 증명서

용역참여 신청서

수 신 :
참 조 :

제 목 : 정밀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 수행실적평가서 제출

1. 아래 용역에 대한 “정밀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용역 수행 실적평가서”를 붙임과 같이 제출합니다.

- 가. 용역명 :
- 나. 입찰공고일 / 평가서 마감일 :
- 다. 입찰예정일시 :

2. 본인은 귀 본부에서 발주한 『00부대 정밀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용역』에 참여하기 위하여 귀 본부의 평가기준에 의거 붙임과 같이 수행실적평가서를 제출하오니 본 평가서 내용의 허위 기재 또는 부실한 자료 작성으로 인하여 초래되는 평가 상의 불이익은 물론, 귀 본부의 어떠한 처분에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확약합니다.

붙임 : 정밀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 수행실적평가서 1부
정밀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 수행실적평가서 PDF파일(CD) 1부. 끝.

20 . . .

회 사 명 :
주 소 :
대 표 자 : (인)
작 성 자 : (☎ FAX)

[양식 2]

공동수급협정 체결현황

| 구분 | 업체명 | 주소 | 대표자 | 전화 | 출자비율 | 비고 |
|------|-----|----|-----|----|---------------|----|
| 공동이행 | | | | | | |
| | | | | | | |
| | | | | | | |
| 분담이행 | 업체명 | 주소 | 대표자 | 전화 | 분담내용 업종 비율 | 비고 |
| | | | | | | |
| | | | | | | |
| | | | | | | |
| 계 | | | | | 100% | |

증빙서류 : 공동수급협정서

[양식 3]

참여기술인 조직표

| 참여 분야 | 성명 | 소속 | 입사일 ⁵⁾ | 생년월일 (주민등록상) | 분야 | 등급 ⁶⁾ | 자격증 (분야) |
|-----------------------------------|----|----|-------------------|-----------------|----|------------------|-------------|
| 책임기술인 ⁷⁾ | | | | | | | |
| 분야별 ⁸⁾ 책임/참여 기술인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5) 참여 기술인은 공고일 이전 입사자에 한함.(공고일 기준 발행된 경력증명서 첨부)
- 6) 분야 및 등급은 관련협회 발행 경력증명서에 기재된 내용 기록
- 7) 책임기술인 : 주업체의 건설기술인으로서 사업진행의 전반적인 책임/총괄
- 8) 분야별 책임/참여기술인 : 책임기술인과 별도로 공고문에 게시된 분야 필히 편성

자기평가서

| 항 목 | 세 부 항 목 | 평 가 내 용 | 실 적 | 배 점 | 평 점 | 비 고 (산출근거) |
|---------------|-----------------------|------------------|-----|-----|-----|---------------|
| 참 여 기술인 | 책임기술인 (성 명) | 등 급 | | - | | |
| | | 경 력 | 년 | 8 | | |
| | | 실적(건수) | 건 | 5 | | |
| | | 실적(금액) | 억원 | 5 | - | |
| | | 소 계 | | 18 | | |
| | 분야별 책임기술인 (성 명) | 등 급 | | 2 | | |
| | | 경 력 | 년 | 6 | | |
| | | 실적(건수) | 건 | 5 | | |
| | | 실적(금액) | 억원 | 5 | | |
| | | 소 계 | | 18 | | |
| | 분야별 참여기술인 (성 명) | 등 급 | | 2 | | |
| | | 경 력 | 년 | 3 | | |
| | | 실적(건수) | 건 | 4 | | |
| | | 소 계 | | 9 | | |
| | 계 | | | 45 | | |
| 유사용역 수행실적 | 용역수행실적 (최근 5년간) | 건 수 | 건 | 12 | | |
| | | 금 액 | 억원 | 13 | | |
| | 계 | | | 25 | | |
| 신용도 | 점검·진단 실시결과 평가결과 | 참여업체 | | 4 | | |
| | 영업정지 (업무정지) | 참여업체/참여기술인 | | 3 | | |
| | 재정상태 건실도 | 신용평가등급 | | 3 | | |
| | 계 | | | 10 | | |
| 기술개발/ 투자실적 | 개발·사용실적 | 건설신기술, 특허 | 건 | 2 | | |
| | 투자실적 | 최근 3년간 투자실적비율 | % | 8 | | |
| | 계 | | | 10 | | |
| 업무중복도 | 참여기술인의 업무중복도 | 책임기술인 | 건 | 6 | | |
| | | 분야별책임기술인 | 건 | 4 | | |
| | 계 | | | 10 | | |
| 합 계 | | | 100 | | | |
| 가 점 | 건설기술인 신규고용 | | | 0.3 | | |

참여기술인 등급/경력 현황

| 구 분 | 성 명 | 해당분야 | 등 급 | 자 격 증 분 야 | | 현재까지 경력 | 비 고 |
|-----------------------------|-----|------|-----|-----------|-----|------------|-----|
| | | | | 자격명 | 취득일 | | |
| 책임기술인 | | | | | | | |
| 분야별 책임 / 참여 기술인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첨부 : 1. 자격증 사본
 2. 기술인 경력 확인서 1부.
 3. 점검 및 안전진단 용역수행 실적확인서
 (필요시, 건설기술인경력관리수탁기관 또는 발주청 확인)

참여기술인 실적 현황

| 성명 | 용역명 | 발주기관 | 평가대상 실적 | | | 용역기간 | | 용역금액 (억원) |
|-----|-----|------|---------|------|------|------|-----|--------------|
| | | | 공사종류 | 해당분야 | 담당업무 | 계약일 | 준공일 | |
| | | | | | | | | |
| | | | | | | | | |
| 소 계 | | | | | | | | 건 억원 |

- 첨부 : 관련협회 발행 경력증명서, 계약서 또는 발주기관 실적증명서
 (건설기술경력관리 수탁기관 또는 발주청 발행)

[양식 7]

유사용역수행실적 현황

| 업체명 | 용역명 | 발주기관 | 용역기간 (년/월/일) | | 평가대상 실적 | | 계약금액 (백만원) | 지분율 (%) | 지분금액 (백만원) |
|-----|-----|------|-----------------|----|---------|-----|---------------|------------|---------------|
| | | | 착공 | 준공 | 공사종류 | 주공종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소계 | 건 | | | | | () | | () |

첨부 : 1. 관련협회 발행 증빙서류, 계약서 또는 발주관서 실적증명서
(건설기술 경력관리 수탁기관 또는 발주청 발행)

- ※ 1. 최근 5년 이내에 발주부서의 장이 지정하는 당해용역과 유사한 주 공종분야의 용역수행실적으로 건설기술인 경력관리수탁기관 등 증빙자료 첨부
- 2. 유사용역실적은 회사가 받은 실적으로 인정하며, 준공된 실적에 한하여 인정.

[양식 8]

유사용역수행실적 증명서

| 신청인 | 업체명 (상호) | | 대표자 | | |
|---------|-----------|-----------|---------------|--------------|-------------------------------|
| | 영업소재지 | | 전화번호 | | |
| | 사업자번호 | | 제출처 | | |
| | 증명서 용도 | | 사업수행능력평가 신청용 | | |
| 용역실내 | 용역명 | | | 구분 | 설계() : 감리() : 기타() : |
| | 용역개요 | | | | |
| | 계약번호 | 계약일자 | 계약기간 | 계약규모 | 비고 |
| | | | | 이행실적 공동비율 | |
| 증명서발급기관 | 위 사실을 증명함 | | | | |
| | 년 월 일 | | | | |
| | 기관명 : | | (인) (전화번호 :) | | |
| | 주소 : | | (FAX번호:) | | |
| 발급부서 : | | 담당자 : (인) | | | |

- ※ 1. 엔지니어링실적을 공동계약으로 이행하였을 경우 참여비율과 이행실적을 기재하여야 함.
- 2. 별도 양식으로 작성하는 경우는 그에 따름.

[양식 9]

업체 및 기술인 자격·영업정지(업무정지) 등

| 업체명 및 기술인성명 | 정지 및 제재기간 | 기간(월) | 조치기관명 | 사유 요약 | 점수 |
|-------------|-----------|-------|-------|-------|----|
| | ~ | | | | |
| | ~ | | | | |
| | ~ | | | | |
| 계 | | | | | |

첨부 : 분담된 면허와 관련된 업종에 해당하는 경력관리수탁기관 확인서 또는 관할 행정기관 증빙서류

- ※ 1. 최근 1년간(공고일 기준) 업체 업무정지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제한을 받은 사항과 기술인 자격정지 또는 업무정지처분 받은 사항을 기재
- 2. 해당사항이 없는 회사는 "해당사항 없음" 표시하고 관련협회 확인서를 첨부할 것.

[양식 10]

점검·진단 실시결과 평가결과

○ 참여업체가 정밀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 용역과 관련하여 받은 처분사항에 따라 평가

| 참여업체 | 측정기관 | 처분내용 | 감점 | 비고 |
|------|------|------|----|----|
| | | | | |
| | | | | |
| 계 | | | | |

첨부 : 수탁기관확인서 사본 첨부.

기술개발 및 투자실적

재정상태건실도

| 구분 | 기재사항 |
|---------|-------|
| 1. 회사명 | |
| 2. 설립년도 | |
| 3. 경영실적 | 자기자본 |
| | 총 자산 |
| | 유동자산 |
| | 유동부채 |
| | 총 매출액 |
| | 기술개발비 |

※ 자기자본비율 및 유동자산비율

| 산출근거 | 계산치 (%) | 비고 |
|-----------|---------|----|
| 자기자본/총 자산 | | |
| 유동자산/유동부채 | | |

첨부 : 공인회계사 또는 세무사가 관계법령에 의거 작성·확인한 최근 회계연도 재무제표

1. 기술개발 실적

| 구분 | 제목 | 특허권자 | 출원일 (경과년수) | 인정기관 | 비고 (등록번호) |
|-------|----|------|---------------|------|--------------|
| 건설신기술 | | | | | |
| 특허 | | | | | |
| 계 | | | | | |

첨부 : 증빙서류(등록증 사본 등) 첨부

- ※ 1. 당해 업체(대표자 포함)가 등록권리자로 등록된 건수 이외(일부양도, 허락 등)는 제외함
- 2. 2인 이상 최초 출원 시 공동으로 출원한 경우 해당점수를 출원자 수로 나누어 인정
- 3. 동일 건으로 신기술, 특허, 실용신안을 받은 경우는 한 건으로 인정 함

2. 투자실적

| 업체명 | 1년차 | | | 2년차 | | | 3년차 | | | 계 | 비고 |
|-----|-----|---|------------|-----|---|------------|-----|---|------------|-----------------------|----|
| | A | B | A/B (a) | A | B | A/B (b) | A | B | A/B (c) | | |
| | | | | | | | | | | (a + b + c) / 3 × 지분율 | |
| | | | | | | | | | | (a + b + c) / 3 × 지분율 | |
| 계 | | | | | | | | | | 가 + 나 | |

※ A : 건설기술개발투자액, B : 건설부문 총매출액

- 첨부 : 1. 공인회계사 또는 세무사가 증명한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3회계년도 재정상태 검토보고서 또는 재무제표
- 2. 투자실적 자료의 미비 또는 제출하지 못하는 경우 사유 및 증빙서류 첨부

3. 사용실적

| 구분 | 제목 | 출원인 | 출원일 (경과년수) | 활용 건수 | 활용 금액 | 가중치 | 점수 | 비고 (인정기관) |
|-------|----|-----|---------------|----------|----------|-----|----|--------------|
| 건설신기술 | | | | | | | | |
| 특허 | | | | | | | | |
| 계 | | | | | | | | |

첨부 :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1개월 이내 지정·고시된 기관에서 발행한 증빙서류

참여기술인의 업무중복도

| 구 분 (성 명) | 용역수행(계약) 현황 | | | | | 점수 | 비 고 (용역중단 여부 등) | |
|------------------|-------------|-----|--------------|------|---------------|----|-----------------------|--|
| | 용역명 | 발주청 | 용역비 (백만원) | 참여기간 | | | | |
| | | | | 계약기간 | 잔여기간 (예정일) | | | |
| 책임기술인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소 계 | 건 | | () | | | | |
| 분야별 책임 기술인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소 계 | 건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소 계 | 건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소 계 | 건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소 계 | 건 | | () | | | | |

첨부 : 건설엔지니어링실적관리시스템 증명원

- * 발주청 요구시, 중복도 확인을 위한 추가 관련서류 제출(관련서류 : 공고일 이후 금융거래 확인원과 관련서류 제출계약보증과 선급금 보증기간이 업무중복도 해당기간일 경우에는 해당용역의 계약서와 참여기술인 명단 제출)
- ※ 참여기술인의 건설기술인경력관리수탁기관에서 발행한 경력확인서상 현재 수행 중인 모든 용역과 관련협회에 등록 또는 신고하지 아니하고 수행중인 용역을 모두 기재

【별표5】

기술인평가 배점표 및 세부평가기준

1. 기본계획·기본설계·실시설계

가. 기술인평가

| 평가항목 | 평가요소 | 배점 | 세부평가요소 |
|------------------------|---|--------------|--|
| [가] 설계팀의 경력 및 역량 | - 참여기술인 - 유사용역 수행실적 - 신용도 - 기술개발 및 투자실적 - 업무중복도 | 70 | "수행실적평가" 점수를 환산하여 적용(면접 제외) |
| | 【소계】 | 【70】 | |
| [나] 수행계획 및 방법 | 1) 수행계획 | 15 | 가) 과업의 성격 및 범위에 대한 이해도 나) 과업단계별 작업계획 및 체계 다) 관련 계획·법령 등 검토 및 설계적용 방안 |
| | 2) 수행방법 | 15 | 가) 수행용역에 대한 특정경험 및 당해용역 적용성 나) 예상 문제점 및 대책 |
| | 【소계】 | 【30】 | |
| | 【총계】 | 【100】 | |

2. 정밀점검·정밀안전진단

가. 기술인평가

| 평가항목 | 평가요소 | 배점 | 세부평가요소 |
|-----------------------|---|--------------|---|
| [가] 조직의 경험 및 역량 | - 참여기술인 - 유사용역 수행실적 - 신용도 - 기술개발 및 투자실적 - 업무중복도 | 65 | "수행실적평가" 점수를 환산하여 적용(면접 제외) |
| | - 직무 적정성 | 5 | 정밀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 실시 결과에 대한 평가 반영 등 |
| | 【소계】 | 【70】 | |
| [나] 수행계획 및 방법 | 1) 수행계획 | 20 | 가) 과업의 성격 및 범위에 대한 이해도 나) 과업수행계획의 적정성 다) 해당 용역의 예상되는 문제점 및 개선대책 |
| | 2) 수행계획서 발표 및 면접 | 10 | 책임기술인의 업무수행능력, 자질검증을 위한 발표 및 면접 실시 |
| | 【소계】 | 【30】 | |
| | 【총계】 | 【100】 | |

기술인평가에 대한 평가방법 및 세부기준

I. 일반사항

1. 이 기준은 국방부에서 집행하는 건설엔지니어링의 「기술인 평가서」 평가에 대한 평가방법 및 세부기준을 정함에 그 목적이 있다.
2. 발주청은 입찰공고기간 중 입찰희망자에게 평가방법 및 세부기준을 반드시 배부하거나 공람토록 하여야 하며, 평가 후 결과를 공개하여야 한다.
3. 수행실적평가 결과를 통보받은 입찰자 중 기술인평가 참여 적격자로 선정된 입찰자는 발주청이 정한 기간 내에 평가서를 작성·제출하고, 평가일정 및 절차에 따라 평가를 받아야 한다.
4. 발주청은 평가결과에 대한 입찰자의 이의가 있는 경우 절차에 따라 이의 신청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II. 항목별 세부평가방법

1. 평가위원회 구성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용역의 종류, 특성, 규모 등에 따라 변경이 필요할 경우에는 기술(의사결정)자문위원회의 심의를 받아 별도 방침으로 구성할 수 있다.
 - 가. 평가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9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평가위원 수는 입찰공고에 명시한다.
 - 나. 평가위원은 해당 용역 및 전문기술 분야별로 선정하며 평가위원 수는 위원장을 제외하고 다음과 같이 구성한다.
 - 1) 추정가격 30억원 미만 : 5인 이상
 - 2) 추정가격 30억원 이상 : 7인 이상
2. 평가위원 선정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가. 평가위원의 선정을 위한 모집단의 구성은 발주청의 예규 또는 기술(의사결정)자문위원회에서 정한다.

나. 평가위원 선정은 무작위 추첨 또는 난수에 의한 추첨프로그램을 활용하여 연락순위를 정한 후 전화연락을 통하여 확정할 수 있다.

다. 평가위원의 제척·기피·회피와 해촉은 「특별건설기술심의위원회 운영 및 시공 등 평가훈령」 제7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제9조(위원의 해촉 등)를 준용한다.

라. 평가위원회를 개최하기 전에 “다항”에 관한 사항을 평가위원에게 알려야 하며, 이 경우 심의회피를 신청하는 위원은 당해 안전에 대한 평가위원에서 배제하여야 한다.

마. 발주청의 평가담당부서는 평가위원이 선정되면 발주청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선정결과를 공개한다.

3. 평가위원회 운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가. 평가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2/3이상 출석으로 개의회하며, 필요한 경우 평가위원에게 사업의 특성·용역개요·중점 평가사항 등을 설명할 수 있다.

나. 위원장은 발주청의 장이 지명하며, 위원회를 대표하여 위원회 운영 등 전반적인 사항을 지휘·총괄하고, 평가에는 참여하지 않는다.

다. 기술인평가서는 평가 당일 평가위원에게 배포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용역의 특성 등으로 발주의뢰부서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미리 평가위원에게 배포할 수 있다.

라. 평가위원은 공정한 평가와 비밀유지 등을 약속하는 별지 제2호 서식의 청렴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4. 평가전 준비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가. 발주청의 발주의뢰부서장은 발주 용역의 종류, 특성, 규모 등에 따라 평가 항목 및 배점기준, 작성지침 등을 입찰공고에 포함하여야 하며, 평가담당부서와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나. 평가방법 및 세부기준에 명시되지 않은 기타 세부사항은 용역 특성 및 여건

에 따라 발주청의 평가담당부서장이 별도로 조정하여 입찰공고에 포함하도록 할 수 있다.

다. 발주청의 발주의뢰부서장은 입찰참여업체로부터 평가서류 접수시 별지 제3호 서식의 청렴서약서를 징구하여야 한다.

5. 기술인평가서의 발표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가. 충실한 평가를 위하여 기술인평가서 제출자로 하여금 평가위원회에 출석하여 발표하게 하고 위원별 질문, 토론 등을 통해 심층 평가한다. 다만, 당해 용역의 규모 및 특성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발표를 생략할 수 있다.

- 1) 발표 및 평가는 제출받은 기술인평가서를 기준으로 하여야 하며, 제출된 기술인평가서와 발표 내용이 다른 경우에는 평가위원으로 하여금 평가에서 불이익을 주도록 하게 할 수 있다.
- 2) 사업책임기술인에 대한 개별질문은 사전 공통질문서를 작성하여 활용할 수 있다.

나. 기술인평가서 발표는 사업책임기술인이 발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5인 이내에서 분야별(책임)기술인 또는 기술제안서 작성자 등이 배석하여 평가위원의 질의에 응답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배석자 수는 입찰공고에 명시한다.

다. 발표는 용역의 특성에 따라 제출된 기술인평가서를 사용하여(동영상 금지) 발표하며, 발표를 위한 추가적인 자료는 필요시 입찰공고에 명시한다.

라. 발표 및 질의응답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따라 시행한다.

- 1) 발표순서는 평가당일 추첨에 의해 정하며, 타사의 발표를 청취할 수는 없다.
- 2) 발표는 10분 이내로 제한한다.
- 3) 건설사업관리용역과 정밀점검·정밀안전진단용역의 기술인평가서 수행계획서 발표 및 면접 평가요소는 다음과 같으며, 사업의 특성에 따라 조정하여 입찰공고에 별도로 명시할 수 있다.

| 평가요소(예시) | 세부사항 (예시) |
|--------------|--|
| 공사전반 전문지식 등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사전반에 걸친 전문지식과 경험 · 시공업체를 조화시켜 나갈 수 있는 소양 |
| 조직의 리더십 등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조직의 리더십 및 능력 등 · 자질과 능력 |
| 교양, 인품, 인성 등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교양, 인품 등 인성평가 |
| 부조리 등 청렴성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부조리 등 청렴성 · 동일감리회사 근무년한 경과정도에 따른 책임감 등 |

6. 평가점수 산정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가. 기술인평가서의 세부 평가기준(평가항목, 배점기준 등)은 [별표 5]와 같으며, 별지 제1호 기술인평가 상대평가 등급배분 및 평가방법에 따라 평가한다.

나. 평가점수는 업체별로 평가위원들의 합계점수 중 최고점과 최저점을 제외하고 산술평균하여 산정하며, 최고 최저점수가 동점이 발생한 경우에는 1인의 평가점수를 제외하여 산정한다.

다. 평가위원회는 심사 전문성 향상 등을 위하여 평가위원회 의결로 평가대상자를 그룹으로 구분하여 해당그룹에 적합한 평가점수로 평가할 수 있다.

라. 산정 결과 최종(평균)점수에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에는 소수점 셋째자리에서 반올림한다.

7. 평가위원 및 평가결과 공개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가. 평가위원의 명단과 위원별 평가점수는 공개하여야 한다.

나. 평가 후 가격 입찰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가격 입찰 후 평가결과를 공개한다.

다. 각 업체별 세부 평가점수는 개별 통보하며, 전체 평가결과는 발주청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공개한다.

8. 감점기준 등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가. 발주청의 평가담당부서는 입찰자의 다음 각 호의 행위가 확인된 경우 별지

제4호에 따라 감점 처리하여야 한다.

- 1) 입찰공고일부터 평가일까지 평가위원을 직·간접으로 사전 접촉하는 행위 (단, 접촉은 유선이나 방문 등을 통하여 의도적으로 접근하여 심의위원이 입찰자를 인식하게 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 2) 입찰자가 평가위원 선정대상에게 개별적으로 입찰 관련내용을 직·간접으로 사전 설명하는 행위
- 3) 낙찰자가 사전신고 없이 1년 이내에 평가참여 위원에게 용역·연구·자문 등을 의뢰하는 행위
- 4) 평가와 관련한 비리 또는 부정행위
- 5) 타 발주청으로부터 통보받은 감점 내용

나. 발주청의 평가담당부서는 해당 평가사항에 대하여 “가항”의 조치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감점사항, 감점방법, 감점한도 등에 관한 내용을 입찰공고서에 제시하거나 입찰자에게 사전에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Ⅲ. 기술인평가서 작성방법

1. 본 용역의 과업내용을 충분히 파악한 후, 용역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업무수행계획 및 방법을 구체적으로 기술하여야 한다.
2. 본 사업을 성공적으로 완수하기 위해 설계용역, 공사목적물 등에 대한 적절한 기술적용방안을 수립하여 제시하고, 보유하고 있는 기술자료의 활용방안을 제시한다.
3. 과업내용서 분석에 따른 설계, 시공 및 사후관리 등 각 단계별로 예상되는 문제점 및 대책을 제시하여야 한다.
4. 기술인평가서(이하 평가서류) 작성시 다음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가. 제출되는 평가서류는 익명성을 기반으로 작성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작성분량과 작성방법 등을 위반한 경우에는 감점할 수 있다.

- 1) 평가서류 발표시 발표를 위한 자료는 별도로 작성하지 않으며, 표지·요약·목차를 제외한 원본(본문)을 사용하여 발표한다.
- 2) 발표자료는 원본을 그림파일로 변환하여 작성되어야 하며, 상세한 설명을 위한 원본의 부분 확대 외에는 어떠한 수정이나 편집은 허용되지 않는다.

나. 익명성을 저해할 수 있는 유사실적 수행사례(그림, 사진)는 작성 제외한다.

5. 기술인평가서(이하 평가서류)는 요약, 목차, 본문 순으로 작성한다.
6. 평가서류의 분량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가. 기술인평가서의 분량은 용역의 규모에 따라 아래와 같이 한다.

- 1) 추정가격 30억원 미만의 용역 : 15 페이지 이내
- 2) 추정가격 30억원 이상 50억원 미만의 용역 : 20페이지 이내
- 3) 추정가격 50억원 이상의 용역 : 25페이지 이내

7. 평가서류는 흑백으로 작성하며, 항공사진, 투시도, 조감도, 시뮬레이션, 3D효과, 일러스트 편집(맥편집, 스케치), 고급용지 사용 및 바탕면·여백부 등의 치장 등은 사용할 수 없다.(단, 무료로 공개된 항공사진은 활용 가능)

8. 평가서류는 A4 규격으로 작성(비교노선도는 제외)하되 불가피하게 A4 규격을 초과하여 작성 제출한 경우에는 “쪽수 제한”규정에 따라 A4 분량만큼의 쪽수로 환산 적용한다.(예: A3 1쪽은 A4 2쪽, B4 1쪽은 A4 2쪽으로 간주)

9. 쪽수 표기는 총매수에 대한 해당 쪽수를 표기(예 : 25-1, 25-2 ………, 25-25)하며, 표지, 목차 및 인쇄 내용이 없는 면은 쪽수에 포함하지 않는다.

10. 인쇄 및 제본은 다음 기준을 따른다.

- 가. 용지크기 : A4(210mm / 297mm)
- 나. 재 질 : 백상지(80g/m²)
- 다. 인쇄방법 : 공판인쇄, 컴퓨터조판 인쇄
- 라. 제본방법 : 무선상철(끈이나 철선을 사용하지 않고 상단에 철함)

11. 제한된 분량 안에서 평가와 관련된 모든 사항들이 필수적으로 포함되어 있어야 하며, 필수적 사항이 부족이나, 첨부로 제시되는 경우는 부적격 처리한다.

12. 발주청의 발주의뢰부서는 당해 사업의 특성을 고려하여 평가서류 작성방법에 관한 사항을 구체화하여 입찰공고시 작성지침에 포함시켜야 한다.

[별지 1]

기술인평가 등급 배분 및 평가방법

평가등급 배분 및 평가방법은 다음과 같이 한다.

1. 위원별 평가항목 상대평가 실시

- 상대평가시 등급별 배분율: 수(10%), 우(20%), 미(40%), 양(20%), 가(10%)

| 업체수 | 등급 | | | | | 업체수 | 등급 | | | | |
|-----|----|---|-----|---|---|-----|----|---|----|---|---|
| | 수 | 우 | 미 | 양 | 가 | | 수 | 우 | 미 | 양 | 가 |
| 2,3 | 1 | 1 | (1) | | | 17 | 2 | 3 | 7 | 3 | 2 |
| 4 | 1 | 1 | 1 | 1 | | 18 | 2 | 4 | 7 | 3 | 2 |
| 5 | 1 | 1 | 2 | 1 | | 19 | 2 | 4 | 7 | 4 | 2 |
| 6 | 1 | 1 | 2 | 1 | 1 | 20 | 2 | 4 | 8 | 4 | 2 |
| 7 | 1 | 1 | 3 | 1 | 1 | 21 | 2 | 4 | 9 | 4 | 2 |
| 8 | 1 | 2 | 3 | 1 | 1 | 22 | 2 | 5 | 9 | 4 | 2 |
| 9 | 1 | 2 | 3 | 2 | 1 | 23 | 2 | 5 | 9 | 5 | 2 |
| 10 | 1 | 2 | 4 | 2 | 1 | 24 | 2 | 5 | 10 | 5 | 2 |
| 11 | 1 | 2 | 5 | 2 | 1 | 25 | 3 | 5 | 10 | 5 | 2 |
| 12 | 1 | 3 | 5 | 2 | 1 | 26 | 3 | 5 | 10 | 5 | 3 |
| 13 | 1 | 3 | 5 | 3 | 1 | 27 | 3 | 5 | 11 | 5 | 3 |
| 14 | 1 | 3 | 6 | 3 | 1 | 28 | 3 | 6 | 11 | 5 | 3 |
| 15 | 2 | 3 | 6 | 3 | 1 | 29 | 3 | 6 | 11 | 6 | 3 |
| 16 | 2 | 3 | 6 | 3 | 2 | 30 | 3 | 6 | 12 | 6 | 3 |

※ 참여업체수가 30개 초과시 등급별 배분율은 위 배분표를 기준으로 등급별 업체수 결정

- 평가등급별 가중치

| 평가등급 | 수 | 우 | 미 | 양 | 가 | 미제출·미참석 |
|----------|-----|-----|-----|-----|-----|----------------|
| 평가항목 가중치 | 1.0 | 0.9 | 0.8 | 0.7 | 0.6 | 부적격 (대상 제외) |

※ 수행계획서 미제출 및 발표(면접) 미참석 업체는 평가대상에서 제외함

2. 총점 강제차등 실시

- 위원별 평가점수 집계 후 총점 순위에 따라 참여업체 등급 강제차등 배분
- 강제차등 배분율(표)

| 업체수 | 배분 등급 | | | 업체수 | 배분 등급 | | |
|-----|-------|---|---|-----|-------|----|---|
| | 상 | 중 | 하 | | 상 | 중 | 하 |
| 2 | 2 | - | - | 16 | 5 | 6 | 5 |
| 3 | 2 | 1 | - | 17 | 6 | 6 | 5 |
| 4 | 2 | 2 | - | 18 | 6 | 6 | 6 |
| 5 | 3 | 2 | - | 19 | 6 | 7 | 6 |
| 6 | 3 | 3 | - | 20 | 7 | 7 | 6 |
| 7 | 3 | 3 | 1 | 21 | 7 | 7 | 7 |
| 8 | 3 | 3 | 2 | 22 | 7 | 8 | 7 |
| 9 | 3 | 3 | 3 | 23 | 8 | 8 | 7 |
| 10 | 3 | 4 | 3 | 24 | 8 | 8 | 8 |
| 11 | 4 | 4 | 3 | 25 | 8 | 9 | 8 |
| 12 | 4 | 4 | 4 | 26 | 9 | 9 | 8 |
| 13 | 4 | 5 | 4 | 27 | 9 | 9 | 9 |
| 14 | 5 | 5 | 4 | 28 | 9 | 10 | 9 |
| 15 | 5 | 5 | 5 | 29 | 10 | 10 | 9 |

주1) 참여업체수가 29개 초과시 등급별 배분율은 위 배분표를 기준으로 등급별 업체수 결정

주2) 등급배분 시 총점합계 결과 순위간 동점발생 시 상위등급으로 배분함
(ex : 10개사 참여시 공동 3등 2개사 → 모두 '상' 배분)

- 강제배분 가중치

| 배분등급 | | 상 | 중 | 하 | 미제출·미참석 |
|---------|-------|-----|-------|------|---------|
| 총배점 가중치 | 기술인평가 | 1.0 | 0.95 | 0.90 | |
| 최종 점수 | 기술인평가 | 30점 | 28.5점 | 27점 | |

※ 평가서류 미제출 및 발표(면접) 미참석 업체는 부적격 처리하고 평가대상 및 가격입찰 대상에서 제외함. (평가서류 미제출 및 발표(면접) 미참석으로 최종 1개사만 기술인평가 또는 제안서평가 대상일 경우 본 입찰건은 유찰됨)

청 령 서 약 서

○ 용역명 :

본인은 국방부 건설엔지니어링 평가위원회 평가위원으로 ○○○○에서 시행하는 ○사업의 평가와 관련하여 평가대상 업체와는 특수한 이해관계가 없어 회피 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하며, 관계법령 등에 규정된 절차에 따라 공정하고 투명하게 심사에 임하고, 본 평가와 관련하여 어떠한 금품 또는 향응이나 부당한 이익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반할 시에는 관계법령에 따라 책임질 것을 서약합니다.

아울러 평가 과정에서 취득한 제반 내용에 대해 평가위원회의 허락 없이는 어떠한 경우에도 공개하거나 유포하지 않을 것을 확약합니다.

20

서약자 소 속 :
직위(급) : 성명 (서명)

평 가 위 원 장 귀 하

청 령 서 약 서

○ 용역명 :

본인은 위 용역의 기술인평가서 평가와 관련하여 평가위원 및 이해관계자에게 어떤 부당한 요구를 하거나 금품·향응 등을 제공하지 않고 공정하게 입찰에 참여할 것을 서약하며, 이를 위반시는 관계법령에 따라 어떠한 처벌도 감수하겠습니다.

20

서약자 소 속 :
직위(급) : 성명 (서명)

평 가 위 원 장 귀 하

심의 관련 비리 감점

1. 적용기준

| 감점사유 | 감점 | 감점기간 |
|--|-----|-----------|
| 1. 평가위원 선정이후 직·간접 사전접촉 | 3점 | 당해심의 |
| 2. 평가위원 대상자에 대한 직·간접 사전설명 | 5점 | 적발일로부터 1년 |
| 3. 사전신고 없이 낙찰된 후 1년 이내 평가참여 위원에게 용역, 연구, 자문 등을 의뢰한 경우 | 5점 | 적발일로부터 1년 |
| 4. 평가와 관련하여 평가당시 소속직원(퇴직자 포함)이 비리행위 또는 부정행위를 한 사실이 있는 경우 | 15점 | 적발일로부터 2년 |

2. 적용방법

- 가. 업체가 소속직원의 감점행위를 인지하였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해당업체에게 감점을 적용한다.
- 나. 공동으로 입찰하는 경우 참여업체가 감점행위를 한 경우 대표 입찰사에게도 1/2의 감점을 적용한다.

사전접촉(사전설명) 여부 확인서

본인은 “00 용역”의 기술인평가와 관련하여 입찰참가업체의 사전접촉(설명)여부를 아래와 같이 확인합니다.

- 아 래 -

| 소 속 | 성 명 | 서 명 | 사전접촉여부 | 사전설명여부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사전접촉(설명)사실 확인서

| 위원성명 | 업 체 명 | 사전접촉자 | 사전설명자 | 일시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평 가 위 원 장 귀하

비위 등 제보 신고서

- 용역명 :
- 신고 대상위원 : (소속 :)

<제보 내용>

일시, 장소, 비리 정황 등 구체적으로 작성

본인은 “00 용역“의 기술제안서(기술인) 평가와 관련하여 상기 평가위원에 대한 부정 및 비위 발생(의혹) 사실을 아래와 같이 신고합니다.

20 . . .

담당자 :
소 속 : (인)

평 가 위 원 장 귀하

평가위원 제척 및 기피 신청(확인)서

당사는 00용역 제안서 평가와 관련하여 선정된 평가위원 중 제척 및 기피 사유에 해당되는 위원이 있는 경우 아래 양식에 따라 제척·기피를 신청하며, 해당사항이 없을 경우에는 해당없음을 확인하며, 추후 평가위원 자격과 관련하여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 위원명 | 근 무 처 | 근거 및 사유 |
|-----|-------|---------|
| | | |
| | | |

※ 제척 및 기피 사유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이었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심의대상인 건설공사의 시행으로 인하여 이해당사자(대리 관계를 포함한다)가 되는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단체 등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5. 위원이 최근 3년 이내 해당 심의대상 업체에 임원 또는 직원으로 재직한 경우
6.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자문, 연구, 용역(하도급을 포함한다 이하 이항에서 같다), 감정 또는 조사를 한 경우
7. 위원이 임원 또는 직원으로 재직하고 있거나 최근 3년 내에 재직하였던 기업 등이 해당 안건에 관하여 자문, 연구, 용역, 감정 또는 조사를 한 경우
8. 위원이 최근 2년 이내에 해당 심의 대상 업체와 관련된 자문, 연구, 용역, 감정, 조사를 한 경우

20 . . .

회사명 :
대표자 : (인)

평 가 위 원 장 귀하

[서식 4] 평가용 기술인평가서 표지

<----- 210 mm ----->

| | |
|------|------|
| 접수번호 | 평가번호 |
| | |

(크기 : 가로 50mm, 세로 윗열 10mm, 아랫열 20mm, 박스 좌상단 위치 : 종이기준 가로 20mm, 세로 20mm)

○○ 설계 등 용역(000) 기술인평가서

(문단모양: 가운데, 크기: 24, 위치: 종이기준 위에서 100 mm)

2000. 00.

(문단모양 가운데, 크기 : 20, 종이기준 위에서 150 mm)

2
9
7
m
m

[서식 5] 발주자 보관용 기술인평가서 표지

<----- 210 mm ----->

○○ 설계 등 용역 기술인평가서

(문단모양: 가운데, 크기: 24, 위치: 종이기준 위에서 100 mm)

2000. 00.

(문단모양 가운데, 크기 : 20, 종이기준 위에서 150 mm)

업체명 :
 대표자 : (인)
 주 소 :
 전화번호 :
 FAX번호 :
 평가서 작성자 :

(공통도급시 대표사만 기재요망)

(크기 : 20)

2
9
7
m
m